

인천광역시검단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 호

2026. 7. 1.(수)

선	기관위원장
람	

차 례

조 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호 ~ 제40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07건	———— 1
------------------------------	--	--------

규 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 제1호 ~ 제8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체감사 규칙 등 84건	———— 2,461
-----------------------------	-------------------------	------------

훈 령

○인천광역시 검단구 훈령 제1호 ~ 제3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등 34건	———— 3,668
-----------------------------	-----------------------------	------------

예 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규 제1호 ~ 제1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등 13건	———— 4,044
-----------------------------	--	------------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서해구 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위·수탁 업무 협약 체결 고시
———— 4,220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 이용 공공시설 운영
· 관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약 고시
———— 4,221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3호 인천광역시 서해구-검단구 간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위탁 협약 체결 고시 ——— 4,227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5호 인천광역시 서해구-검단구 간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사무위탁 협약 체결 고시
———— 4,228

공 고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공고 제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등록 공인 공고
———— 4,229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등록 공인 공고
———— 4,23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 진 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임명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 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

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부서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구의회에 보고)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가 추천한 2인

2.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련 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전문가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이하“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구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종 사업현장 점검 및 개정·시정 의견 제시

6. 지역 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7. 그 밖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구민감사관은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검단구에 5년 이상 거주(2026.06.30.까지 서구 거주기간 포함)하면서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임기) 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구민감사관의 책무) ①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척 등)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조사의 내용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한다.

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제보사항 처리 등) ①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구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제보·건의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할 때까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

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보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해 구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감사·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현장방문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구민감사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제3조제3항 관련)

위 촉 장

(주 소)

(성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귀하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제6조제3항 관련)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관으로 . . . 부터 . . . 까지 실시하는 () 관련 감사 과정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1.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감사에 참여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 1. 본인은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 1. 본인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서(제8조제1항 관련)

건 명				
구민감사관	성 명	(서 명)	전 화	
	주 소			

제 보 내 용 (사 실 내 용)

○

처 리 방 법 (처 리 의 건)

○

상기 사항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보·건의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제보·건의 주요내용에는 제보 등의 이유, 그 원인의 사실내용,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접수부(제8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일	제보자			관련기관(부서) 이송일/ 관련기관 (부서)명	결재		완료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보내용 (요약)		담당자	담당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구민감사관 제보사항 등 처리부(제8조제4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제 출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처리(관련) 부 서		처리방법	서면(), 전화(), 면담(), 기타()		
처리결과 회신내용(요지)					

☐ 제보 내용

-
-

☐ 처리 및 조치 내용

-
-

처리구분	완결()	처리중()	불가()
------	-------	--------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제15조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언론인

3.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참여할 수 없다.

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 소

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 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 협의회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 관련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출장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감사실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6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괴롭힘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교육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공무원 대표 등 중에서 5명 이내
2. 인사, 법무, 기간제·공무직, 성희롱·성폭력 분야 담당 공무원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되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 ② 피해직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괴롭힘 조사 전 또는 후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 조사, 상담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6조(비밀유지)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항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 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공익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지급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포상)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기업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고 한다),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출연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검단구가 설치한 공

사·공단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검단구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검단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내부체감도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민·관협의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렴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단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검단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검단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직무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 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과반수 위원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활동

제9조(직무관할)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구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상호간의 관계)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 및 구청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기타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시정·권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결과의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의 운영지원 등

제2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구에서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행위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
에 손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
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지방공무원법」 제 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실조사) ① 감사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

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

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등) ①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4조(환수)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제3조 관련)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직 위 (직 급)			
피신고인 (부조리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 빙 서 류				
비 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별표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1. 유형별 지급기준

구분	유 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1	제2조제3호가목 관련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	제2조제3호나목 관련	· 추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 이내
3	제2조제3호다목 관련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 행위 신고 : 100만원 이내

2. 지급액의 상한액 기준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실 또는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 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검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84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82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3조(정원채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8% 이상	2%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3% 이내	36% 이내	28% 이내	5% 이상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 이내	-	50% 이내	25% 이상	-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동
총 계	84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40	-			
3급	1	1			
4급	6	5		1	
5급	49	31	3	7	8
6급 이하 계	784	-			
별정직 계	4	-			
5급 상당	1	-			
6급 상당 이하 계	3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과 각 실·과의 사무분장,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소장·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및 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청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실,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복지국, 경제문화교통국, 안전환경국, 도시국을 둔다.

제4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 및 공무원 비리조사
2.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3.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
4. 구청장 직소민원 관리
5. 갈등조정관리

제5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구정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3.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
4. 구의회 운영
5. 구정 특수시책 개발
6. 국제교류 업무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
8. 사업별 예산 편성 운영
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0.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
11.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추진

12. 행정혁신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13.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14. 규제개혁업무
15. 국·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
16.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
17.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
18.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획·이행 총괄
19.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사무혁신, 제안제도)
20. 자살예방 업무 총괄 기획

제6조(홍보미디어실)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
2. 구정소식지 발간
3. 구보 발간
4. 언론매체에 관한 사항
5. 민원분석 툴 운영
6. 민원 빅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예보 등
7. 대표 홈페이지 운영
8. 소셜미디어 운영
9. 통계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환경 정리
2. 직원 복지후생 및 복무관리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운영
4. 공무원 인사·교육 및 표창
5. 동 행정 지도감독,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6. 행정구역 조정, 통·반장 관리
7. 선거, 국민투표
8. 행정사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
11.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12.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사무
13. 새마을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다른 국·소·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
15.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16. 지출원 업무
17.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18. 물품의 조달·출납·보관
19. 공유 재산 관리
20. 차량의 취득·처분 및 운영
21. 구청사 및 동청사의 신·증축 용역 및 공사감독
22.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에 관한 사무

23. 공인관리
24.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상담
25. 창구 즉결민원 처리
26. 종합 민원센터 운영
27.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28. 여권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9. 기록물 보존 및 관리
30. 기록관 운영
31. 정보공개 운영
32. 우편물 관리
33.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34.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만족도 조사·평가
35.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
36.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
37. 지방세 세원조사 및 부과
38.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
39.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40. 지방세 심의
41. 지방세징수 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42. 지방세 수입 및 결산
43.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
44. 체납액 가산금 조정 및 과오납금 환불

45.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46.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 요율 조정
47. 지방세 체납처분 및 독촉고지
48. 세외수입 관리
49. 지방세교부 청구 및 결손처분
50.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51. 정보시스템 운영
52.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
53.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54. 행정통신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아동보육과, 교육지원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3. 적십자사에 관한 사항
4.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6.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 증진
8.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9. 여성단체의 지도육성

10.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
11.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묘지관련 업무
13.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16.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17.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관리
18. 사회복지 시책 홍보·교육
19.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관리
20.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 총괄
21.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 관리
22.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23. 서비스 실시·연계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
24. 자활사업 관리 업무
25.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 업무
26. 지역특수사업개발·시행계획 수립
27.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28. 보육아동에 관한 사항
29.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장애인연금에 관한 사항
31. 학교 교육경비 지원업무

- 32. 취학아동 관리업무
- 33.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
- 34. 교육관련 전반사항
- 35.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
- 36.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37. 아동의 복지증진
- 38. 청소년활동 지원
- 39.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운영
- 40.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 41. 학교급식 지원 업무
- 42. 외국어교육특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 43. 글로벌 인재육성 업무 추진
- 44. 평생학습의 진흥에 관한 사항
- 45. 평생학습관 운영
- 46. 구립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7. 인구 및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 48. 고령화 관련 정책
- 49.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 5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51. 위기청소년 지원
- 52. 장학회 운영
- 53.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54.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55.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문화교통국) ① 경제문화교통국에 경제정책과, 문화체육관광과, 기업
일자리정책과, 교통과,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
2.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
3. 중소기업 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4. 시장 육성 및 관리
5.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6. 농업, 잠업, 축산, 농업이용보전, 수리시설에 관한 업무
7. 양곡 수급, 조정
8.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9. 노동단체 지도육성
10. 건전소비문화 정착사업
11. 일자리창출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2.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14.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16.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8.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19.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가스관련법 사무
20.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21. 국가유산 보호관리
22.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23.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24.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산업의 진흥
25.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26. 건전생활(체육행사) 진흥에 관한 사항
27. 구민 건전여가생활 운영 및 지원
28. 생활체육 시설물 확충 및 보수
29.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
30.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31.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
32. 교통체계관리(T.S.M) 지역사업 추진
33.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34. 자동차 운송사업 및 알선사업에 관한 사무
35.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36. 기타 교통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환경국) ① 안전환경국에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식품위생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
3.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4.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5.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6.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
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8.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9. 비상대책 업무
10.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11.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1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13.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14.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15.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16.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환경성 검토
17.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대주민 홍보
18.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1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0. 기본배출부담금 부과·징수
21.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2. 각종 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

2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24. 오존경보제 운영 및 악취예고제 실시
25.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 및 처분
26.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7. 중수도에 관한 사항
28. 저수조에 관한 사항
29. 악취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3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31.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32. 폐기물 처리허가 및 지도감독
33. 폐기물 불법 수거 및 처분의 단속
34. 쓰레기 처리
35. 청소 계몽
36. 종량제 규격봉투(스티커 포함) 제작·판매 및 수수료 징수
37. 음식물쓰레기의 자원 재활용
38. 도로환경미화원 관리
39. 공원조성 및 관리
40. 산림보호 육성
41. 녹지 설치 및 관리
42. 도시녹화사업 추진
43. 공유재산 중 임야의 관리
44.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45. 위생용품제조업 등 인·허가 및 지도·단속

46. 음식문화 개선관리

4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4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9.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0. 공중·식품위생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51. 공중·식품위생업소의 허가 및 위생지도 단속

52. 부정불량식품 관리

53.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54. 집단 급식소 지도 감독

제11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및 개발

2. 건설기계 동원

3.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4. 골재채취 관련업무

5. 토목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

6.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7. 자연재난 방재용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시설물 관리 운영

8. 도시계획 및 재개발 계획 수립

9. 개발제한구역 관리

10. 개발행위허가
1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
12. 도시정비 사무
13.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14. 향측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
15.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16. 공동주택 관리(하자보수)
1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18.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 수립
19.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21.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22. 조합주택설립에 관한 업무
23. 임대주택에 관한 업무
24. 공사현장 지도·감독·관리
25. 공공용건축물 공사에 관한 업무
26. 건축 및 도시·디자인관련 정책 수립
27. 경관 사무
28. 광고물 설치·허가 및 단속
29. 정화조 및 분뇨의 처리, 수거요금의 조정
30.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31. 하천·공유수면 유지관리

32. 하수도 사용료 과징
33.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운영
34.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35. 지적민원 처리
36. 부담금 납부의 독촉 및 체납처분
37.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38. 외국인 토지관리(취득·허가 신고 등)
39.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40. 지가의 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41. 부동산 검인
42.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43.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44. 부동산 실명제 운영
4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6.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부과·징수
47. 개발이익환수금 과태료 부과·징수
4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4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50. 도로명주소 사업 총괄
51.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52.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53. 토지이용계획 도면 관리

54.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55. 공간정보(GIS)운영

56. 지적공부 유지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보건과를 둔다.

제14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5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인천광역시 검단구 일원

[별표 2]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로 24(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화로 42(왕길동)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623(마전동)	
아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20(당하동)	
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바리미로 23, 4·5층(원당동)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규모, 지원시설 등)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근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따르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

상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는 특정 성별(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과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가. 조례 및 민간위탁계약서 준수 및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나.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

다. 위탁받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담 징수행위 금지

라. 위탁받은 시설의 중·개축 또는 추가 신축의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

마. 위탁받은 사무의 재위탁 금지.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해야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위탁사무를 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 기간·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6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

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

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

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 또는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

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

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의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공사·용역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명단
4. 상정 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②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수당: 서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받아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단,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의 통합·폐지 등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 또는 6년 이상임하여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부서명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 같은 규정 제2조의3, 제2조의4 - 같은 규정 제4조의2 - 같은 규정 제4조	
재무과	1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인천광역시검단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18조	
식품 위생과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약사법 제20조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69조의4	

부서명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사. 폐기 명령 등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자. 시설개수명령 등 차.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카.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타. 청문 파. 약사감시원 임명 하. 등록증 등의 갱신 거. 과징금 처분 너.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78조 같은법 제80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	
	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계획의 세부계획 수립 나.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 보고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3	건강생활의 지원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	
	4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5	보건교육의 실시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	— 같은 법 제12조	
	6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구조건강 실태조사 나.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7	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나. 영양관리 다. 구강건강의 관리 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마.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바.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 같은 법 제19조	

부서명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8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9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무 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폐지·휴지·재개신고, 폐쇄 등 다.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 위·해촉 - 정신질환자의 입원연장 및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 - 정신질환자의 퇴원, 처우개선 명령 등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 -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명령 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53조~제59조, 제64조 같은 법 제11조	
	10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나.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등 다. 청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11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부서명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등록취소 카. 청문 타. 등록증 등의 갱신 파. 과징금 처분 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6조의3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12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등 나.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업무 개시 명령 등 바. 폐기 명령 등 사.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아. 시설개수명령 등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차. 청문 카. 허가증 등의 갱신 타. 과징금 처분 파. 지위 승계 등 하. 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제4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4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98조	
	13	의료기기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업 등의 신고 등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라. 사용중지명령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의료기기 감시원 임명 자.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 차.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 같은 법 제56조	
	1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서명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1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나. 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16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17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세탁물처리실적 제출 다. 지도감독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9조 같은 규칙 제11조	
	1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기관의료 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의료기관의 휴·폐업신고 마.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바. 업무개시 명령 사.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아. 시정명령 등	의료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3조	

부서명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자. 개설 허가 취소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의료지도원 임명 타. 청문 실시 파. 과태료 (부과 · 징수) 하.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거. 의료인 단체 설치 신고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19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휴 · 폐업신고 다. 보고와 검사업무 등 라. 시정명령 등 마. 청문실시 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20	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의 대마초 재배에 대한 허가 · 변경 허가 등 나. 출입 · 검사와 수거 다. 폐기 명령 등 라. 업무 보고 등 마.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바. 청문 사. 과징금처분 아. 과태료 (부과 · 징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21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체의 해부에 필요한 사항 나. 시체해부 명령 다. 이상 발견 시의 조치 라. 과태료 (부과 · 징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21조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취소 라.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마.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1조의 3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부서명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바.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사.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아.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자. 다른용도에의 사용금지 차. 구급차 운행연한 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타. 구급차등의 지도·감독 파.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하. 청문 거. 과징금	같은 법 제35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2 같은 법 제44조의 3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47조의 2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2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 · 운영신고 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 등 다. 검사결과의 통지 등 라.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바. 지도감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같은 규칙 제3조의 2 같은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10조 같은 규칙 제14조 같은 규칙 제16조	
	2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라. 검사결과의 등록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4조 같은 규칙 제4조의 2 같은 규칙 제7조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제51조의5	
	26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와 검사 등 나. 폐기 명령 등 다.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	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27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부서명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나.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비용 지원 라. 시정명령	약사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21조의3 같은 법 제69조의4	
	28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 신고 나.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다. 지위 승계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시정명령 바.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사. 청문	약사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46조의 2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69조의 4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부서명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 무 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7조의7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 같은 규정 제2조의3, 제2조의4 - 같은 규정 제4조의2 - 같은 규정 제4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세 무 2 과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복 지 정 책 과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저소득한부모가정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일제조사 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변동사항 확인 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변동사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	관리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노인장애인과	1 2 3	매·화장 및 개장신고 장애인등록 취소 청문 실시 가.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 진단 명령 거부 장애인등록 및 정보보정 가. 장애인 등록 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다.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라. 장애 정도의 조정 마.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제32조의 2 -같은 법 제32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자원순환과	1 2 3 4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권한 가. 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나.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신고 동 배치 환경공무원 관리감독 도로 청소업무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6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공무원 근무 규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동 조례 제9조의 3, 동 조례 제17조	
토지정보과	1	임대차 계약 다음 신고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 가. 체결 나. 변경 다. 해제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시민사회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민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검단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증대 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5조(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 공모) 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구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 · 비판 ·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7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 누구나 구정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2명 이상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

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심의) 접수된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채택등급 등)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모제안의 채택)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모기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공모제안의 채택등급 등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구민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채택제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

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주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교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상도시를 선정한다.

- 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5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도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의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
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
5.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7.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 물품의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의 취소)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리플릿 및 팸플릿

나. 홍보용 책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공개 대상) 총 행사 예산이 3억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제4조(공개 내용)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한다.

제6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다음 년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년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 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

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①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의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에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채·공채 이자율 수준,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의 금액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소관 국장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및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예고문을 검단구 구보와 검단구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기관의 게시판 및 간행물 등의 게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① 구청장이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경우에는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예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과반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

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

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 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

한 경우

3.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사업 공모 시 표지판 설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부위원장은 기획재정 담당 업무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 업무 담당 국장, 총무행정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대표 등

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라.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대상)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

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현황(제6조제2항관련)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 소				
면적(m ²)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제7조제2항 관련)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검단구 관내 사업체 및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검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방법)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6조(의견 제출)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검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고, 주민참여예산 교육 과정을 이수한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 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검단구 주민참여예산 담당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개최 등)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1. 구청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

관한다.

제13조(지역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동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제안사업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반영 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간사 1명을 둔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간사는 민관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회의 개최) ①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검단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19조(주민참여예산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실·과·소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 ①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부서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나. 추계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다. 재원조달 방안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하며,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표시)

4. 부대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개발이나 업무 추진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업

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구 본청, 직속 기관을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용역 예정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용역
4. 매년 단순·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관리원칙) 학술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
2.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
3.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설치 및 기능)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중복성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연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책임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학술용역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연 2회 이상 불참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

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용역 집행 실명제) ①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6조(예산편성 등) ① 구청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착수 이후 1회 이상 연구용역 중간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연구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의 활용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제19조(용역결과 공개)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관련된 각종 쟁송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법률 및 소송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법률고문과 소송고문을 둔다.

제3조(위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법률고문과 6명 이내의 소송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방식)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소송 고문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대상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의 징계정보를 요구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구에서 요청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및 그 밖에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소송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심판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선임에 관한 사항(범죄사범 제외)
3. 소송사건에 대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③ 소송고문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6조(임기) ①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자문평가 결과와 소송수행실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가. 불변기일 지남
 -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 다. 변론기일 불출석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
 - 라.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4. 자문평가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5.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자문료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에게 자문료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료 및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제3조제2항 관련)

청 령 서 약 서

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 위촉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검단구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사용, 금품 수수 및 부당한 알선 또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소송 및 법률 고문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사전 통보 및 자진 사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다만, 그 규칙이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결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① 조례·규칙 등은 구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포일)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완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한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 시정요구 및 제안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는 검단구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감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지/사업장)			
	연락처			
	e-mail			

구분	☐ 예산낭비 신고 ☐ 예산절감 제안			
답변방법	☐ 우편 ☐ 전자메일 ☐ 팩스 ☐ 기타()			
신고내용	사업명		위치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자부담)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제안자 : (인)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서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

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발굴
3.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고충민원

제8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

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 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행정안전부장관·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

민원을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 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화·법령 자문 또는 사실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불이익변경 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8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조사연기신청을 하려면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22조(권리보호 요청 사무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 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 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 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4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채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화·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7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

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8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1조(업무의 범위) 구청장은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2조(기한의 연장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4조(가산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

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징수유예 등 신청)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9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38조(안전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전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8조제2항의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령에 따른다.

제10장 선정 대리인

제40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1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

- 대리인 지정일자 ·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 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
5. 소년·소녀가장 등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보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제7조(법률상담고문 임명 등) ① 법률상담고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에 따라 법률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 책임관이 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고문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법률상담고문 해임) 구청장은 법률상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제9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담책임관은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상담 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고문 및 관계 공무원은 무료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담의뢰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법률상담고문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의뢰인으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접 수 번 호		무료법률상담기록부		접 수 일	
No.				. . .	
사건구분 (V 표시)		○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창업, 기타) ○ 세무(국세, 지방세, 기타) ○ 가사(혼인·이혼, 친자, 상속, 기타) ○ 건축 상담 ○ 행정(생활민원, 인허가, 기타) ○ 교통사고 상담 ○ 지식정보산업(특허, 실용신안, 기술거래, 기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구 분	○ 일반국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업체() ○ 기타()			
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고문의견					
○ 상담으로 종결() ○ 도 움 필 요() ○ 추가회시 필요()					
				법률상담고문 (인)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구분·성별 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 상담할 내용이 많으신 경우 뒷면에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총괄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3조(조직·인력 운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한명이 된 때

제3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검단구의회 의원 제외)
2. 구청장이 지명하는 검단구 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소집
2. 회의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의 작성·관리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건 발생 시 제안설명은 주무부서의 장이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자·출연 기관의 평가

제10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1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검단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인천광역시 및 검단구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경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 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이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

성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

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 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해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라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구가 담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 발생

나. 구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황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용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2. 내 용

-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 가. 주채무 발생
나. 구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채권자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국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 (구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
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건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건당 2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건당 5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건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또는 검단구청장이 당사자로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
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
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

납함으로서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대행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구청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도 구청장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 수탁·대행 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 위탁·대행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대행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제출하여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대행 개요 및 내용
4. 위탁·대행 시설의 현황(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수탁·대행사 기관의 현황

9. 다시 위탁하거나 위탁·대행 기관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평가 및 성과보고서

10. 그밖에 위탁·대행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위탁·대행 시기의 긴급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구의회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

· 운영비를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제9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
2. 위탁·대행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 지침 등)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 처리의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대행사무 처리의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구청장에게 있다. 다만, 구청장과 대행기관 간에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2조(수탁·대행기관의 재위탁·재대행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구청장은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산 등)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대행사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해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위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두어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이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실적보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대행기관에 대하여 위탁·대행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관한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 처리상황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구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대행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의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보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②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발행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훈령·예규
2. 고시·공고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5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부서의 장에게 한다.

제6조(구보게재 조정)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구보게재

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구보활용)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장 구정소식지

제8조(발행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발행)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배부범위) ① 구청장은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공공기관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한다.

② 본청 각 부서 및 동에서는 소식지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배부방법) ① 소식지는 각 동 통·반장이 무상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등을 이용해 배부할 수도 있다.

② 소식지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구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체육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편집위원회)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식지 발행부서의 장,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의원 1명, 소식지 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7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20조(자료수집 등)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하며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주민참여 등) 모든 구민은 독자 투고, 이벤트, 퀴즈, 공모전, 설문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명예기자) ①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고료 등 지급내역 (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원고료 등	비 고
전문기고	- 논평, 수필, 시, 연재소설, 영어 등 ·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 1편당 100,000원 · 200자 원고지 10매 초과 : 1매당 × 10,000원 - 만화, 만평 등 · 1편당 50,000원	* 원고료 등은 현금, 상품권, 전자상품권, 할인권, 전자할인권, 기념품, 이모티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민참여	- 독자 투고 및 인터뷰 등 참여자 · 1편당 50,000원 - 이벤트, 퀴즈, 공모전, 설문조사 당첨자 · 1명당 30,000원 이내	
명예기자	- 1편당 50,000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4.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소셜미디어 및 그 밖의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가상공간을 포함한다.
5. “대표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6. “부 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한다.
7. “이용자”란 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9.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1.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한다.
12. “소셜미디어 기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

제3조(인터넷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서비스의 유사·중복성
2. 인터넷서비스의 통합 필요성
3.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 편의성
4. 인터넷서비스의 이용률
5. 그 밖에 인터넷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홈페이지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 참여유도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법령·조례·규칙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서비스는 연중 지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양한 수준의 정보이용자와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웹접근성과 웹표준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홍보, 이용자와의 소통·공감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체육·축제·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 정보

3. 주민의견·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 부서명 등을 표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공받은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양이 과다하거나 처리기간 내에 게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게시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로 판명된 게시물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방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제3장 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9조(부 홈페이지 구축 시 필수요건) 각 부 홈페이지의 신규 증설은 지양하고, 대표 홈페이지 내 구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별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1. 주요내용, 개설이유, 개발환경 및 대표 홈페이지와의 연동 관련 사항 등
2. 부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
3. 불필요한 도메인명 생성은 최대한 지양
4. 관리자페이지와 사용자페이지는 분리하여 개발
5. 관리자페이지는 인가된 인터넷 주소에서만 접근
6.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와 컴퓨터 환경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과 웹 표준화를 준수하여 제작

제10조(부 홈페이지운영) ①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③ 부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주·월 단위의 방문내역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부 홈페이지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부서 간 협의에 따라 부 홈페이지의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2. 민원처리의 공개
3. 민원상담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민원상담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확인과 첨부 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으로 한정하며, 민원 처리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

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개대상민원의 접수·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과 그 이외의 자에게 달리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을 처리한다.

제14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참여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게시판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소통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소통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통민원창구

는 제11조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외된다.

② 소통민원창구는 단순 질의·안내·제안·건의 및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불편사항 신고 등에 한하여 운영하며,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민원처리결과를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5장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제16조(홈페이지 참여공간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 등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출연료 지급) 구청장은 거주지나 사업장 등의 주소지가 구인 사람이 구 홍보 영상에 출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출연할 경우 출연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이벤트 실시)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기념하는 경우
3. 구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이용활성화를 위한 경우
4. 주민 소셜공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벤트 시작 전에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소셜미디어 기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셜미디어 기자는 정책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채택된 원고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갖게 하는 내용을 기사화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0조(포상) 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시장조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22조(인터넷시스템의 보안) ① 인터넷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 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고장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벤트 경품제공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방법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횟수/ 제한기준
글·사진·동영상 게시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3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첨	3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심사/ 추첨	3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정기이벤트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20만원 이하	주간/월간 정기이벤트
그 외 기타 이벤트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2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별표 2]

소셜미디어 기자 원고료 등 지급 기준(제19조제4항 관련)

1. 지원 대상: 소셜미디어 기자
2. 지원 내용: 원고료 또는 상품권
3. 지원 횟수 및 금액: 1인 1건당 10만원 이하 현금 또는 상품권
※ 우수 소셜미디어 기자로 선정 시 월 10만원 이하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와 제3조에 따른 공단,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다른 기관,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지키고,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구청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데이터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제공 및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

③ 책임관은 소관부서의 실(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의 제공)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구민의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는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④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한다.

제13조(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소통과 협력) ① 구청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을 구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5조(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6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복지·안전·환경·관광·의료·교통·교육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정부, 민간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

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 관련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5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

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제2장 휴가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④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구청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때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제2항 관련)

대민 관계	대내 관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받도록 개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들을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는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5]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자(즉,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확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 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5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타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기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검단구 관할 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레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물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검단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기타 답레품 및 답레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레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검단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답레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검단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검단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검단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기타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담당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중임할 수 없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사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 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답례품 관련 공모전, 기금 관련 공모전 등 각종 공모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기금 계좌의 개설이 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용해야 한다.

제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 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5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 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 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제안 등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으며,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②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2.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3. 공공단체: 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제23조제1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23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장

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9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천하거나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하는 해당 동 소재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천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제6조의 정수 충원을 위해 신규위촉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다.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⑤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부회장이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의 자치회장직 직무대행자 선정 세부 방법은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국 또는 간사) ①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1.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거나 검단구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에 따라 받은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주민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에 한정하여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가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

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치계획안에 대한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을 제공하거나 경품 제공 등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안은 제1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의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16조(자치계획의 내용 등) ① 자치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회 사업예산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 등을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제17조(주민자치회의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사업) 주민자치회 및 제3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협의회는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장학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9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

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한다.

제20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할 경우에도 제9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

② 연임을 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9조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신규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4.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그 위원이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해촉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3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을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4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장애인의 여가·문화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 형편

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설치·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자 또는 강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제4조에 따른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제3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박람회 및 지역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시상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별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 하여야 한다.

제28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

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범위와 요율, 감면 대상 등의 결정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

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희망자가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주민을 우선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주민자치협의회)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센터의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30조, 제41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9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0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잔여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 상한선(제30조 관련)

구분 과목		기 준	사용료 등 (범위 내)	비 고
각종 시설 (사용료)	다목적 홀, 회의실 등 (부대시설 포함)	2시간	3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산정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헬스장)	1개월	25,000원	
	취미, 교양, 생활체육 등 강좌	1개월	35,000원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액(제30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각종 시설 (사용료)	- 정규프로그램(강좌) 운영에 따른 이용 - 관내 직능단체 등의 회의 - 조례 제25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구에서 주최(주관)하거나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강좌 - 순수 예술 부문의 창작활동·공연	50%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0%	검단구 주민에 한정하며, 1인당 제한 강좌 수는 동별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함.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5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
2.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
4.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장 및 1대대 검단구 지역대장
5. 국군 제317방첩부대 부대원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7. 인천광역시 검단소방서장
8. KT 서인천지점 지점장
9.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동 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동 방위협의회의 임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할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할 질병 등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회의의 운영) ① 협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총무업무담당 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안전업무담당 과장
3. 심리전담당간사: 홍보업무담당 과장
4.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정작과장, 서부경찰서 경비작전 담당 업무 부서장
5. 정보화담당간사: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보안담당관
6. 예비군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
7. 소방담당간사: 검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제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지원본부) ①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

⑤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내에 둔다.

⑥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동 지원본부) ① 각 동 소속하에 동 방위협의회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지원본부는 제7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동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선임자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⑤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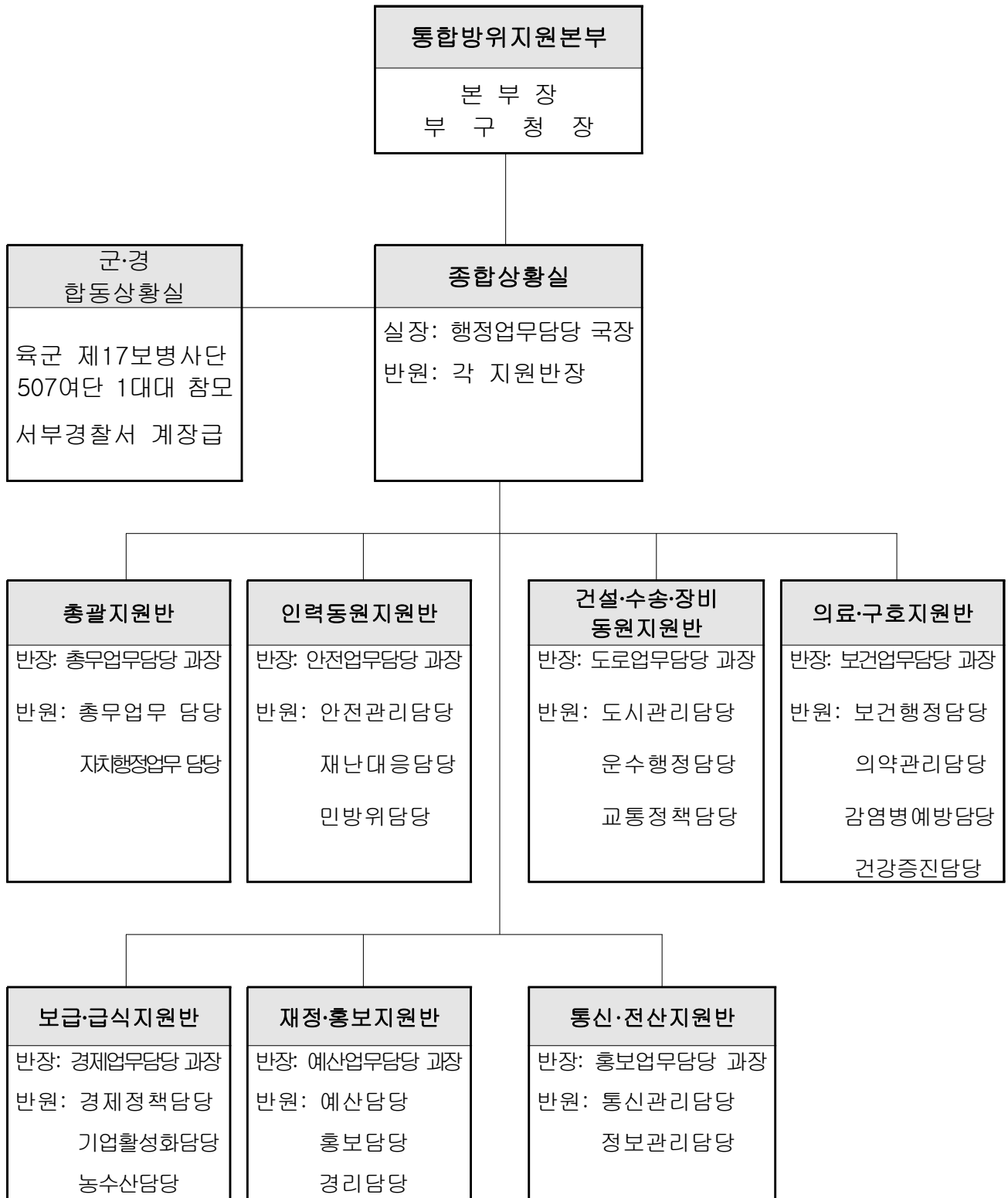
⑥ 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7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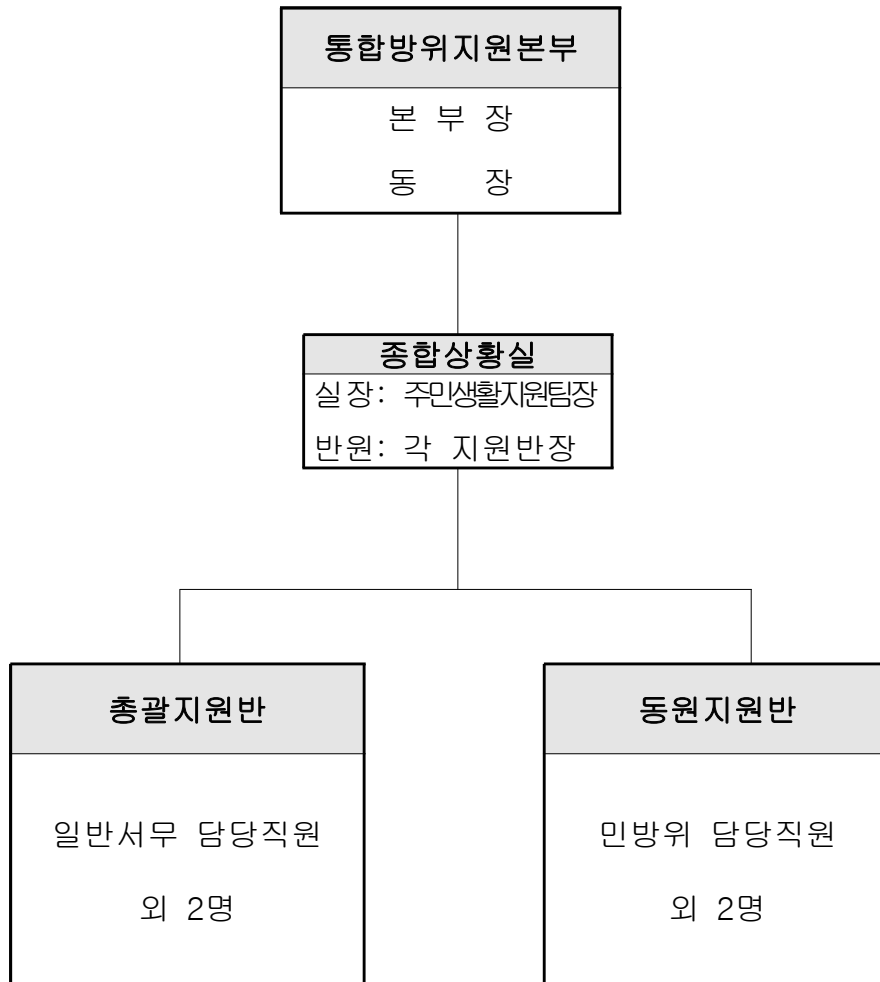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임 무
본 부 장 (부 구 청 장)	•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고, 사무 관장 및 지휘·감독 •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휘·감독 •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통제 • 상하 인접지원 부서 간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종합상황실(장)	•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통제 •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 작전부대와 협조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 통합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 소속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 조정·통제 •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상황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통보 • 충무 3중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군·경 합동상황실	• 정보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정보업무 관장 •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 제공 • 군·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판단 건의 및 조치 • 군 및 경찰작전상황 종합상황실(장)에게 통보 및 협조
총괄지원반(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구 분	임 무
인력동원지원반(장)	•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 수립·시행, 지원업무 관장 •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 실비 변상 및 가료, 구호소요 제기 •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 주민통제 업무 관장
건설·수송·장비동원 지원반(장)	• 산업, 건설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 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운영 •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한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관장 • 차량통제
의료·구호지원반 (장)	•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업무 관장 • 의료·구호조 편성·운영,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보급·급식지원반 (장)	•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작전 동원 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 동원 집행 준비

구 분	임 무
재정·홍보지원반(장)	• 예산지원 계획 수립·시행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 홍보 및 계몽계획 수립·시행 •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통신·전산지원반(장)	• 통신지원 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업무 관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영 • 종합 통신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 통신지원조 편성·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별표 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제8조 관련)

- 주) 1.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
 2. 전시 정부기능 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 병행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5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장(이하 “구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

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구 소속 공무원 및 검단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심의회) 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민장 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사회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고문) ① 장례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몇 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장례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장례비용)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조기제양) 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구기를 조기로 제양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례비 기준 (제13조 관련)

사 항 별	규 격	수 량	비 고
신 문 공 고	3단 15cm	1회	일간지(2개사 이내)
영결식장 설치	면적 6m×3m=18㎡ 높이 3m	1식	
헌화용 꽃 및 근조 리본 등 가. 영정사진 나. 헌화용 꽃 다. 근조리본 라. 벅타이 마. 장갑 바. 영구차 리본	대 백색국화 흑 색 흑 색 백 색 대 형	1개 500송이 이하 500개 이하 30개 이하 200개 이하 1개	조문객용 유족종사원·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 화	대 형	1개	장례위원장 명의
안내문 인쇄	모조 32절 180g/㎡	1,000부	
영 구 차	리 무 진 대 형	1대 1대	1일간
현 수 막	게시대용	10매 이내	
장례행사 협조기관 가. 조악대 나. 경호 및 경비	차량	2대 이내	필요시 필요시
기 타 비 용	영결식 기자재 등	1식	음향시설, 텐트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5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청렴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
5. 사회단체회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제6조(질서상) ① 질서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호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청렴상) 청렴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청렴한 공직자로서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11조(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 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회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회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振作)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표창 추천의 경우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 또는 구 의회의 추천으로 할 수 있다.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렴상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포상을 추서할 수 있다.

④ 단체 및 구민에 대한 포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제16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성 명	(한자) (원명)												
② 생년월일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④ 국 적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급 (직급·계급)					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적요지 (50자내외)					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천과				직위				년 월 일 성명			직인		

(뒷면)

주요 학 력 및 경 력			
①9 년 월 일	②0 이 력	②1 년 월 일	②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②3 년월일	②4 내 용	②5 년 월 일	②6 내 용
②7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년월일	포 상 종 별	포 상 기 관	피 포 상 자				포상을하게된 공적개요	기 념 품 또는부상	비 고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 별	성 명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5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 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

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은 주민투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제15조(심의회 회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거나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신청 []필요없음			
변경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단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투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투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단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5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제2조 관련)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마전동 금곡동	1	검단동	마전동 1~6,7-1~8,8,9-1~2,10~11, 11-1~2,12~16,17-1~10, 17-12,18,18-1~6,19~20, 20-1~7,21,21-1~3, 21-5~7,22~23,24-1~2, 25,25-1,26-1~10, 27-1~2,28-1,28-3~5, 28-8~15,29,30-1~5, 31~32,33-1~8,34-1~6, 35,35-1~4,36,36-1~8, 37-1~4,38,38-1~2,39~40, 41-1~5,42~43,43-1~10, 44-1~2,44-4~5,45-1~4, 46~47,47-1~11,48~49, 49-1~6,50,50-1,51,51-1~2, 52,52-1~3,53~54,54-1, 54-3~6,55,55-1~9,56, 57-1~6,58-1,59,59-1,60, 60-1,60-2~9,61,61-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2,62-1~4,63,63-1~2, 64~65,65-1~3,66-1~7,67, 67-1,68,68-1,68-3~5,69, 69-1,70~71,71-1,72,72-1~5, 73,73-1~4,74,75-1~6, 75-10~17,76-1,76-2,77, 77-1~3,78~84,84-1~4, 85-1~4,86-1~2,87-1~5, 88-1~2,89~91,92-1~2, 93,94-1~2,95~97,97-1~2, 98~99,100-1~8,101~104, 105-1~2,106~107,107-1~3, 108~109,109-1~2,110, 110-1,111,112-1~16,113-1, 114,114-1,115-1,115-3, 116,116-1,117,117-1~4, 117-6,1 17-7,118~119, 119-1,120~121,121-1,122, 122-1,123-1~5,124,124-1, 125-1~10,126-1~3,127-1~3, 128,129-1~11,129-13, 129-15~21,130-1~10,131, 131-1,131-3~5,133, 133-1~2,134~135,135-1, 136-1~2,137-1~3,138, 138-1~4,139,139-1,140, 140-1,142,143-1~2, 144-1~2,144-4,145-1~2, 146,146-1~2,147-1~2, 147-6,147-8,~13, 149,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149-1~5,150~151, 151-1~3,152~159, 160-1~6,161-1~3, 162,162-1,163,164-1~2, 165,165-1~4,166-1~2, 167-1~2,168-1~8, 169-1~2,169-4,169-6~8, 169-11~14,170-1~3, 171-1~2,172-1,173-2, 176-1~2,176-4,176-6~9, 176-13~14,177-1~3, 178-1~2,179-1,180, 180-1~6,181-1,181-7, 181-9,182,182-1~3,182-6~13, 183,185~186,186-1, 187~188,188-1,189, 189-1~20,190,190-1~8, 191~193,195-1,196,196-1~2, 197,197-1,198~199,199-1, 200-1~5,201,202-1~8, 203-1~3,204-3,205, 205-1~5,206,206-1~3,207, 207-1,208~209,210-1~4, 211~212,212-1~2,213~215, 215-1,216,216-1,217-1~3, 217-5,218-1~3,219-1~2, 220,221-1~7,222,222-1, 223-1~18,224-1~9, 225~226,226-1~4,227~230, 230-1~2,231,231-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232~233,233-1,234, 234-1,235,235-1~2, 236-1~3,236-5,237, 237-1~8,238,238-1~9, 239-1~4,240,240-3~10, 241-1~13,242-1~9, 242-11~24, 243-1~4, 243-6~8,244-1~2,244-6, 244-11,245-1~2,246-1~2, 247-1~2,248-1~2,248-4, 249,249-1~22,250,250-1, 251,251-1,252~254, 255-1~3,256~257, 257-1~20,257-22,258, 258-1,259~260,260-1~2, 261~262,262-1~3,263, 264-1~4,265~266,266-1, 267,267-1~3,268-1,268-3, 269,270-1~2,271,271-1~7, 271-8~271-9,272,273-1~5, 273-7~8,273-10~17, 274~277,277-1~2,278, 278-1~4,279,279-1~4, 280-1~8,280-12~20,281, 281-1~2,282-1~5,283-1~9, 284,284-1~2,285-1~15, 286,286-1~9,287-1~12, 287-14~15,287-20~35, 288-1~2,289,289-1~7, 290,290-1~6,290-9~1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291,291-2~7,291-10~17, 293-2,294-2~8,295,295-1~4, 295-6~8,295-10~14,296-2, 296-4~6,297-3~6,298-2~3, 298-5~7,299-2,299-4~7, 300-2,300-4~6,301-3~8, 301-20~21,301-23~24, 302-1~6,303,304-1~3, 304-5,305-1~3,305-5~6, 306-2,307-1~6,308-1~5, 308-7,308-9~13,311, 311-1,312-1~5,313-1~2, 315,315-1~11,316,316-1~6, 316-12~16,316-19~22, 316-25~31,321-2~3, 321-16~19,326,326-1~4, 327,327-2,328,328-1, 329,329-1~4,330,330-1~4, 332-1~4,333,333-1,334, 334-1~2,334-4~9,335-1, 335-3,335-5~6,336, 336-1~4,337~338, 338-1~6,339~340,342, 342-1~8,344,344-1~3, 347-1,348,348-1~4,350~351 351-1~2,352,352-1, 352-3~13,353,353-1~27, 354-1~3,355,355-1~18, 356,356-1~13,357-1~2, 358,358-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359-8~10,360,360-1~10, 361-3,362,362-1~14, 363-3~3-5,364-1,365-1, 366-1~7,366-9~24,367, 368-1~2,368-4~13, 369-1~12,370-2,371-2, 373,373-1~14,375,375-1~37, 376,376-1~20,377, 377-1~18,379,379-2~4, 381-1,381-3~6,382~383, 383-2,384,384-1~2,384-4, 385-1~6,386-1~4,387, 387-1,388-1~4,389, 389-1~2,390,390-1~3, 391-1~6,391-8~13, 392-1~4,393,393-1~2, 394-1~2,395-1~2,395-4, 397-1~3,397-6~7, 397-9~11,398,398-1~10, 399,399-1~19,403, 403-4~6,404,404-1~3, 405,405-1,406-1,406-3, 406-6~12,407-1~6, 408-1~3,409,409-1,410, 410-1~5,411,411-2,412, 412-3~5,413-1,414-1, 414-18,414-20~23,416, 416-1~32,417,417-1~15, 419-4~6,420-2~3, 421-3~4,422-1~3,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423-1~2,424-1~6, 425~426,426-1,427~430, 431-1~7, 432~434,434-1~2, 435~438,439-1~4,440-1~4, 441-1~2,442-1~2, 443-1~3,444,444-1~30, 445,445-1~33,446, 446-1~46,447-2~3, 448-2~8,449-2~5, 450-1~8,451-1,452, 452-1~2,453-1~2, 454-1~5,455~456, 456-1~3,457,458-1~2, 458-5~8,459-1,459-2, 459-3,459-4~5,459-7~9, 460-1~,460-5~7,460-9~10, 460-11~15,461-1~2,462-1~3, 652,652-1~16,652-18~22, 653-1,653-3~4,654-1, 654-3,655,655-1~2,657, 657-2~11,658-2,659, 659-4,660-1~3,660-6~7, 660-12~57,661-1~7, 662-1~5,663-1~4, 664-1~3,664-8~18,665, 665-1~4,666~667,667-1, 667-4,667-8~9,667-13, 667-17,667-20, 667-22~25, 668-2,669,670-1,671, 671-1~3,672,672-1~6,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72-8,672-10~13,673, 673-3~4,674,675-1~4, 676-1~2,676-5~10,677,677-1, 678-1~6,678-10~13,678-15, 678-18~21,678-23~25, 678-27~30,678-32, 678-35~40, 679-1,679-3,679-5~6, 679-8~12,680-1~2, 680-4~5,681-1~6,681-8~9, 682~683,683-1~4, 683-8~11,684,684-1~4, 685,685-1~4,685-6,685-8, 685-10~11,685-13, 685-15~24,685-26~33, 685-36~48,686,686-1~5, 686-7~9,686-11~16, 686-18~37,686-39~45, 686-48~50,686-52~53, 686-56,686-60~70, 686-76~84, 686-86~87, 686-89~110, 686-113, 686-118~121,686-127~135, 686-137,686-140~141, 686-144~145,686-147, 686-149,686-151,686-154, 686-155~156,686-157~160, 686-161~165,686-168, 687-2,688-1~2,688-4, 688-7~9, 689-2~3,689-5, 689-7~8,690,690-1~6,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90-8~11,690-13~18, 690-19~44,690-48~50, 690-52~60,690-62, 690-65,690-67,690-69~82, 690-85~87,690-89~98, 690-100,690-103,690-107, 690-109, 690-110~114, 690-117~122, 690-125, 690-127, 690-131~148, 690-150, 690-153~156, 690-158, 690-160, 690-162, 690-164~167, 690-169~170, 690-174, 690-182, 690-189, 690-191~193,690-196~197, 690-203~,207,690-209~210, 690-212~213,690-216~226, 690-228,690-230, 690-232, 690-234~243,690-246~247, 690-251~256,690-258, 690-261~264,690-267~268, 690-270,690-276~277, 690-279,690-281~290, 690-292,690-295~298, 691, 691-2~3,691-5~8, 691-10~12,691-14, 691-16~20,691-22~25, 691-28~30,691-34~43, 692-1~3,692-5,692-8~10, 692-18~31,693-1~13,693-15,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693-19~25,693-28~31, 694-1~2,694-4~8,694-10~23, 694-25~37,695-1~7, 696-1~16,697-1~2, 697-4~26,697-32,697-34, 697-36,697-42~61,698-1~4, 698-6~7,698-9~16,698-19, 698-22,698-24~26, 698-28~31,699-1~3, 699-6~7,699-14,700-1~2, 700-4,702,702-2~5, 703~704,704-1~6,705,705-3, 705-5~16,714,714-2~3, 714-5~7,715,715-1,716, 716-1, 717, 717-1,718~720,720-1~3, 721,721-1, 722-1,723~724, 724-2,724-8, 724-15, 724-17,724-19,724-25~54, 725~726,726-1~4, 727, 727-1~2,728,728-1~9, 729~732,732-1,733~734, 734-1~6,735,735-1, 736~738,738-1~2,738-5, 739~740,740-3,741~753, 753-1,754,754-1~3,755, 755-1,756,756-1~2,757~758, 758-1,759,759-1,760, 760-1~2,762,764,764-1, 765,765-1~2,766,766-1, 767,767-1, 768, 768-1~4,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769~773,773-1,774, 774-1~4,775~787,787-1, 788,788-1~2,789~793, 794-1~2,795,798~810, 810-1~3,811,811-1, 812~814,814-1,815~818, 818-1,819~820,820-1, 821,821-1~2,822, 822-1~2,823,823-1~7, 824~825,825-1~2,826, 826-1~3,827,829~832, 832-1~2,833,833-1,834, 834-1,835~837,837-1~3, 838~842,844~845, 845-1~2,846~849,849-1~3, 850~854,854-1~2,855~860, 860-2,861,861-2,862~863, 863-1,864~867,867-1~3, 878,878-1,879,879-1~2, 880,880-1,881,881-1, 882,882-1,883~884,884-1, 885,885-1,886~892, 산1,산1-2,산2~산3, 산3-1~8,산5,산5-1~4, 산5-6~15,산6,산7-1~5, 산7-7,산7-9~18,산8,산8-1, 산9,산10-1~3,산12, 산14-1~11,산14-13~15, 산15,산16-1~8,산17-1~7, 산18~산20,산20-1~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21~산22,산22-1,산23, 산24-1~2,산24-4~5,산25, 산26-1~3,산27,산28-1~9, 산29,산29-1~2,산30,산30-1, 산31-1~11,산32-1~4, 산33-1,산33-3~4,산33-7~25, 산34-1~5,산35-2,산35-5~7, 산36-1,산37-1,산37-3,산38, 산39-1,산39-3~18,산40, 산40-1~4,산41,산43, 산43-1~7,산43-9~33,산44, 산44-1,산45-1~19,산46, 산46-1~5,산48~산49, 산51-1~8,산52-1~2,산54, 산55-1,산55-3~4,산56-2, 산57~산58,산59-1,산59-3~4, 산60,산60-1~2,산63~산66, 산66-1,산67,산67-1, 산68-1~4,산69~산70, 산70-1~4,산71,산71-1, 산72-1,산72-3~5,산72-7, 산72-9~11,산73,산73-1, 산74,산74-1,산75~산76, 산76-1,산77~산80, 산80-1~4,산83,산83-1~2, 산84~산85,산85-2~33, 산86~산87,산87-1,산89, 산89-1,산90~산91, 산91-4~15,산92-1~15,산93, 산93-1~4,산94,산94-1,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95,산95-1,산96-1~9, 산97-1,산97-3,산98-1, 산98-3,산99,산99-1~2, 산100,산100-1,산101-1~3, 산101-6,산101-7~8,산102-22, 산102-24~26,산103-2~4, 산103-6,산103-11~16, 산104-1~2,산104-4,산105-1, 산105-3~5,산106-1, 산107-1,산109-1~2, 산110-1~3,산111,산111-1, 산112,산112-1~7, 산112-9~14,산112-17~22, 산113-1~-2,산113-4~5, 산113-7,산113-9~12, 산113-19,산113-21~36, 산114~산115,산117-2~3, 산118,산118-1~2,산119-1~3, 산119-5~6,산119-8~11, 산119-13~15,산119-17, 산120-1,산120-4~8, 산120-10~16, 산121-1~5,산122, 산122-1~2,산123, 산123-1,산124, 산125-1~5,산126-1~2, 산126-4~9,산140-5~7, 산140-15,산140-20, 산140-22,산140-25~26, 산141-3~4,산142-2,

구 분	법정동	동장수	행정운영동	관 할 구 역
				산143-2,산143-4, 산144-1~2,산146-1, 산147,산147-2~6, 산150,산150-1~3, 산153-2,산154-2, 산156-2~3, 산157-2~5,산209-2, 산211-2,산212-2, 산213-2,산216~산218, 산218-1,산219~산220, 산220-1,산221, 산221-1, 산222~산223, 산223-1,산224, 산224-1,산225, 산225-1~2, 산226,산226-1, 산226-2 금곡동 일원
	불로동 대곡동	1	불로대곡동	- 불로동 일원, 대곡동 일원
	당하동 원당동	1	원당동	당하동 1, 2-1, 2-2, 2-4, 2-5, 2-7, 3-1, 3-5, 3-7, 3-9 ~ 3-12, 4, 4-3, 5, 5-5, 8-1, 12-2, 12-4, 17-6, 17-8, 17-1, 19-1, 21, 53, 54, 57, 57-3 ~ 57-10, 57-13, 60, 60-1, 61, 61-1 ~ 61-6, 61-8 ~ 61-11, 62, 62-1, 62-3, 62-5 ~ 62-13, 62-15, 63, 63-3,

				71-6, 71-7, 74, 76-3, 76-4, 77, 78-1, 78-2, 79-1 ~ 79-11, 79-13, 80, 80-1, 81-1 ~ 81-3, 82-1 ~ 82-3, 83-1, 84-1 ~ 84-5, 85-1, 85-2, 86, 87-1 ~ 87-8, 88, 89-1 ~ 89-5, 89-7 ~ 89-10, 90-1 ~ 90-5, 91-1, 91-2, 92-1 ~ 92-5, 93-1 ~ 93-5, 94-1 ~ 94-3, 95, 95-1 ~ 95-5, 96, 96-1 ~ 96-7, 97 ~ 111, 99-1 ~ 99-5, 102-1, 102-3, 102-4, 112-1 ~ 112-5, 113, 113-1, 114, 115, 115-1, 116-1 ~ 116-3, 117-1, 117-3 ~ 117-6, 118, 118-1 ~ 118-7, 119, 120, 122, 122-1, 122-3, 122-5 ~ 122-7, 123, 123-1, 123-3 ~ 123-5, 125, 133-1 ~ 133-3, 188, 214-2, 214-3, 215-1, 215-5, 215-7, 216-2, 216-3, 218, 218-1, 219, 220-1 ~ 220-3, 221-1 ~ 221-4, 223-5 ~ 223-7, 223-12, 223-13, 225 ~ 227, 228-1, 228-3, 229, 229-1, 230-1, 230-3 ~ 230-5, 231-1, 231-3, 233-1 ~ 233-3, 234, 235-1 ~ 235-3, 236, 237, 237-1 ~ 237-9, 237-4 ~ 237-9, 238 ~ 241, 241-1, 243, 247, 248-1, 248-3, 249-1, 250-1, 250-2, 323-1, 323-3, 391, 491-2, 491-3, 626, 626-2 ~ 626-5, 639-1, 639-2 640-1, 640-2, 641, 641-1, 642, 643, 644-2, 645, 645-1, 646-1, 646-3, 650, 651, 652-2, 653-1 ~ 653-5, 654, 654-1, 654-2, 655, 655-1, 655-3, 656-1 ~ 656-3, 659-1 ~ 659-5, 660-4, 661-12, 662-1 ~ 662-3, 663, 663-2, 664, 665, 665-1 ~
--	--	--	--	---

				665-4, 666, 666-1, 666-2, 667 ~ 670, 671-1, 671-4, 671-7 ~ 671-10, 672-1 ~ 672-3, 672-5 ~ 672-8, 673, 674-1 ~ 674-4, 675 ~ 678, 679-1, 679-2, 679-3, 680-1, 681-1, 681-2, 682, 683-1, 683-2, 684, 685-1, 685-2, 685-3, 686-1 ~ 686-3, 687, 689-1 689-3, 690, 690-1 ~ 690-3, 691-1 ~ 691-5, 692-2 ~ 692-4, 693 693-1 ~ 693-6, 695-1, 695-2, 696-1 ~ 696-7, 697-1 ~ 697-3, 698-1, 699, 699-1 ~ 699-10, 700, 701, 701-1 ~ 701-4, 701-6 ~ 701-18, 702, 702-1, 702-3 ~ 702-7, 703-1 ~ 703-7, 704, 704-1 ~ 704-3, 705-1 ~ 705-6, 706-1 ~ 706-3, 707-1, 707-2, 707-5, 707-6, 708, 708-2, 708-3, 709-2, 710, 710-2 ~ 710-5, 711 ~ 713, 713-2 ~ 713-4, 714-1, 714-2, 715, 716, 716-1, 717, 717-4, 717-5, 718, 719-4, 719-5, 720-2, 720-3, 721-1, 721-4, 722, 724, 724-1, 725-1, 726, 726-1, 726-2, 726-5 ~ 726-8, 726-11 ~ 726-32, 727-2, 727-5 ~ 727-8, 728, 728-1, 728-3, 728-4, 729, 729-2, 729-5, 729-8, 729-9, 730, 730-1, 732, 732-1, 733-1 ~ 733-7, 734-1, 734-4 ~ 734-12, 735-1 ~ 735-8, 735-10 ~ 735-14, 736-1, 736-2, 737-1, 737-2, 738, 739-1, 740-1 ~ 740-5, 740-6, 741-1 ~ 741-9, 742-1, 743-1,
--	--	--	--	---

				743-5, 743-6, 744, 744-1, 744-2, 744-5, 745-2, 745-3, 746-1, 746-3 ~ 746-9, 747, 747-3, 748-1 ~ 748-3, 748-6, 748-7, 748-9, 749-1 ~ 749-8, 749-12, 749-13, 749-15 ~ 749-29, 749-31 ~ 749-38, 750-1 ~ 750-3, 750-5, 750-6, 750-10 ~ 750-22, 751-1, 752, 964-16 ~ 964-18, 981-2, 983-3, 984-1, 985-1, 988, 989, 989-1 ~ 989-12, 990, 990-1 ~ 990-4, 991, 996-1, 996-3, 997, 997-1, 998, 1019-1 ~ 1019-5, 1020-1 ~ 1020-9, 1021-1 ~ 1021-8, 1022, 1022-1, 1023, 1023-1 ~ 1023-5 1024, 1025, 1025-1 ~ 1025-11, 1026, 1026-1 ~ 1026-13, 1027-1 ~ 1027-3, 1027-14 ~ 1027-19, 1028-1 ~ 1028-24, 1029-1 ~ 1029-10, 1030-1 ~ 1030-9, 1031, 1031-1, 1032, 1033-1, 1033-2, 1033-3, 1033-5 ~ 1033-10, 1034-1 ~ 1034-4, 1035, 1036-1, 1036-2, 1037-1 ~ 1037-6, 1038-1 ~ 1038-6, 1039-1 ~ 1039-16, 1040, 1040-1 ~ 1040-3, 1042-1 ~ 1042-4, 1043-1 ~ 1043-9, 1044-1 ~ 1044-12, 1045-1 1045-13, 1046-1 ~ 1046-4, 1047-1 ~ 1047-6, 1048-1 ~ 1048-11, 1049 ~ 1061, 1061-1, 1062 ~ 1064, 산41-2, 산48 ~ 산50, 산51-1, 산52, 산53-1, 산54, 산54-1, 산55-4, 산55-5, 산55-11, 산68-1, 산69 ~ 산73, 산74-1,
--	--	--	--	---

				산74-2, 산75, 산75-1, 산76, 산77-1, 산78, 산79-2, 산80-1, 산81, 산83, 산84, 산85-1, 산87, 산89, 산92-1, 산92-2, 산92-4, 산93, 산93-2 ~ 산93-9, 산94, 산94-2, 산100-5, 산100-6, 산100-9 ~ 산100-12, 산100-15, 산100-16, 산100-18, 산100-19, 산100-21 ~ 산100-26, 산103, 산103-2 ~ 산103-5, 산104, 산105-5, 산105-7, 산105-9, 산105-13, 산105-17, 산105-20, 산105-26 ~ 산105-29, 산106-1, 산107, 산107-1, 산108-1 ~ 산108-5, 산109-1, 산110-1, 산113-2, 산114, 산114-2 ~ 산114-6, 산115, 산115-2, 산115-3, 산115-5, 산116-3 ~ 산116-5, 산117-1 ~ 산117-3, 산117-6, 산118-1 ~ 산118-4, 산118-6, 산118-10, 산118-12 ~ 산118-14, 산119, 산120, 산120-3, 산120-6, 산122, 산122-2, 산125, 산125-1, 산125-2, 산125-7 ~ 산125-9, 산125-14 ~ 산125-16, 산127, 산127-7, 산129-3, 산132-1, 산132-7, 산135, 산135-3, 산136, 산136-1, 산136-2, 산138-1 ~ 산138-3, 산139-1 ~ 산139-3, 산139-4, 산140, 산141, 산141-1, 산142 ~ 산145, 산145-1, 산145-3 ~ 산145-14, 산147-1 ~ 산147-3, 산147-5, 산147-7, 산147-8, 산147-11, 산149, 산149-1, 산149-2, 산150, 산150-2, 산151-1, 산151-3, 산154-1 ~ 산154-5, 산176, 산177, 산177-1, 산177-7 ~ 산177-9 원당동 567, 567-1, 567-3, 568-3, 568-4, 568-6, 569, 572-8,
--	--	--	--	---

				573-8, 579-2, 579-3, 599, 599-2, 599-3, 600, 600-1, 600-2, 600-3, 601, 602-1 ~ 602-4, 603-1 ~ 603-7, 604, 612, 612-1, 613, 613-1, 613-2 ~ 613-7, 614, 615, 616, 616-2, 617-1 ~ 617-3, 625-1, 626-1, 626-2, 626-3, 626-5 ~ 626-7, 627-4 ~ 627-6, 627-9(일부), 628(일부), 636-3(일부), 636-9(일부), 636-14 ~ 636-16(일부), 637-4(일부), 637-5, 637-6(일부), 원당동 639, 640-2, 640-5 ~ 640-6, 640-7 ~ 640-8(일부), 640-9 ~ 640-11, 640-12(일부), 640-13, 640-16 ~ 640-29, 640-32(일부), 641-1, 641-2, 641-5, 641-6, 643-1, 643-8 ~ 643-12, 644, 645, 645-2 ~ 645-8, 648, 648-1, 648-3, 648-4, 649(일부), 652(일부), 653(일부), 654, 654-1, 655, 655-2, 655-3, 656, 656-2 ~ 656-4, 656-6 ~ 656-10, 656-12 ~ 656-15, 656-24 ~ 656-30, 656-32 ~ 656-38, 683-1 ~ 683-4, 735, 736, 736-1~736-4, 737-1, 778-1, 778-4, 778-5, 778-7 ~ 778-10, 782, 782-1, 782-2, 782-4, 782-5, 782-6(일부), 783, 783-3(일부), 784(일부), 784-1 ~ 784-2(일부), 790, 795-1 ~ 795-7, 796-1 ~ 796-19, 797-1 ~ 797-13, 798-1 ~ 798-9, 799-1 ~ 799-6, 800-1 ~ 800-10, 801, 802-1 ~ 802-8, 803-1 ~ 803-13,
--	--	--	--	---

				804-1 ~ 804-5, 805-1 ~ 805-6, 806-1 ~ 806-7, 807-1 ~ 807-5, 808-1 ~ 808-15, 809, 810-1 ~ 810-14, 811-1 ~ 811-12, 812-1 ~ 812-10, 812-13, 813-1, 813-2, 814-1 ~ 814-12, 815-1 ~ 815-10, 816, 816-1 ~ 816-10, 817-1, 817-5 ~ 817-11, 818-1 ~ 818-6, 819-1, 819-2, 820-1 ~ 820-11, 821-1 ~ 821-14, 822-1 ~ 822-15, 823-1 ~ 823-6, 824-1 ~ 824-14, 825-1 ~ 825-16, 826-1 ~ 826-3, 827-1 ~ 827-9, 828-1 ~ 828-8, 829-1 ~ 829-10, 830-1 ~ 830-3, 831-1 ~ 831-13, 832-1 ~ 832-11, 833-1 ~ 833-14, 834-1 ~ 834-7, 835-1 ~ 835-10, 836-1 ~ 836-5, 837-1 ~ 837-12, 838-1 ~ 838-14, 839-1 ~ 839-3, 840-1 ~ 840-6, 840-8 ~ 840-11, 841-1 ~ 841-7, 842, 842-1 ~ 842-5, 843-1 ~ 843-6, 원당동 844-1 ~ 844-5, 845-1 ~ 845-9, 846-1 ~ 846-6, 847-1 ~ 847-10, 848-1 ~ 848-7, 848-9, 849, 849-1, 850-1, 850-2, 851-1 ~ 851-6, 852-1 ~ 852-3, 853-1 ~ 853-8, 854-1, 854-2, 854-3 ~ 854-7, 854-9 ~ 854-16, 855-1 ~ 855-7, 856, 856-1 ~ 856-4, 857, 857-1 ~ 857-3, 858 ~ 901, 887-1, 887-2, 산40-4, 산89-4, 산90, 산95-1, 산95-6, 산95-7, 산98-2, 산98-7, 산102-4, 산102-5, 산103-1 ~ 산103-3, 산103-7(일부), 산104 ~ 산106,
--	--	--	--	---

				산105-1(일부), 산106-1 ~ 산106-3(일부), 산111-7 ~ 산111-8, 산111-10, 산111-12(일부), 산111-30, 산111-32 ~ 산111-33(일부), 산111-34 ~ 산111-35, 산111-43(일부), 산111-45(일부), 산111-47(일부), 산113, 산113-3, 산114, 산114-3, 산116, 산117-1~ 산117-4, 산118, 산118-2, 산124, 산125-1, 산125-2, 산125-5, 산125-6, 산126-2, 산126-3, 산135
	마전동 당하동 시천동 백석동	1	당하동	마전동 518-7, 520-5, 521-11, 521-13~14, 521-1~5, 521-7~9,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9, 524-10~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4, 528, 529, 529-1~2, 529-4, 529-6~11,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535-3~7,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616, 616-1, 616-6, 628, 628-4, 629, 629-1~2, 629-4~5, 629-16~17, 629-19, 629-22~28, 710, 710-2~3, 711~712, 산168-1~15, 산169, 산170-4, 산170-8, 산170-13,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1~2, 산196-5, 산196-7, 산196-15, 산196-17, 산196-19~20, 산196-23, 산196-23, 산196-25~29, 산197-1, 산197-5-10, 산198, 산198-1, 산199-1, 산199-3,

				산199-5~10, 산200, 산200-1, 산201-1~2, 산202,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 당하동 748-4~5, 748-8~9, 750-7, 750-20, 753~757, 759-1~4, 760, 760-1, 761, 761-1~6, 762-1~4, 763, 763-1, 764, 765-1~41, 766~768, 768-1~2, 769, 769-1~2, 770, 770-1~5, 771, 771-1~2, 772, 772-1~7, 773~774, 774-1~2, 775, 775-2~8, 776, 776-1~2, 777, 777-1~6, 778-1~2, 779, 779-1~9, 780~781, 781-1~2, 781-4~7, 781-9, 782-2, 783, 783-2~3, 786, 786-1, 787, 787-1~2, 788, 788-1, 789, 789-1~4, 789-6, 790~791, 792-1~3, 793~7, 797-1~5, 798, 798-1, 799, 800-3~4, 800-6, 803, 803-1, 805, 805-1, 806~807, 807-1~2, 808-1~2, 809~12, 813-1~2, 814~818, 819-1~2, 819-4~5, 820-1~6, 820-9~12, 821~823, 823-1~3, 824, 827-1~3, 827-5 827-7, 827-9, 828, 828-2~6, 828-8, 828-11, 829-1~2, 829-5~6, 829-9~10, 830, 830-2, 831, 831-1~6, 832-1, 832-4~11, 833-1~3, 834, 834-1~5, 834-8, 834-11~24, 835-1, 835-3~6, 835-9~15, 836-1~3, 836-7~8, 836-11~14, 837, 837-2~4, 838-1~3, 838-5~6, 838-9, 839, 839-6, 840-1, 840-5~6, 840-8, 840-13~17, 841, 841-3, 842-2, 843~844, 844-2~14, 846-1~5, 846-6~8, 847-1~6, 848-1, 848-4, 848-6, 848-8, 849-1~3, 849-6~7, 850-1, 850-4~7, 851, 851-1~3,
--	--	--	--	--

				851-6, 851-10~12, 851-16~22, 851-29~32, 853-1, 853-5, 854-1, 854-3, 854-5~6, 855, 857-2~3, 858-5, 859, 859-1, 859-4~5, 859-7, 860~863, 863-1, 872-4, 876-1, 876-4~5, 877-2~4, 877-6, 878, 880-5, 880-8, 880-11, 882, 883-5~10, 883-15~18, 883-25, 888-9, 895-1, 910-3~4, 942-20~21, 943, 943-2~3, 943-5, 943-7, 943-14, 943-16~17, 943-25~44, 943-47~54, 943-58~60, 955-4, 955-6, 955-8~12, 955-14~17, 955-20, 955-27, 956-1~28, 957, 957-1~8, 957-10~18, 957-20~23 957-30~31, 958, 958-1~4, 958-6, 958-8~11, 958-13, 958-17~19, 958-23~26, 958-31~34, 958-39~42, 958-45~46, 958-48, 958-50~58, 958-60~61, 958-64~68, 959, 959-1, 960, 960-1~2, 960-4, 961, 961-1, 962, 962-1~6, 999, 1001, 1001-1, 1002, 1002-1, 1003, 1003-1~5, 1003-9, 1004-1~4, 1005, 1005-1, 1005-4, 1006~1007, 1007-1~2, 1007-5~6, 1019~1020, 1065-1~6, 1066-1~5, 1067-1, 1067-4~5, 1068~1074, 1075-1~9, 1075-21, 1076-1~3, 1077-1~16, 1078-1, 1078-4~8, 1079-1~9, 1080-1, 1080-12~20, 1080-24~28, 1081-1~8, 1082-1~12, 1083-1~16, 1084-1~14, 1085-1~11, 1086-1~10, 1087-1~24, 1088-1~3, 1089-1~11, 1090-1, 1090-6, 1091-1~7,
--	--	--	--	---

				1092-1~21, 1093-1~6, 1094-1~4, 1095-1~7, 1096-1~4, 1097-1~15, 1098-1~12, 1099-1~4, 1100-1~10, 1101-1~15, 1102-1~5, 1103-1~2, 1104-1~3, 1105-1~4, 1106-1~13, 1107-1~10, 1108-1~12, 1109-1~11, 1110-1~17, 1111-1~8, 1111-10~12, 1112-1~2, 1113-1~6, 1114-1~6, 1115-1~8, 1116~1140, 산101-1, 산102-1, 산102-3~5, 산118-5, 산121-1, 산122-1, 산152-1, 산152-6~8, 산155, 산157, 산160, 산161-1~47, 산161-49~55, 산162-1, 산162-3~39, 산164, 산164-3, 산165, 산170, 산172-1~3, 산172-8~12, 산172-14, 산174-8~9, 산174-13, 산176, 산178-1~4, 산179-1, 산179-3~6, 산181, 산181-2~3, 산 182, 산182-1, 산183-2, 산183-4~5, 산185-1, 산185-4, 산185-6, 산185-8~9, 산186-3, 산189-4, 산189-7, 산192-1, 산192-3, 산192-8, 산192-10, 산193, 산194, 산195-6, 산196-1, 산196-3~5, 산197-1, 산202-6, 산 203-1, 산203-3, 산211-7, 산213-2, 산213-6, 산213-12, 산214-1, 산217-2, 산217-13, 산217-17, 산218-1~2, 산220-산221, 산221-1, 산221-3, 산221-5, 산222-7, 산225, 산226-1~3, 산228, 산228-1~4, 산230, 산234-8, 산234-44 시천동 일원 백석동 일원
	오류동	1	오류왕길동	오류동 일원, 왕길동 일원

	왕길동			
	마전동	1	마전동	마전동 463, 463-2~3, 463-7~16, 464, 464-1~2, 464-4~7, 465, 465-1~6, 466-1~9, 467, 467-1~2, 468, 468-1~3, 469-1~21, 470-1~2, 470-4~6, 470-10~15, 470-17~19, 473, 497-1, 497-3, 499, 499-1, 499-3~4, 499-9, 500~503, 503-2, 504, 505-1~3, 506, 506-1, 507, 508-1~4, 509-1~2, 510~512, 512-1~4, 513, 513-1~4, 514, 514-1~2, 515, 515-1~12, 515-14~32, 515-40, 515-42~44, 515-46~47, 516, 516-1~23, 517, 517-1~8, 517-10, 517-16, 518, 518-1, 518-3~4, 520-1, 520-3, 520-6, 626-22~24, 626-42, 628-3, 629-11, 631, 631-1, 632-1, 632-4~23, 639-39~41, 639-47, 639-81~83, 639-85~87, 646, 646-1, 646-3, 646-9, 705-4, 706, 709, 710-4, 713, 713-1~4, 713-16, 713-19~31, 999-1~25, 1000-1~12, 1001-1~7, 1002-1~18, 1003-1~2, 1004, 1005-1~24, 1006-1~17, 1007-1~11, 1008-1~12, 1009-1~8, 1010-1~5, 1011-1~3, 1012-1~2, 1013~1014, 1015-1~6, 1016-1~10, 1017-1~5, 1018-1~4, 1019, 1020-1~15, 1021-1~7, 1022-1~8, 1023, 1024-1~18, 1025-1~20, 1026-1~7, 1027-1~5, 1028-1~16, 1029-1~2, 1029-5~7, 1030-1~3, 1031-1~6, 1053-1~4, 1054-1~7, 1055-1~3, 1056-1~7, 1057-1~7, 1058-1~5, 1059-1~15, 1060-1~10, 1061-1~9, 1062-1~9, 1063-1~13, 1064-1~5, 1065-1-4, 1066-1~8, 1067~1070, 1075, 1083~1115, 1116-1~2, 1117,

				산101-4, 산102-12, 산103-5, 산103-9~10, 산108-1, 산120-17, 산127, 산128, 산128-1~6, 산128-8~13, 산129-2, 산129-4, 산129-11, 산129-14, 산129-17~18, 산129-24~27, 산140-27~28, 산146-8, 산158, 산158-2~4, 산158-9, 산159-1~2, 산159-4, 산159-6~11, 산159-13, 산159-16~18, 산159-20, 산160-13, 산163~산164, 산164-1, 산165-1~4, 산166, 산174-1~2, 산175-1~8, 산175-10~11, 산176-1, 산176-4~5, 산176-10, 산177-1, 산178-1~2, 산178-7, 산179-1~8, 산180-1~8, 산181-6, 산185-7~10, 산186-1, 산186-5~6, 산186-8~10, 산187-1~7, 산188-1, 산188-4, 산194-1~2, 산194-4
	당하동 원당동	1	아라1동	당하동 159, 223-1, 339, 339-1~2, 347, 348-1, 350-1~2, 350-4~7, 350-14~18, 351, 351-1~6, 402, 1228, 1229, 1229-1~17, 1230, 1231, 1231-1~8, 1232, 1233, 1233-1~4, 1234, 1235, 1235-1~13, 1236, 1237, 1237-1~4, 1238, 1239, 1240, 1241, 1241-1~4, 1242, 1243, 1243-1~3, 1244, 1245, 1246, 1246-1~10, 1247, 1248, 1248-1~2, 1249, 1250, 1250-1~2, 1251, 1252, 1253, 1254, 1254-1, 1255, 1256, 1256-1~11, 1257, 1258, 1258-1~12, 1259, 1260, 1260-1~12, 1261, 1261-1~12, 1262, 1262-1~9, 1263, 1264, 1264-1~8, 1265, 1266, 1267, 1267-1~5, 1268, 1269, 1269-1~6, 1270, 1271, 1272, 1272-1~9, 1273, 1274, 1275, 1276, 1276-1~3, 1277,

				1278, 1278-1, 1279, 1280, 1280-1~11, 1281, 1282, 1282-1~12, 1283, 1284, 1284-1~13, 1285, 1286, 1286-1~18, 1287, 1288, 1288-1~6, 1289, 1290, 1290-1~11, 1291, 1292, 1292-1~11, 1293, 1294, 1295, 1295-1~9, 1296, 1297, 1297-1~11, 1298, 1299, 1299-1~8, 1300, 1300-1~8, 1301, 1302, 1303, 1304, 1304-1, 1305, 1305-1, 1306, 1307, 1308, 1308-1, 1309, 1310, 1310-1, 1311, 1311-1, 1312, 1312-1~7, 1313, 1314, 1314-1~3, 1315, 1316, 1316-1~7, 1317, 1318, 1318-1~9, 1319, 454-1~3, 454-6~7, 455-1~3, 455-5~6, 456-1~17, 456-19, 456-23~31, 457-1~4, 457-6~7, 457-11, 458-1~10, 458-13~15, 459-1, 459-3~4, 459-7~9, 462-6~7, 473-4, 473-6~9, 474-9, 474-12~13, 475-6, 475-8~9, 476-7, 476-9, 477-18, 477-20~21, 478-3~4, 491, 491-1, 491-4~7, 492, 493, 494, 494-1, 494-3~4, 495-3, 495-5, 496, 496-4~5, 497-4~5, 496-4~5, 497-4~5, 594-3~4, 595, 596-1, 597-2, 598-1, 601-1, 602, 603-1, 603-4, 603-6~7, 604, 605-1, 606-1, 607-5~6, 609-2, 609-5~6, 610-1, 610-4~5, 610-7~8, 611-1, 611-3~5, 612-1~8, 613, 613-1~4, 615, 615-1, 616, 616-1, 617-1, 618-1, 619-1, 620, 621-1, 622, 623, 624-1~4, 625-1~8, 625-10~15, 626, 626-1~4, 627, 627-1, 628, 629, 630, 631-1~3, 632, 633-1, 633-6~8, 646-5~7, 648, 648-1, 649-1~4, 650, 650-1, 651, 651-2, 655-1~3, 656-1~3, 658-1~8, 658-18~19, 660-1, 660-6~7, 661-5, 661-16, 661-23~25, 964-28, 966-2, 979-1, 980-1, 988, 991-2, 992, 993, 994, 995, 산28-1, 산29-2~3, 산30-2, 산32-1~2, 산33-1, 산34,
--	--	--	--	--

				산35-4, 산35-5, 산46-1, 산111-3 원당동 1059, 1059-1~2, 1060, 1061, 1061-1, 1062, 1063, 1063-1~3, 1064, 1065, 1065-1~6, 1066, 1067, 1067-1~29, 1068, 1069, 1069-1~6, 1070, 1071, 1071 -1 ~11, 1072, 1073, 1073-1~3, 1074, 1075, 1075-1~7, 1076, 1077, 1077-1~5, 1078, 1079, 1079-1~3, 1080, 1081, 1081-1, 1082, 1082-1~3, 1083, 1084, 1084-1, 1085, 1086, 1086-1~3, 1087, 1088, 1088-1~7, 1089, 1090, 1090-1~4, 1091, 1092, 1092-1, 1093, 1094, 1094-1~6, 2-1, 2-4, 2-5~9, 2-11~15, 8, 8-1~3, 10, 10-1~7, 11, 11-2~6, 12-2~7, 15-2~8, 16-3~11, 17-2~5, 17-7~9, 25-4, 26-1~5, 26-7~11, 26-14, 62-4, 62-10, 62-12~13, 62-19~20, 288-12~13, 288-17, 288-19~20, 288-22~24, 290-2~5, 291-2, 291-4~5, 292-2~5, 294-2~3, 296-1~2, 297-2~5, 298-1, 298-3, 336-1~3, 336-5, 337, 337-2~4, 337-6~9, 338-3~4, 339-4~6, 339-9, 363-5, 365-1, 365-3, 365-5, 365-7, 365-9~10, 365-12~13, 366-4~5, 367-10, 375-1, 375-3~4, 375-8, 375-10, 377-1~2, 377-5~7, 377-10, 377-13~14, 377-16, 378-1~7, 379-7, 486-1, 486-6~7, 486-11, 486-23, 486-36~40, 509-2~3, 509-8, 509-11~12, 743-14, 744-1(일부), 745-3, 1036(일부)
	원당동	1	아라2동	원당동 544, 547-1, 547-3~6, 548-2~3, 549, 551-7, 555, 555-3 556-1, 557-2, 557-4, 557-6, 557-10~11, 745-10,

				745-12~13, 756-1, 954, 955, 956, 957, 986, 986-1, 987, 987-1~2, 988, 988-1, 989, 989-1~10, 990, 991, 991-1~18, 992, 993, 993-1~14, 994, 995, 995-1~4, 996, 997, 997-1~10, 998, 999, 1000, 1000-1~28, 1001, 1002, 1003, 1003-1~5, 1004, 1005, 1005-1~14, 1006, 1007, 1008, 1008-1~7,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6-1~5, 1017, 1018, 1018-1~3, 1019, 1020, 1020-1~8, 1021, 1022, 1022-1, 1023,1024, 1025, 1026, 1026-1, 1027, 1028, 1028-1~2, 1029, 1030, 1030-1~12, 1031, 1032, 1033, 1033-1~12, 1034, 1035, 1035-1~5, 1036(일부), 1037, 1038, 1038-1~2, 1039, 1040, 1040-1~5, 1041, 1041-1~14, 1042, 1043, 1043-1~14, 1044, 1045, 1045-1~8, 1046, 1047, 1047-1~4, 1048, 1048-1~11, 1049, 1050, 1050-1~7, 1051, 1052, 1052-1~9, 1053, 1054, 1055, 1055-1~2, 1056, 1056-1~12, 1057, 1058,3, 3-1~3, 5, 5-1~10, 5-13~16, 6, 6-1~3, 62, 62-6, 62-8~9,62-16, 62-18,63, 63-2~11, 65-3~5, 66-2~3, 67-2, 68-2~3, 69-2~3, 71-2~3, 71-5~7, 73, 73-1~2, 79, 79-1~3,81-2, 81-4, 81-6, 178-3, 264, 265, 266, 267-1, 271-3, 272, 273, 273-1, 274, 275, 276-1~3, 276-5~8, 277-1, 278-1~2, 278-5, 283-1, 284-1, 285-1~5, 288-1~6, 288-8~10, 329-6~9, 330-8 ~10, 486 486-9,486-13,486-31, 486-33~35, 539-38~40, 579-3, 산34(일부), 산35(일부), 산36, 산40-4,
--	--	--	--	---

				산40-7(일부), 산46-1, 산94, 산95-1, 산95-6~7, 산98-1~2, 산 98-7, 산102-4, 산102-6(일부), 산105-1(일부), 744-1(일부)
--	--	--	--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5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검단구	백석동	- 백석동 일원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 백석동 80, 80-11, 80-16, 80-52, 81-10, 산33-6~7, 산34-2, 산34-7~9, 산34-11~12 - 검암동에서 일부 편입지역 포함 검암동 414-41, 414-127, 414-270, 414-282, 414-469, 414-470, 414-471, 414-472
	시천동	시천동 일원
	마전동	- 마전동 일원 - 왕길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 - 왕길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왕길동 219-18 -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당하동 925-21~22, 925-24, 1012-1, 1015-3, 1018-1 - 불로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불로동 725-8~9, 751-1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마전동 498, 498-1, 499-2, 541-1~2, 545-14, 545-18~24, 546-7, 547, 547-1~11, 547-13~16, 548, 548-1, 549, 550-1~5, 553-1, 555-1~2, 556, 556-1~2, 557, 558, 559-8~10, 559-12~14, 559-18, 559-23, 559-26~27, 559-34, 559-42, 582-10~11, 582-18, 582-21~22, 582-24, 582-26, 582-30, 609, 609-1~9, 610, 615, 615-1, 616-2, 616-4~5, 617-3~4, 617-6~7, 710-1, 713-10, 715~717, 산170-18~19, 산171-1, 산171-3~4, 산171-7, 산172, 산172-1~3, 산181-2~4, 산181-10~13, 산181-16, 산182, 산183-1~2, 산184-1~2, 산185-1~3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169필지) 마전동 518-7, 520-5, 521-1~5, 521-7,~9, 521-11, 521-13~14,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 524-9, 524-11, 524-14~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 529, 529-1~2, 529-4, 529-6~7, 529-9~10,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535-3~6,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 542, 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710, 710-2~3, 711, 712,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5, 산196-15, 산196-17, 산196-20, 산196-23, 산197-1, 산197-6~9, 산198, 산199-1, 산199-3, 산199-5~6, 산199-9, 산200,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 499-3(일부), 515-32(일부), 710-4(일부), 산180-5(일부), 산185-9(일부), 산194-4(일부)
당하동		- 당하동 일원 - 원당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83개 필지) - 원당동 457-1, 461, 461-1, 461-2, 462, 462-1, 462-2, 462-3, 462-4, 462-5, 462-6, 462-7, 462-8, 462-9, 463, 463-4, 463-5, 470, 470-1, 470-3, 481, 481-2, 481-3, 481-6, 481-7, 481-8, 481-9, 482, 482-1, 482-2, 482-3, 482-4, 482-5,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9, 483-10, 483-11, 483-12, 483-13, 485-2, 485-3, 485-7, 485-8, 485-9, 485-10, 485-11, 486-21, 486-27, 508, 508-1, 508-2, 508-3, 539-4, 539-5, 539-6, 539-7, 539-11, 539-12, 539-13, 539-14, 539-15, 539-25, 539-26, 539-27, 539-28, 457, 457-2, 463-1, 470-2, 481-5, 483-7, 485-1, 486-20, 486-22, 509-5, 539-2, 539-16, 539-29 - 원당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84개 필지) 당하동 188-8, 188-9, 188-10, 188-11, 279-4, 281-5, 313-2, 314-2, 314-8, 314-9, 314-10, 314-11, 314-12, 315-4, 315-8, 319-4, 319-7, 394-1, 394-2, 394-3, 395-1, 397-2, 397-4, 401, 401-1, 401-2, 401-6, 401-7, 401-8, 405-1, 405-2, 407-6, 407-7, 408-2, 409-2, 409-5, 412, 412-1, 412-2, 413, 413-1, 413-2, 413-3, 413-4, 414, 415-6, 964-9, 981, 188-6, 188-12, 188-15, 279-3, 280-6, 281, 281-11, 313-1, 313-4, 313-5, 314-5, 314-7, 315-5, 315-7, 319-3, 319-6, 320-3, 320-4, 340-3, 340-5, 341-3, 341-4, 383-1, 383-2, 388-1, 388-3, 401-5, 410-7, 414-1, 414-2, 414-3, 415, 415-1, 416-1, 964-7, 964-24

	-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169필지) 마전동 518-7, 520-5, 521-1~5, 521-7,~9, 521-11, 521-13~14, 521-21~22, 521-26, 522-1~5, 523, 524, 524-1~3, 524-5, 524-7, 524-9, 524-11, 524-14~16, 524-18~20, 525-1~3, 526, 526-1~2, 526-4, 526-6~7, 527, 527-1, 529, 529-1~2, 529-4, 529-6~7, 529-9~10, 530, 530-1, 531, 531-1~2, 532, 532-1~6, 533, 533-1, 534, 534-1~8, 535-1, 535-3~6, 536-1, 536-3~5, 537, 537-1, 538-1, 539, 540, 540-1~7, 540-9~11, 541, 542, 543, 543-1, 544, 544-1~3, 545-1~4, 545-6~13, 545-15~17, 545-27~29, 546-1~2, 546-5~6, 710, 710-2~3, 711, 712, 산181-1, 산181-14, 산181-17, 산196-5, 산196-15, 산196-17. 산196-20, 산196-23, 산197-1, 산197-6~9, 산198, 산199-1, 산199-3, 산199-5~6, 산199-9, 산200, 산203-1, 산203-3~5, 산204-1~2, 산204-4, 499-3(일부), 515-32(일부), 710-4(일부), 산180-5(일부), 산185-9(일부), 산194-4(일부)
원당동	- 원당동 일원 - 당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84개 필지) 당하동 188-8, 188-9, 188-10, 188-11, 279-4, 281-5, 313-2, 314-2, 314-8, 314-9, 314-10, 314-11, 314-12, 315-4, 315-8, 319-4, 319-7, 394-1, 394-2, 394-3, 395-1, 397-2, 397-4 401, 401-1, 401-2 ,401-6, 401-7, 401-8, 405-1, 405-2, 407-6 407-7, 408-2, 409-2, 409-5, 412, 412-1, 412-2, 413, 413-1, 413-2, 413-3, 413-4, 414, 415-6, 964-9, 981, 188-6, 188-12 188-15, 279-3, 280-6, 281, 281-11, 313-1, 313-4, 313-5, 314-5, 314-7, 315-5, 315-7, 319-3, 319-6, 320-3, 320-4 340-3, 340-5, 341-3, 341-4, 383-1, 383-2, 388-1, 388-3 401-5, 410-7, 414-1, 414-2, 414-3, 415, 415-1, 416-1,964-7 964-24 - 당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83개 필지) 원당동 457-1, 461, 461-1, 461-2, 462, 462-1, 462-2, 462-3, 462-4, 462-5, 462-6, 462-7, 462-8, 462-9, 463, 463-4 ,463-5 470, 470-1, 470-3, 481, 481-2, 481-3, 481-6, 481-7, 481-8 481-9, 482, 482-1, 482-2, 482-3, 482-4, 482-5,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9, 483-10, 483-11, 483-12 483-13, 485-2, 485-3, 485-7, 485-8, 485-9, 485-10, 485-11 486-21, 486-27, 508, 508-1, 508-2, 508-3, 539-4, 539-5 539-6, 539-7, 539-11, 539-12, 539-13, 539-14, 539-15, 539-25 539-26, 539-27, 539-28, 457, 457-2, 463-1, 470-2, 481-5 483-7, 485-1, 486-20, 486-22, 509-5, 539-2, 539-16, 539-29

	- 불로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137개 필지) 원당동 627-1~3, 627-9(일부), 628(일부), 629-1~2, 630, 631, 631-1~4, 632, 633, 634-1~6, 635-1~2, 636-1~2, 636-3(일부), 636-4~6, 636-9(일부), 636-10~13, 636-14~16(일부), 637-1, 637-3, 637-4(일부), 637-6(일부), 640-7~8(일부), 640-12(일부), 640-32(일부), 649(일부), 650, 651-1, 651-3~37, 652(일부), 653(일부), 782-6(일부), 783-3(일부), 784(일부), 784-1~2(일부), 793, 산32, 산33, 산34(일부), 산35(일부), 산40-7(일부), 산102-6(일부), 산103-7(일부), 산105-1(일부), 산106-1~3(일부), 산107-1~2, 산108-1, 산109-1~2, 산110-1, 산111-1~3, 산111-5~6, 산111-11, 산111-12(일부), 산111-13~24, 산111-31, 산111-32~33(일부), 산111-38~39, 산111-42, 산111-43(일부), 산111-45(일부), 산111-47(일부), 산136
불로동	- 불로동 일원 - 마전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불로동 725-8~9, 751-1 - 원당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137개 필지) 원당동 627-1~3, 627-9(일부), 628(일부), 629-1~2, 630, 631, 631-1~4, 632, 633, 634-1~6, 635-1~2, 636-1~2, 636-3(일부), 636-4~6, 636-9(일부), 636-10~13, 636-14~16(일부), 637-1, 637-3, 637-4(일부), 637-6(일부), 640-7~8(일부), 640-12(일부), 640-32(일부), 649(일부), 650, 651-1, 651-3~37, 652(일부), 653(일부), 782-6(일부), 783-3(일부), 784(일부), 784-1~2(일부), 793, 산32, 산33, 산34(일부), 산35(일부), 산40-7(일부), 산102-6(일부), 산103-7(일부), 산105-1(일부), 산106-1~3(일부), 산107-1~2, 산108-1, 산109-1~2, 산110-1, 산111-1~3, 산111-5~6, 산111-11, 산111-12(일부), 산111-13~24, 산111-31, 산111-32~33(일부), 산111-38~39, 산111-42, 산111-43(일부), 산111-45(일부), 산111-47(일부), 산136
대곡동	대곡동 일원
금곡동	금곡동 일원
오류동	- 오류동 일원 - 왕길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오류동 767-2, 768-2, 768-4, 768-7, 768-10, 865-9 - 왕길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왕길동 481-9~11, 482-1~2, 482-4~5, 482-8, 482-10, 483-1~4, 484, 484-1, 485-1~2, 485-5, 510-5~6, 510-12~13, 515-2~3, 519-1~2, 520-1~16, 521-1~2, 521-4~5, 521-10, 536-2~3,

		536-9, 536-15, 536-19~20, 536-22, 537-1~2, 537-5, 538, 538-1, 539-1~7, 540, 541, 541-1~5, 541-7, 626, 626-73~74, 627, 628
	왕길동	- 왕길동 일원 - 마전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마전동 625, 660-2, 660-44, 661-2~3, 662-5, 663-1~4, 695-2~7, 696-2~6, 696-8~10, 698-7, 698-22, 698-31, 699-14, 735-5, 740-3, 산160-1, 산156-2~3, 산157-4, 산158-5, - 오류동에서 일부 경정 편입지역 포함 오류동 767-2, 768-2, 768-4, 768-7, 768-10, 865-9 - 오류동으로 일부 경정 편입지역 제외 왕길동 481-9~11, 482-1~2, 482-4~5, 482-8, 482-10, 483-1~4, 484, 484-1, 485-1~2, 485-5, 510-5~6, 510-12~13, 515-2~3, 519-1~2, 520-1~16, 521-1~2, 521-4~5, 521-10, 536-2~3, 536-9, 536-15, 536-19~20, 536-22, 537-1~2, 537-5, 538, 538-1, 539-1~7, 540, 541, 541-1~5, 541-7, 626, 626-73~74, 627, 628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5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 단위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

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① 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3.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원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법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법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법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법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법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타 구청장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에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법대 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

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0000년 (0/0분기) 지원금 신청서] (제6조제1항제3호 관련)

(○○자율방범대·연합대)

1. 사 업 명:

2. 사업내용: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초
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별지 제2호서식]

[0000년 (0/0분기) 지원금 정산서] (제6조제1항제4호 관련)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년 월 일

지출관: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서명/인)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제6조제1항제5호 관련)

제000호	결재	담당자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0000.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 건 명: ○ 일 자: 0000. 00. 00.(0요일) ○ 채 주: ○ 금 액: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첨부: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조장	방법대장

○○자율방법대·연합대 방법일지(제6조제1항제6호 관련)

년 월

순찰일시	순찰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년 월 일

확인관: ○○지구대장(파출소장)

(서명/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 (제6조제1항제7호 관련)

일시: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00.00.00.(0요일) 00:00~00:00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6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행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통·반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① 통은 4개 반부터 8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40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단지규모 및 도로구조, 자연부락은 구조 또는 형태 등 감안하여 현지시정에 맞도록 통·반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변경 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반장의 임명 등)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되,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각종 공지사향 전달
2. 주민의 의견 수렴
3.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통보
4. 반상회 운영 활성화
5. 사건, 사고, 재난 우려지역, 미담수범사례 및 주민불편사항 통보
6. 저소득층 및 후원자 발굴,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7.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평시, 전시 등) 또는 구청 및 구 산하기관의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은 관할 통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상황과 특이사항을 동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통장 또는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통장은 관할 통의 각 반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

원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구정소식지 등 배포) 통·반장은 반사회 운영의 활성화 및 구정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제작하는 검단구 구정소식지 등을 정례 반사회의 시 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사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사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사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동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반사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하고, 우수 통·반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반장은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매월 1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통장의 경우 1세대당 100리터, 반장은 1세대당 120리터를 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통·반장 표창, 타 시·도 견학 및 교류, 통·반장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실비지급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월정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후불로 지급한다. 다만, 해임 시에는 해임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6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검단구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부서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관할 교육지원청·관할 경찰서·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하나센터 등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

제7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지역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임기가 만료한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
3. 위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지역협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나 지역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
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 기관·단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6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구분	소재지
검단구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 1325, 1325-2, 1325-3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로 24(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화로 42(왕길동)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아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20(당하동)
아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바리미로 23, 4층·5층(원당동)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6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

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재난, 재해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3.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5.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6. 그 밖에 검단구지역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6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 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 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

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 수 당 지 급 액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
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정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5급(상당)	6급(상당)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3조 관련)

지 급 수 당	지 급 액
①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200,000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6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요구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

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당해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원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동규정[별표]”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6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 사무국(의회 의원 포함)·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육아·가사휴직자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

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후생복지제도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휴양소·콘도 등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우수·효행·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단, 국외 시찰의 경우 동반 가족 지원 불가)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5. 직원의 불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 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6. 공무상 부상 또는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체험(배낭연수) 지원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활동 지원
10. 야간 교대 근무자나 주말·휴일 근무 대상자에게 매회 간식비 지원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 한도)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 부여 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③ 기본복지점수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은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로 근무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1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기타

제2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

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6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생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2.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3. 복학생은 휴학 등으로 인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구 단위(지방자치단체) 이상 대회에서 3위 내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통장의 자녀 한 명에 한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되, 학교 간 및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이 어려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2년간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

3. 학년이 높은 순서

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우선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장학생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후 순위로 조정하여 선발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통장 또는 가족관계 상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가 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검단구 관할에서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6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 ③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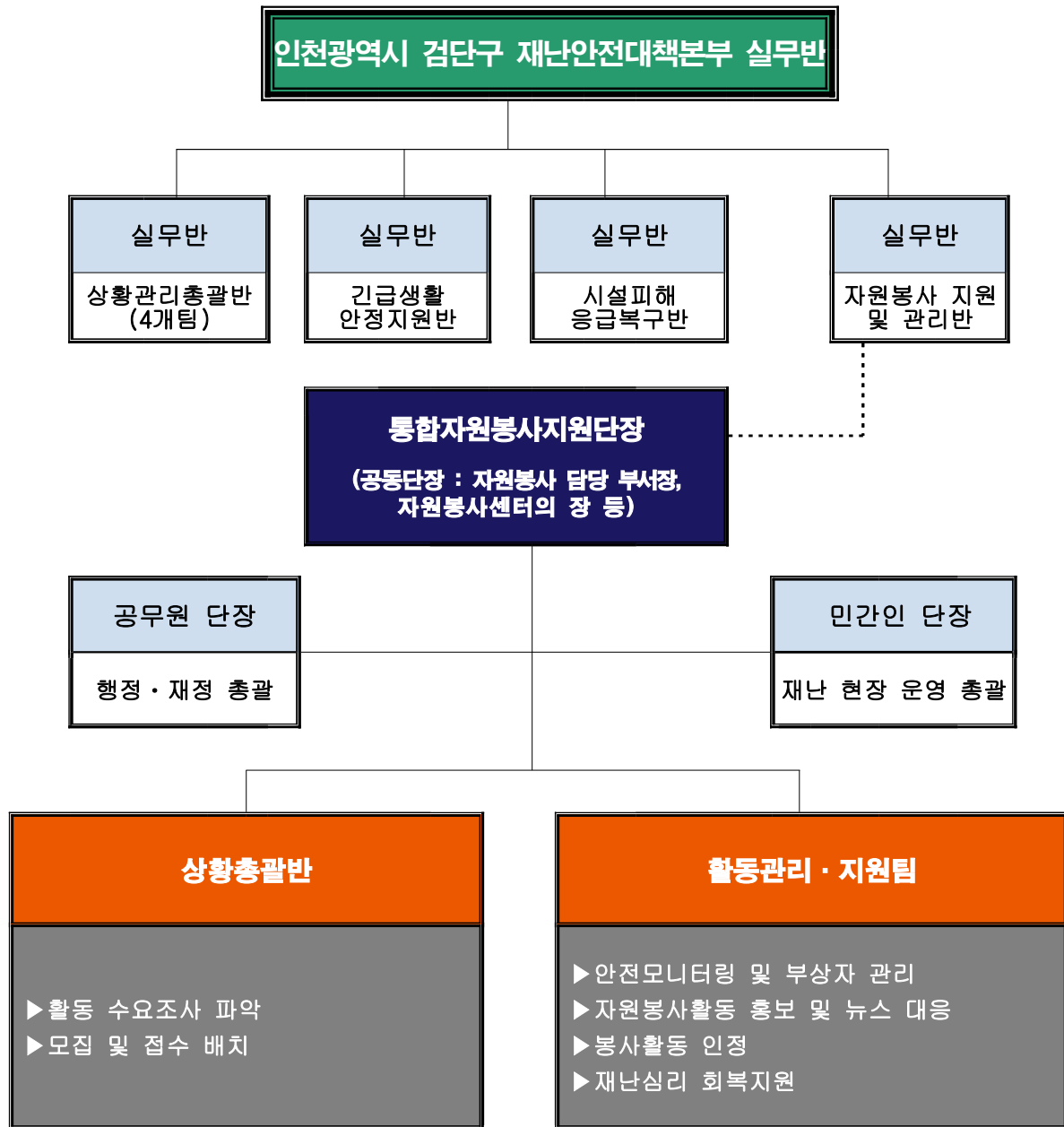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팀 명		직 위	담당 사무
공무원단장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사항 총괄 ▶ 기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사항 지원
민간인단장		검단구자원봉사 센터장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총괄
실 무 팀	상 황 총괄팀	검단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팀장	▶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 공유·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활동관리 지 원 팀	검단구자원봉사센터 팀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검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1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총괄
		검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2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기록 및 피해자 불편사항 접수
		검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3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6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7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공무원) ①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

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 당 10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7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의 장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검단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7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 ②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6조(센터의 운영)

- ①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센터의 조직)

-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센터장 선임 시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자 수요기관 및 단체에 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행정을 총괄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은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 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시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직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기념행사
-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6조(포상 등)

- ①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속적인 자원봉사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검단구 공공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 감면 또는 면제하는 등 사회적 보상과 우대마련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경력인정)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 및 단체는 등록·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7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검단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 (동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검단구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검단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책무) 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유총연맹조직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제3조 관련)

호	사업명	세부내용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 자유민주가치구현활동 : 6.25음식시식회 및 호국안보전시회, 안보현장견학 ○ 나라사랑 서구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 민주시민실천운동 : 기초질서지키기, 그린환경만들기 운동 ○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지구촌 재난구조단 운영 : 건전한 생활의식 개혁운동, 학교폭력, 성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7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검단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7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동·통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새마을운동 조직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제3조 관련)

호	사업명	세부내용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 휴경기 경작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 사랑의 집 고쳐주기 ○ 사랑의 김장나누기 ○ 사랑의 연탄나누기 ○ 다문화가정 송편빚기 ○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 어르신여름챙기기(삼계탕 대접) ○ 청소년 농촌봉사활동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7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종류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편찬수당, 시험감독수당, 면접·실기채점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적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7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검단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7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위원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단, 민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2.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3. 심의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회피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제26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의결하기 전까지 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2. 공유재산의 다음 각 목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면적
 -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9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20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

는 국제기구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써 구금
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24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
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
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
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
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
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
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
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7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8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3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31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3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2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6.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창업가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7.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제33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 제34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제3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건물 및 부지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

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text{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 \\ \text{(전용·공용면적 합계)} \\ \text{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text{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④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
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

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 제1항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검단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의 “일반입찰에 부치지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그 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40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41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4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③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 내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기업을 검단구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6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7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 제48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

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 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9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1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2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3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4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5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6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7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8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
가 있는 때

제59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
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
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60조(사용료의 면제) 제53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임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1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9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인계 인수 등) ① 제58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4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4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5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의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변상금 징수의 유예) ①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3.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에 대한 유예결정을 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할 변상금의 부과연도, 금액, 납부기한

2. 징수유예기간

제67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 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은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9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0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여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7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공유재산관리대장 (9-1)

CODE NO :

(토 지)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작성 자 부 속 서 류		확 인	
		중분류					구	분	색 인
		소분류					등 기 부 등 본		
		세분류					토지대장등본		
							지 적 도 등 본		

지 적	취득시 : m ²	용 도	연 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추가상황		
	현 재 : m ²				년 도	내 용	금 액
토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상황	관리취득상황		관리변동상황	
년월일	지목	면적	거래 시가	임대 시가	시 가 표준액	조사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자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2)

CODE NO :

(건 물)

회 계 명 :

작성
자

확
인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등
기
부
등
본

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

배
치
도

연
면
적

취
득
시
: m²

용
도

연
혁

현
황
및
상
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m²

건
축
년
월
일

년
월
일

건
축
가
격

원

구
조

구
성
재
료

지
급
종
류

종
수

단
면
적

구
조

구
성
재
료

지
급
종
류

종
수

단
면
적

구
조

구
성
재
료

지
급
종
류

종
수

단
면
적

구
조

구
성
재
료

지
급
종
류

종
수

단
면
적

임
대
상
황

권
리
취
득
상
황

권
리
변
동
상
황

수
익
상
황

비
고

소
유
자

취
득
년
월
일

년
월
일

수
량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임
대
연
월
일

취
득
금
액

변
동
사
항

임
대
기
간

전
소
유
자

관
리
청

등
가
년
월
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

년
월
일

재
평
가
액

재
평
가
차
액

과
표
또
는
평
가
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년
월
일

년
월
일

증감 이동상황

년
월
일

증
감
사
유

증
감
내
용

증
액

수
량

가
격

감
액

수
량

가
격

현
재
액

수
량

가
격

등
기

수
량

가
격

기
록

대
조

비
고

년
월
일

년
월
일

대부 및 사용상황

년
월
일

임
대
지
주
소

성
명

대
부
내
용

대
부
목
적

계
약
년
월
일

대
부
기
간

대
부
료

기
록

대
조

비
고

년
월
일

년
월
일

공유재산관리대장(9-3)

CODE NO :

(공 작 물)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서 류	부 속 서 류	작성 자	구 분	확 인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치도	
		세분류						평면도	

명 칭	구조형식	수량	용도	연혁	현황및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도	내 용	금 액

임 대 상 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 고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수 량		취득원인		상 대 방			
임대연월일		취득금액		변동사항			
임대기간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	임대지주소	성 명	대부내용	대부목적	계약년월일	대부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4)

CODE NO :

(임 목 족)

회 계 명 :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주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등기부등본 배 치 도 평 면 도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종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본)주								
식재 상황	년월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임대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수익상황		비고	
소유자		취득연일일		연월일					
		취득원인							
수량		취득금액		상대방					
		전소유자							
임대년월일		등기년월일		관리청					
임대기간		등기번호							
		등기목적		가액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액		감액		현재액		등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5)

CODE NO :

(선 박)

회 계 명 :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	구 분	대분류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확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비	
		소분류			배 치 도		고	
		세분류			평 면 도			

주요설비및속구	용 도		깊 이	m	항해구역	
명 칭	개 수	선 적 항	넓 이	m	최대탑승인원	
		등 록 년 월 일	깊 이	m	착 수 연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연 월 일	
		신호부자	주기외형		제 조 자	
		신체자료	정격출력		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비 고
년 도	내 용	금 액	취득년월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상 대 방		
			취득금액		변동사항		
			전소유자		관 리 청		
			등기년월일		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증감 이동상황

년월일	증감사유	증감내용	증 액		감 액		현재액		등 기		기록	대조	비고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자산재평가

년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공유재산관리대장(9-6)

Code No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작성 자		확 인		
회계명 :										
종 류						부 속 서 류				
재 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m ²	가 액							
사 용 자	주 소					사 용 목 적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기간		부터 까지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타										

공유재산관리대장(9-7)

Code No		(특허권·기타권리)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명 칭 :									
재 산 관 리 관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 속 서 류		연 혁		
종 목											
등 록 번 호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재평 가액	재평가 차 액	과 표 또는 평 가 액		평가자	기 록	대조	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소	성 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록	대조	비고		
비 고											

공유재산관리대장(9-8)

Code No

(주식 · 출자에따른권리등)

회 계 명 :

Code No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주식 종류						법	명칭				
1주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액			주소				
보관기관				재산 관리관							
출 자 연 혁	년월일	금액		변 동 사 유			인	사업내용			
						자 본 금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적요 (증감 사유)	증		감		현재		비고 (출자 재원등)	기 록	대 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공유재산관리대장(9-9)

Code No	(부동산신탁수익권)			작성 자		확 인	
회 계 명 :							
신탁종류		수 탁 자	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			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 소				
신 탁 계산시기			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	소 재 지		지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기 타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50조 관련)

1.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기관별 구 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구 분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황실	구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 ~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 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층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 ~ 40%]

2. 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시 : 45~47㎡ 군 : 36~77㎡ 구 : 44~46㎡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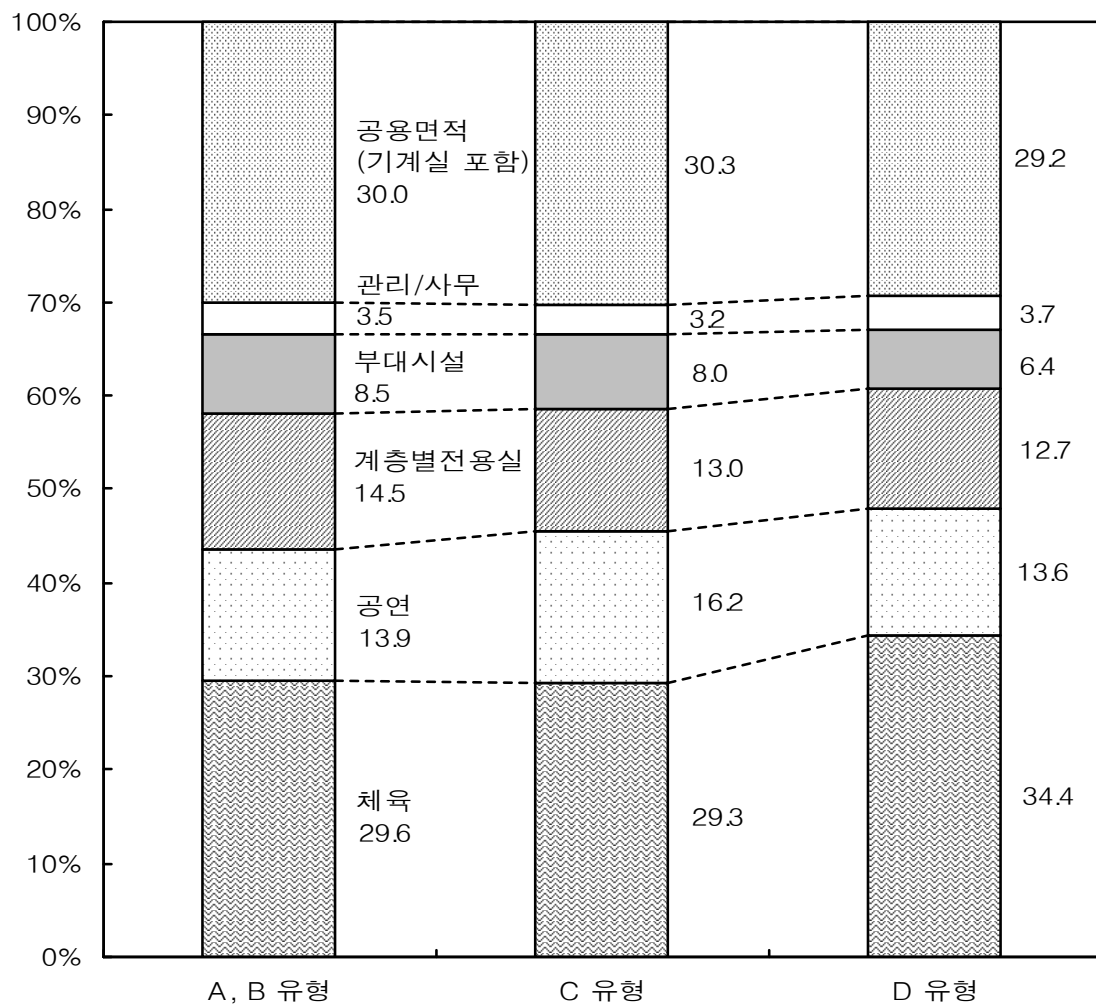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 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 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m²)

구분		실 명	면 적 기 준
			시 보건소
진료 활동	a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인용 화장실	4.86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81.66
진료 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 무 부 문	d	소장실	33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²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7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청, 사업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리사무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출입 직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원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소관 및 주차장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청사 주차장의 관리사무를 해당 주차장이 속한 청사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공무원은 해당 주차장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관리사무공무원은 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 및 관리사무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 관리사무공무원 또는 관리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차장 이용자 유의사항 등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다만, 청사별 주차수요, 교통 혼잡, 임시청사 사용 등 여건에 맞게 주차요금의 징수여부와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사별 주차장 운영시간은 별표 1로 정한다.

제5조(주차요금)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주차요금 감면)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감면대상 차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방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차장 입차 후 1시간 이내의 차량
2. 공무수행 관용차량(관용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 공적인 업무(구 주관 공식 행사, 회의 등)로 청사를 방문한 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차량
5. 언론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② 1시간 초과 주차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1시간 초과 주차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리 관리자에게 공식적인 공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거나 관리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를 발급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상시 출입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월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월 정기주차요금은 1구획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월 정기주차요금 계약 시 최초 계약월은 잔여일수로 주차요금을 일할 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번호판인식시스템에 계산된 주차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8조(징수요금의 관리)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시스템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날 업무개시 즉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구금고에 납입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납입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96시간 이상 방치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방치차량 조치보고를 하고 견인 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보관료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② 관리인은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③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 또는 차량의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 안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함.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함.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제12조(주차의 제한 등) ①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시 출입 직원의 차량 및 관용차량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민원인의 원활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청사 이용 등 공익목적을 위해 상시 출입 직원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본청 상시 출입 직원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제6조제3항에 따른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정기주차요금의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보전한다.

④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할 때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주차하려고 할 때

제13조(감독 등) ① 구청장 혹은 관리사무공무원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변경

2. 조례에 명기된 내용 및 서식의 변경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③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 관련)

구분	요금징수 시간		운영시간
	평일	토·일(공휴일)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09:00 ~ 19:00	X	24시간

* 요금 징수여부와 징수시간은 각 청사 운영에 대한 관리사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이 가능함.

[별표 2]

검단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 관련)

기본 (최초 1시간 이내)	최초 30분까지	이후 매 15분당	1일 최대 요금 (5시간 이상 주차)
무료	600원	300원	6,000원

(별지 제1호서식)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No. 부서명 -	
차 량 번 호	
성 명	
초 과 사 유	
주 차 시 간	
담 당 자	과(단,실,관) 팀 직급 성명
확 인 자	과(단,실,관) 팀 직위 성명 (인)
※ 상기 내용, 담당자 기재 및 확인자 날인 이 없을 경우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발급 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 보 관 용 】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No. 부서명 -	
차 량 번 호	
성 명	
초 과 사 유	
주 차 시 간	
담 당 자	과(단,실,관) 팀 직급 성명
확 인 자	과(단,실,관) 팀 직위 성명 (인)
※ 상기 내용, 담당자 기재 및 확인자 날인 이 없을 경우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발급 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 민원인 발급용 】

발 급 대 장 (1시간 초과 주차확인서)

[illegible]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8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 소,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 소,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③ 본청 물품관리관은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정수물품 구입시에 정수책정 요구서를 제출받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가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구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일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⑤ 재무관은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

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57조제3항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힌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감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 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성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 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분	실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관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	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	리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	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	용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공	차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	상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동의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8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
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
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
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역할 및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
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
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구 의회사무부서
3. 구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4. 구 소속 공기업 및 산하기관

5. 구 출자·출연기관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지침의 이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지침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노동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구청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 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 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구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8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로 제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심의위원회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심의위원회 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에 따른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외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가 겸임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부치는 경우에는 회의를 부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영 제106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영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원	
	여 비	20,000원	출장 시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8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건강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증축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내부시설(출입구·로비·복도·계단·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2. 건축물 외부시설(캐노피·옥상 등)
3. 보행표지, 보행로 등

제4조(공공건축물의 정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건축물을 정비할 경우에는 건강친화 디자인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정비할 공공건축물 디자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 ① 구청장은 건강친화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건강친화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구의 공공건축물로 하고, 연차적으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 ① 건강친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친화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의원·구의원과 보건의료·사회복지·건축·공공 디자인·도로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의 정비기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4.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민간건축물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
5.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건강친화 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건강친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물 신·증축 용역감독 및 시공감독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단구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기준(제5조와 관련)

구분	디자인 기준
매일	매일 상시 이용하는 계단 계획(최소 1개 이상)
사용하는	승강기와 같은 다른 이동수단보다 계단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계단 지정	건물 내 가장 많이 보행하는 통로와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
계단 위치 및	건물의 공공공간에 쉽게 접근하도록 계획
가시성	건물입구에서 접근 용이하게 가깝게 설치 승강기에서 접근이 용이한 가까운 곳에 설치 건강활동 내용이 있고 흥미적인 계단 공간 창출 계단이 보이는 실내 환경과 계단실은 유리칸막이 또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
계단크기	단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크기로 계획 다양한 연령이 보행 가능한 계단 경사도 계획
심미적인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계단 구성 계단바닥과 벽면은 심미적인 마감재 사용
계단 환경	창문, 음악, 밝은 색, 자연환기 등을 이용하여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계단 환경 창출 조명이 잘 이루어진 계단 환경 계획 유지·관리가 쉽고 안전한 계단 공간 계획
계단 우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주변 등 잘 보이는 장소에 계단 사용 권장하는 도안 및 포
사용	스터 부착(건강정보, 경고성 메시지 등)
건기 좋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보행환경 구성 보행경로에 자연광이 비추도록 계획
보행 경로	보행경로에 화장실, 음수대, 벤치 등을 설치하여 도보로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함 건물 안과 건물 주변의 보행경로 정보 제공
승강기와	계단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은 승강기보다 계단을 우선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승
에스컬레이터	강기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계획 건물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 승강기 사용 층수 제한 에스컬레이터 사용시간 제한
건물 계획	간단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 계단, 경사로로 접근 가능한 로비를 2층에 계획 계단, 경사로 주변에 공용 휴게 공간 계획 사람들이 자주 마주칠 수 있도록 공간 계획
운동	건물 내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운동공간 계획 접근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곳에 운동공간 계획 운동공간에서 외부 모습이 보이도록 계획
장려하는	건물 내 목욕실, 보관함 제공
건축시설	안전한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지하실) 운동공간, 운동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 설치 건물 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 계획
건물외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다양성을 가미 시킨 저층부(1~2층) 외관 계획 건물 주변의 공원, 열린 공간과 어울리도록 건물형태 계획
및 형태	캐노피, 경량 차양 등을 건물 외관에 설치하여 건물 외부 둘레길 계획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8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4.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의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7.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8.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해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사업)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종합공사
 2.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및 국가유산수리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통하여 체불임금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원도급자·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하도급자는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 어음지급, 이중계약, 체불임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대상사업에 대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구청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청장은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급인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금 등 우선지급 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 등 우선지급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의 사전예고 등) ① 구청장은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는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과 사전예고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신고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되, 그 접수 및 처리절차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협조관계 구축)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급공사 원도급자 및 그 하도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3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금 등 우선지급 서약서

본사(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_____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임금체불 등)

신고자	성명		연락처	(휴대폰)
	주소			
신고방법		방문신고 / 서면신고 / 온라인신고		
하도급 부조리업체	업체명			
	주소			
신고내용 (상담내용)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8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

2. “공무용 차량”이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론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용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 ① 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범위) 구청장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집주소		연락처	
운전자 관 련 사 항	본 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생년월일 및 연락처	
	보험회사명		보험회사명	
사 고 관 련 사 항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 고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 (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조치사항			
	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8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

기관을 포함한다) 및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무부서”란 주관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주되게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나. “지원부서”란 주무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주관부서는 민원총괄부서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청구내용에 따라 처리부서를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정보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보존 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정보공표제도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 내용·부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①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그 밖의 공표운영 등)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작성된 별표 2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10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에 의한다.

③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

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우리 구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의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
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
보공개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 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청구인·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엄수)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정보의 공표목록(제6조 관련)

행정정보	공표내용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1. 해당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주요업무계획	해당부서	연 1회	1월 중
	예산편성현황	해당부서	연 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결산내역	해당부서	연 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기금운용계획 및 현황	해당부서	연 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중장기종합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부문별 중장기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기본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3.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자료	평가결과보고서	해당부서	연 1회	익년도 2월 중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	기본통계자료	해당부서	연 1회	1월 중
5.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출금액, 일자	해당부서	매월	익월 10일 이내
6. 수의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계약현황	해당부서	매월	익월 10일 이내
7.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에 관한 분기별 발주계획	발주현황	해당부서	분기	3월, 6월, 9월, 12월 중
8. 사용료, 수수료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수수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9.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해당부서	수시	집행 후 10일 이내
10.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약수터수질검사결과	해당부서	매월	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하천 수질검사결과	해당부서	매월	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대기오존농도측정결과	해당부서	수시	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11.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 안전진단결과 및 예산집행현황	진단결과 및 예산집행현황	해당부서	반기별	진단 후 1개월 이내
12. 구의회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질의 및 답변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부서	수시	답변 및 처리결과 후 20일 이내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내용(제9조 관련)**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2.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3.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 여부 ·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4.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관련문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4항)
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지방세의 부과 관련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가. 납세자가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6.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공개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7.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 · 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8. 기타 개별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전산 · 통신장비 운영관련사항 및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공개시 검단구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보안시설,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보안업무와 관련된 비밀문서(대외비, I · II · III 비밀문서)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인감·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전염병 예방, 식품·보건·약사 등의 위생감시, 환경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3. 에이즈 감염자 관리, 정신질환자·재가 암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정보
3.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 처리관련 서류,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 의결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다만,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 관련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면접위원 명단, 채점관리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정보. 다만,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규제 및 입찰 관련 정보〉

4. 단체지원(보조금, 사업비) 심사관련 심사위원 명단
5.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결정통지에 관한 사항
다만, 개별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결정통지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6.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계획 등의 사항으로써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7.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주거공간의 설계도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및 건축물의 설계도 등 공개시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8.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나. 유자격자 명부 및 입찰예정자의 경영상태 평가서 등 입찰참가 법인·개인·단체 정보

〈인사 관련 정보〉

9. 인사·평정·징계·상훈·승진 등 관련 심의·회의록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정보
다만,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10. 공무원 등의 임면, 복무, 인사교류, 급여, 연금,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인사에 관한 조사 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1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

승인·선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가.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2. 진행중인 행정심판 관련자료 (답변서 등 증빙서류)

13. 검단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검단구 조직개편, 직제개편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결정전에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14. 공직자윤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마. 회의시 단서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

15.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공무원의 연구실적 등)

16. 토지수용 재결 진행중인 안전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및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 관련 정보 (재결서 및 감정평가서 등)

17.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정보 (보상가액 및 보상 유무)

18. 기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가. 구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나.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다.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전 또는 미확인 자료 및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부동산중개업자 등록현황(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 지방세과세증명서, 향측판독적출조서, 주민조회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 공무원 등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및 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쓰레기 무단투기자 및 방치차량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5. 수형사실,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신고 등 수형인명표 기재사항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및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도시개발계획과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2.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3. 용지매수계약서 등 공개시 투기목적이나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청 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정 보 공 개 청 구 (또 는 이 의 신 청) 내용		
심 의 요 청 구 분	☐ 공개여부 결정곤란 ☐ (청구인·제3자)이의신청 ☐ 정보공개제도운 영에관한사항	
심 의 요 청 사유		
처리부서검토의견		
기 타 사 항		

첨부 이의신청서 및 기타 관련자료 각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
							재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의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심의사항							
심의의결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8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검단구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처리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
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제1호	상담 연계	
의료비	제5조제1항제2호	예산의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폭언, 폭행 등 피해 발생 시 휴식시간	제5조제1항제3호	2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	제5조제1항제4호	상담 연계	
소송비용	제5조제1항제4호	예산의 범위 내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조제1항제5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 여 ☐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8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직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직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민원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과 같이 해당부서 소속과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는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함께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인의 등록·재등록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제7조(공인대장) 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부서에 신청 및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서업무 주관부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록일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고, 그 공인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록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보관자) ① 공인보관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② 공인보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날인 위치 등)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발급·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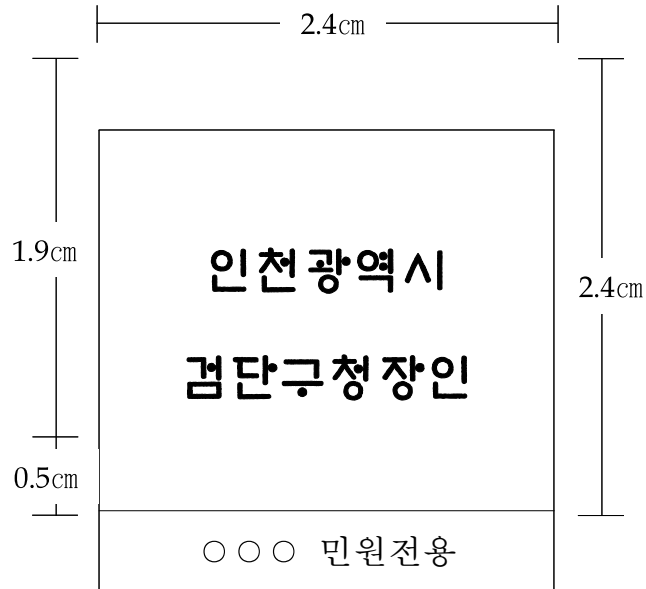
제17조(준용규정) 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청장 민원전용 공인 규격 및 표시 방법(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cm)

구 분			규격	비고
청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3.6cm 정사각형	
직인	기관 의 장 인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4cm 정사각형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 정사각형	
		·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cm 정사각형	
인	회계 관계 직인	·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2.0cm 정사각형	
		·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1.8cm 정사각형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

수 신
(경 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 칭		
종 류		[]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방 법	[] 이 관 []기 타 ()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 속 : 직 급 : 성 명:
비 고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 명	검토자(직위/직급) 서 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 명
협조자(직위/직급) 서 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 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 명칭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 록 [] 재등록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 (재등록) 사 유					
		구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구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	년 월 일		
		(재등록일) 등록(재등록)			
		사 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 보 일	최초 사용일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 보 일	최종 사용일

- < 작성 방법 >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공 인 명	인 영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B4) 257 mm × 364mm 백상지 150 g/㎡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8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체납 징수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관업무 담당국장·예산업무 부서장·자산관리업무 부서장·홍보업무 부서장·세정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

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73조의8에 의한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구청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9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세입(이하 “구세입”이라 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8.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 세원(함께 부과·징수된 세액 포함)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9. 탈루된 세외수입(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개발이익환수금에 한정)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8호부터 제9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직 민간인 계약직 포함)중 체납액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은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 범위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예산담당과장, 재무과장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보관) 구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보관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 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加算)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6조 관련)

○신청단체:

○신청분기: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특별 징수 공적 (사유)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본세	가산금	구분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목	징수액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를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제6조 관련)

○신청단체:

○신청분기: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납세의무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구분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본세	가산금	비고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발굴 세원	징수액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신청단체:

○신청분기:

○신청자: (인)

(단위: 건, 원)

구 분		징수기간	건수	금 액			포상금 계산액	포상금 신청액	비고
				합계	본세	가산금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은 세원 발굴	소 계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 첨부: 1.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서 사본 1부.
 2. 포상금지급신청서, 숨은세원발굴내역(별지 3호서식 부표1, 부표2)
 3.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단체:

○신청분기:

(단위: 건, 원)

신청자			징수(세월발굴)액				포상금 계산액	포상금 신청액	거래 은행	계좌 번호	비고
소속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위와 같이 확인하며 계좌입금 의뢰함

(인)

숨은세원발굴내역

세무 부서장 (인)

[illegible]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9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검단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검단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검단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9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 지정 방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4조(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때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 등을 확정하고, 해당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 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

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금고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 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를 평가로, 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제14조(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구청장이 금고 관리를 위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

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 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금고 약정금리 공개) 구청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금고지정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은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제3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4점)	(4)
	- 국내평가기관(4점)	(4)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1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6)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5)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6)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1)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금예금, MMDA, 보통예금	2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 주민 이용의 편의성		21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라. 관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3
4. 금고 업무 관리 능력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 전산시스템 보안 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6. 그 밖에 사항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별표 2]**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 다만,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장 최근 자료 기준)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1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점)

- 공금예금 및 MMDA 적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이용의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및 출구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9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제4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

액을 감면한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감면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9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

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9.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10.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1.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의 정정 청구
12.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분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	무료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당	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	”	300원	
(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당	600원	
2. 문화관광체육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	”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 교부 수수료	"	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	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	"	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 수료	"	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부동산중개업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800원	
(6)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	무료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800원	
4. 농수산업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1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무료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수수료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무료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무료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9)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무료	
(30)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500원	
(31)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2,000원	
(32)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2,000원	
(33)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34) 어업신고 수수료	〃	1,500원	
(3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37)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38)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	800원	
(39)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40)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41)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3,000원	
(42)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	3,000원	
(43)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44)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5)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6)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4,500원	
(47)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48)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49)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무료	
(50)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1)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4)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 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000원	
(55)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3,000원	
(56)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57)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무료	
(58) 어획물 운반업 등록	"	5,500원	
(59)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60)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 허가	"	1,000원	
(61)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 허가	"	500원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1,000원	
(68)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9)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70)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	9,000원	
(71)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72)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73)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74)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75)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76)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77)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78)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79)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8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2)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83)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84)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85)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500원	
(86)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87)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	800원	
(88)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89)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	3,000원	
(90)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수수료	"	3,000원	
(91)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5. 공장설립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6. 석유판매업분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7. 환경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5,000원	
(3) <삭제>			
8. 보건사회분야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수수료	"	40,000원	
(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800원	
(1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당	500원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당	40,000원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	"	20,000원	
9. 도시계획분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1,500원)	
(2) 환지(예정지) 증명	1통당	400원	
10. 건설행정분야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11. 교통행정분야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500원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	"	1,000원	
12.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00원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400원	
	20장 초과마다	100원	
(4)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1필지	6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칼러불가)	8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1,2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국문·영문)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국문·영문)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제적증명서	1건	무료	
- 정원외관리증명서	1건	무료	
- 졸업예정증명서	1건	무료	
- 교육비납입증명서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19) 어선원부	1건	800원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로 변환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제7조제2항 관련)

8cm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		2.5cm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입증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9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으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①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1. 규격: 가로 27mm 이내, 세로 30mm 이내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기기: 검은색

② 민원처리기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 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및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설치기관명·설치장소·계기 고유번호·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무인발급기 준비금) ①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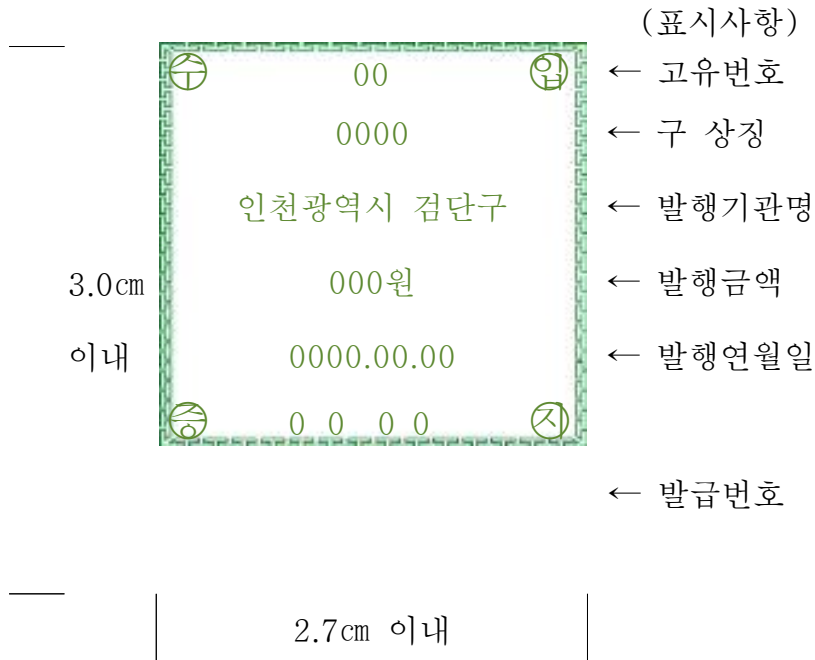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입증지 규격 및 색채(제4조 관련)

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으로 하고, 구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초록색으로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기기의 경우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연번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고시일	고시번호	책임자

수입증지 수입금 결산대장

[illegible]

- 706 -

[별지 제3호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관리대장

연월일	무인민원발급기 고 유 번 호	최초준비금액	세입조치금액	비고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검단구청장 귀하

성명			
주소			
사유			
환매금액		액면금액	
내역			
종별	수량	액면금액	환매금액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9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제4장 재산세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

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9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등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며 기부자가 원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5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 000 호

기부증서 (제4조제1항 관련)

성명(기관·단체명)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사용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능정보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9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4조(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당해년도의 실행계획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 교류)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

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9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

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행정 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행정 발굴 및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3. 인공지능 행정 기술의 확산 및 활용 방안
4. 인공지능 행정 관련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
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
6. 인공지능 행정 데이터 및 정보의 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행정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공지능행정 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셜미디어 분석 및 구정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0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

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업무 담당 과장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3.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0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 및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한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구청장은 검단구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8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9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관리 운영 계획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에도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정보 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2] 정보공개 수수료

정 보 공 개 수 수 료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 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로 변환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교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3]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정보

신청인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주소

2. 신청내용

이의신청 대상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 및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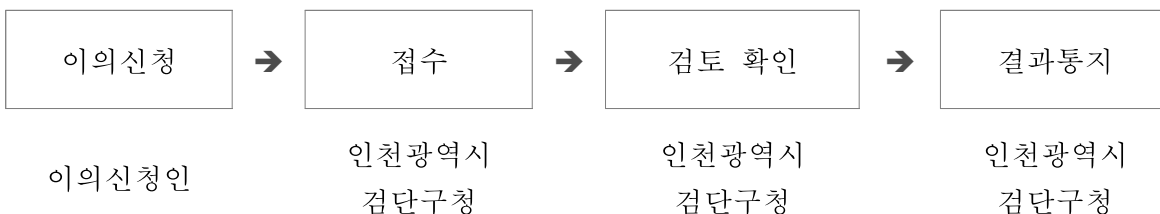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귀하

처리절차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0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

관이 법 제39조 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중 신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7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30만원(시비 20만원 포함)을 지급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시비 2만 5천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따른다.
4.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 및 계승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급신청)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수당 또는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① 수당 및 위로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군·구에서 검단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住所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수당 지급 신청서											
☐ 참전명예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화번호 :)									
지급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u>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u>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화번호 :)										
	사망일자	년	월	일	사망신고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금융기관	은행				
	와의 관계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제1~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참전명예 수당을 받는 사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화번호 :)									
	신청사유					대리수령인 지정기간	년	월	부터	년	월
대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0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며, 이를 정신적으로 삼아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다.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검단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제5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 및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검단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검단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소개
5.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7. 국가 또는 검단구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정신과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5. 국립묘지, 현충탑 참배 및 국립 현충원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6. 국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안보교육 사업
7.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훈복지)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

을 할 수 있다.

1. 검단구와 그 소속기관 및 검단구 지방공기업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매월 8만원 이내
2. 위로금: 1회 20만원 이내
3. 건강수당: 설, 추석이 속한 달 5만원 이내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의 신청) 제12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

천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④ 다른 시·군·구에서 검단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15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수급권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6조(위로금 신청 등) ① 위로금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이나 가족은 수급권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제9조 관련)

호	사업명	세부내용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 고령 및 불우회원 위안행사 ○ 보훈병원 위문 행사 ○ 건강관리를 위한 게이트볼 육성 ○ 환자 수송
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 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 6.25전쟁 기념 행사 ○ 호국보훈의 달 행사 ○ 천안함 추모식 ○ 보훈단체별 창립 기념행사
5	국립묘지, 현충원 참배 및 국립 현충원 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 현충탑 참배 및 주변 정화사업 ○ 국립묘지 및 현충원 참배 및 지킴이 활동
6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 안보 교육 ○ 안보 대회
7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 한 각종 사업	○ 독거노인 가정 방문 및 병문안 ○ 환경정화사업, 환경보호캠페인 ○ 국기계양운동 ○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 불우이웃돕기 및 나눔 봉사 활동 ○ 재해·재난 교육 및 훈련 ○ 독도 지킴이 활동 ○ 해상 수중 정화 활동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종 류	은행명	지급계좌
					수 당		
					사망위로금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0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단체로 한다.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지원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7.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0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예우)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내 보훈관련 행사, 문화·축제행사 등에 우선하여 초청한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협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0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검단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구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검단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

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0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및 나눔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고, 식품위해사
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
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
원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
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0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

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0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사업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사업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지원사업
6.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지원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1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

회복지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법인 대표나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검단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훈련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의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모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1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등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된 비

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1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란 각 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연계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구청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담당국장, 보건소장, 복지업무담당 과장, 청년 및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 실무 협의체 위원장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부서장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자체 지침 또는 규정 등에 따라 의결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복지사각지대 구민(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천광역시 검단 구민을 말한다.) 우선지원과 선별에 관한 사항
-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인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분야 국장으로 한다.
 -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위촉하고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⑥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⑦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⑧ 위원이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다.

⑨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보장(고용, 주거, 문화, 교육 등) 해당분야 구청 팀장과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연합회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담당팀장

-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실무분과 총무는 실무분과 분과장이 실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공무원(팀장 및 직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실무 분과별 해당 당연직 공무원의 구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외 해당 지역사회에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시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의 대표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대표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제안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 공유 및 역할 조정, 연계, 협력 도모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 협력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④ 사무국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협의체 운영 관련 일반 행정업무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6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수당)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1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사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 · 민간기관 ·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 민간기관 ·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1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한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 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등 위기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등 위기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렵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

8. 과다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주소득자(住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1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건강 지원 사업
3.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조요청 등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1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란 부모를 포함한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한 자를 말한다.
2. “저소득 복지대상자”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에

포함한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3.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에서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추진 사업

3.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저출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출산 정책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저출산 정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정책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3. 저출산 정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친화 사업 지원
2. 다자녀 가정 지원(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3.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4. 그 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저소득 복지대상자 지원) ① 구청장은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계속 양육하는 보호자가 저소득 복지대상자인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을 출산축하용품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제10조(지원기준)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검단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자로 한다.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영유아 1명당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의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할 경우
2. 저출산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출산축하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극복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1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2차 피해방지) 구청장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의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1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다하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 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부모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자원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한 검단구 구현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의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 교육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1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4. 문화, 관광, 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2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륜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륜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
2.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2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특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2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정참여의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추진) ①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리직 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구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증진) 구청장은 여성 복지 수요에 호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그 밖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등에 대한 선도·보호사업·복지증진 사업
2. 성·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그 피해자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사업
3.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예방·보호에 대한 사업
4. 출산장려에 관한 사업

제13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에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에 이바지한 유공자·기관·단체
2. 평등부부

제1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

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2. 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
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5. 저소득층지원 기금마련 사업
6. 환경정화활동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1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관리·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관련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

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제2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2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총무,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2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지원
 10.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족 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과 다문화가족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

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

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지정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3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 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2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4. 지역사회 가족건강생활 문화운동 전개
5.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조사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제반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

간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및 위탁기간 중 사업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수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제반사항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가족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위탁) 2026년 12월 말까지 인천서구가족센터에 한시적으로 공동위탁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위탁서의 내용대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2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과 동일하게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제7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

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구에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명예구민)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2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 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2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등 국가 및 검단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및 관련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위탁운영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검단구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

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2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검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급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검단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센터 발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검단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9조(대장 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접수회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검단구 거주기간						
	전화번호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육아휴직 기간을 거짓으로 기재할 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지원대상자 주소 : 지원대상자의 관계 : 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연번	동명	출생(입양)아			지원 대상자			거주 기간 (년 월)	주 소(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신청일	육아휴직 기 간	지급일	지급액	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성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3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와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실시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가.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1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폭력·위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3. 폭력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물 등의 개선·확충

제12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여성 친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제15조(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구 양성평등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참여
4.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관련 구민 의견수렴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및 임기) ① 구민참여단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구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남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민참여단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3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3.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이하 “아이사랑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광역시 가정육아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가정육아지원시설을 말한다.

4.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구성·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돌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사항

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3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2.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
3.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한 사항
4.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관련한 사항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7.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4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가.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나.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라.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마.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2.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지원 및 환경 개선
3. 한부모가족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권익증진
5. 한부모가족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지원
6.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자립금 지원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9.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8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한부모가족의 날) ① 구청장은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3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2.“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을 말한다.

3.“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역할)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아

동· 여성 보호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초· 중·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 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사안
6. 제3조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관 부서 국장에게 위원장직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이하“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인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은 구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운영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한다.

1. 운영회의록 작성·보관
2. 지역연대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 간의 연락
4.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공동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4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공동실무사례협의회는 해당 지역연대 및 이에 협력하는 인근 지역연대 관할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공동실무사례협의회 회원)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

표자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간사, 전문가를 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원으로 한다.

② 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겸직한다.

제16조(사무국) ① 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과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전담인력은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전문가로 임용한다.

③ 사무국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초지역연대 일반관리사무
2. 공동실무사례협의회의 운영지원
3. 인근 기초지역연대 지원 및 연락

④ 사무국의 운영은 지역연대 참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

제17조(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8조(위기관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긴급개입구조
2.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19조(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20조(연구 및 조사)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 위기관리와 예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방안 연구
2. 지역 내 아동·여성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3.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

제4장 회의운영

제21조(운영위원회 정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 실무사례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26조(회의기록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는 사례협의회장이 회의일지를 작성·보관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장은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과 의결내용과 관련된 지역내 기관·단체에 통보한다.

⑤ 지역 내 기관·단체나 지역주민이 제기한 안건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을 경우 그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단체나 주민에게 통보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필요경비 또는 수당) 구청장은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3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및 양육 공백 해소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인력”이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 및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기준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절차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돌봄 인력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활동수당을 유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 인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3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사업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2.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자활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노

인복지사업기금, 자활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출연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2장 노인복지사업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
2.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 및 문화탐방 활동지원
3.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4.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지회 운영지원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지회
2.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

제3장 자활사업

제9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임대 지원 사업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제10조(지원대상)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1조(지원신청) 제10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자활사업자금 운영) ① 제9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개인창업자는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은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 지원비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3조제4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기금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사업기금담당으로 한다.
- ③ 기금을 기관·단체에 교부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자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집행하여야 한다.
- ④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3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호에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4. 자활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3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6.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제11조(실비지급)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3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계정)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말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세입 및 세출)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8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전산 고지서로 출력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3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
2.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3. “최초위탁”이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위탁 또는 변경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각각 따른다.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가 1명(1개 기관)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되, 1회에 한해 재공고한다.

제7조(위탁기간)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세부심사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휴·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자의 의무) 위탁자(인천광역시 검단구)는 아래의 각 호의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련 관계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그 밖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3.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교직원 인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약보육 우선 실시에 관한 사항
5.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 변경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6.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반환에 관한 사항
7. 시설 멸실 또는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및 복구가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용 부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및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

제9조(교직원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장이 되며, 그 밖의 교직원

은 원장이 임면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면보고를 규칙 제11호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기준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제10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그 밖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특수교사(치료사), 컨설턴트, 행정원, 운영요원 등(이하 “그 밖에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③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④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직원의 자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직원 임면) 이 조제 제14조제1항의 센터장 및 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
2. 직원: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

제15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

3.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 공간 제공
4.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5. 장난감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사고 및 복합적 민원사항 등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피해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육솔루션위원회(이하 “보육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자문한다.

1.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사건·사고의 해결 방안
2.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지원 방안
3.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보호자 간담회 참석 및 전문가적 의견

제시·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보육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상담전문가
3. 법률전문가
4. 경찰공무원
5. 아동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아동학대 관련 전문의
6. 보육관련 공무원

③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도·점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임기) ① 보육솔루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보육솔루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2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
2.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3.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및 연수비용
4. 영유아 체력단련 및 어린이집 화합도모를 위한 합동운동회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센터장 등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의 선발, 표창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시책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해 영유아의 부모,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제안이나 사례를 공모할 수 있고, 우수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는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심리검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정서적·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직원 또는 영유아에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영유아 보육 업무상 발생한 보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에게 정서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3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고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4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복지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하고,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검단구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대표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4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4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 예방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각각 1명 이상 포함한다. 다만, 제7호는 제9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통합·운영)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위원

제11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의 수는 각 행정복지센터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4조(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였을 때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제4장 보칙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4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바.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사.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 급식지원 시설,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

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 등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급식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등)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가구의 소득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 등을 신청자 및 아동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점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구의 아동급식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 대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방학기간 전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에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그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급식업체는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업체가 아동급식 지원예산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4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온종일,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돌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이 돌봄 통합 체계 명칭을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돌봄 아동”이란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이

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돌봄 지원”이란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식·간식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돌봄교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초등학생 이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휴식
 2.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체험활동
 3. 방과 후 급식·간식
 4.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 활동
 5.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아동에 대한 일시·긴급 돌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 ② 구청장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돌봄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 아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아동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 시 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3.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설치 검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선정

②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험 및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돌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아이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및 추진사업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안전 및 아동보호 협력 체계 구축

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4.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인천광역시 검단소방서의 시설 안전 관리 담당 부서의 장
4.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부서의 장
5. 구 소속 관계 부서의 장
6. 돌봄 시설 운영 대표자
7.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 돌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정기 회의를 연 2회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 1명을 두되, 돌봄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구청장은 돌봄 시설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4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구립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센터”라 한다)”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구립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재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 아동센터(이하 “구립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립 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선정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및 재정능력
2. 공신력 및 사업 수행능력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

④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검단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6조(구립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구립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협약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을 구에 귀속해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수탁재산 또는 시설물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센터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 및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22조(준용) 센터의 지원과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4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3.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구청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4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위기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이란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장시간 근무, 질병으로 인한 치료, 경제적 사정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돌봄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위기아동 발굴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아동돌봄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위기아동에게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 통합사례관리 실시
2.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협력 및 활용 가능한 관계기관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3. 위기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아동 돌봄 사업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돌봄이 필요한 위기아동을 발견할 경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아동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보호자,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사업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다양한 돌봄 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4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4.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사업)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의 수색 지원
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호시설,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4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을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3.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 및 그 밖의 시설·설비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2.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
3.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검단구 관내 영양사 및 조리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농·수·축산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검단구 관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급식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검단구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련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를 보조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거나, 시설·설비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받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단구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5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역량을 향상시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검단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검단구교육혁신지구”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정한 자치구로, 검단구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

교육 공동체로서 검단구 전역을 말한다.

3. “교육혁신지구사업”이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지정한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란 교육혁신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 기관·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함께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검단구교육혁신지구는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한다.

- ② 검단구교육혁신지구는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제4조(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 검단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 교육과정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인적·물적 교육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운영 지원
5. 학생들을 위한 마을방과 후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부담) 검단구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6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이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을 공동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교부조건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검단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둔다.

1. 검단구교육혁신지구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검단구교육혁신지구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
3. 교육혁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 혁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검단구의회의 의원

나. 검단구 초·중·고 학교장

다. 검단구 초·중·고 학부모

라. 검단구 지역사회 관계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검단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단구 교육혁신업무 소관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비상설 실무협의회로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검단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검단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업무 담당주무관, 학교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3.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 평가 준비

4.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⑦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검단구와 교육지원청 교육혁신업무 소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⑧ 실무협의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실무분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④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제척, 기피, 회피)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회의 주관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및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5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한다)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매년 12월 말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연도 독서문화 추진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추진과제 선정
2. 추진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지속적인 문화운동으로 전개한다.

③ 구청장은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들과 작가

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 진흥 공간 또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독서 관련 행사 개최 시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날 지정) ① 구청장은 구 독서문화 진흥실적 및 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단체 및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연도별 자체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책 돌려 읽기” 활동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8조(단체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재정상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5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그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을 따른다.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장 도서관의 이용

제6조(입장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금지 또는 퇴장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수수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시설 사용료 반환은 사용 취소 요청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의 3일 전일 경우 전액 반환하며 3일 미만인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취소 요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 후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2. 사물함 사용료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으로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시설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3장 위원회

-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역정서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명, 관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가능하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방해할 경우

⑩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구입에 관한 사항(다만, 희망도서 등 소량의 수시구입은 제외)
8.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운영의 위탁)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검단도서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92번길 18(마전동)
단봉늘봄도서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동로 25(왕길동)
아라누리도서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20(당하동)

[별표 2]

수수료 및 사용료

1. 자료복사 수수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흑백	칼라	
자료복사 및 통신정보 인쇄료	A4	40원	80원	1매당
	B4	50원	100원	

2. 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시간	금액(원)	비 고
어울림터(소공연장) 및 다목적실	평일·주말 평일: 09:00~22:00 주말: 09:00~18:00	20,000	① 사용금액 : 냉온방 및 방송장비 등 장비사용료 포함 ② 휴관일 제외 ③ 사용시간 1시간 미 만은 1시간으로 계산
		시간당 10,000원씩 가산	

3. 사물함 사용료 : 월 3,000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5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

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청소년시설을 운영 ·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성장지원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지원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 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사용 등) ① 청소년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 이 경우 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청소년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시설 사용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교육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는 날에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와 수영장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강사 평가 결과, 그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80 이내에서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설립목적에서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4.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3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

③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⑤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⑥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⑦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 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수영장 월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 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5.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반환
6. 수영장을 제외한 기타 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요청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요청을 한 때에는 그달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제12조(셔틀버스 운행)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제1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기간·조건·관리 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청소년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의무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
4.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7조(시설변경 금지) ①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청소년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른 관계 규정 에 따라 시정지시·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 의무)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청

소년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검단청소년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88번길 3(마전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해당

※ 청소년 시설 운영 특성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2】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청소년수련관에 한정한다)

(단위 : 원)

시 설 명	구분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비 고
공 연 장	공연(영화)	30,000	45,000	70,000	
	행 사	45,000	65,000	90,000	
강의실 등	교 육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12,000	1실 기준

【 비 고 】

1. 공연장은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2. 공연장은 시설사용 허가 시 사용자가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3.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시간이 2시간 이상은 다음 회 사용료의 100%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50%를, 1시간 미만이면 다음 회의 30%를 추가 징수한다. 또한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15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부속설비 사용료(청소년수련관에 한정한다)

(단위 : 원)

부속설비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아노			아	노	1회 공연	3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무대시설	공	바	톤	1회 1개	10,000		
무대음향	마이크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마이크	PIN		1일 1개	30,000		
		W/L		1일 1개	20,000		
	M R (A R , B G M)			1시간	10,000		
	L C D 프 로젝트			1회 공연	20,000		
무대조명	조 명			1시간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특수효과기	포그머신 (액별도)		1회 공연 1대	20,000		
		드라이아이스 (액별도)		1회 공연 1대	10,000		
냉난방	○ 계절에 따른 봄·가을철, 여름철, 겨울철로 구분하여 시설별 시간당 냉난방기 소비전력, 한국 전력 전기요금표 등에 10%를 가산하여 시간당 사용료를 산출함 ※ 봄·가을철(3월~5월, 9월~10월), 여름철(6월~8월), 겨울철(11월~다음해 2월말) ○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냉방(6월~8월) 및 난방(11월~2월말) 해당기간에는 냉·난방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온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조정 가능함)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비 고 】

1. 피아노, 무대시설, 무대음향, 무대조명 중 공연(행사) 준비 및 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2. 1시간 단위로 부과하는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 초과시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3. 부속설비(무대시설, 대·소도구 등 시설 내 물품 일체) 사용 중 파손 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음.
3. 교육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5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 전담부서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상호연계 및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의·조정·중재 등 총괄 책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단체의 사업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우수·거점·특화·국비사업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성인문해·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축제·행사 등
7. 평생학습동아리·강사·자원활동가 등 육성 및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설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시설, 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및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주재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프로그램의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
2.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
3. 법 제16조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척, 기피, 회피)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보상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균등하고 질 높은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구에는 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에는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연구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2의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5.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운영
6. 평생교육 관계자, 강사, 동아리에 대한 연수 및 교육
7. 학습동아리 조직과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9.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해교육 지원
10.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결과인정 등의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종사자·동아리 관리

3.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상담 등

5. 그 밖에 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평생학습관 등의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 사업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일정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 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학습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

제21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2조(수강료 반환) 수강료의 반환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2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2년간 평생교육진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25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조례의 준용)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5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

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 사용 예절 및 문해력 교육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치유 지원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치유캠프
4.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가 등 자문)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5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유관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5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

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진흥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5.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3.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

계를 말한다)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제6조(등록 등)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3. 운영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실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5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이나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고, 다양하게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검단구의회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5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재원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 중 일반회계로 충당하며, 보조기준액은 회계연도 자체세입액의 0.5퍼센트 이상 보조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 대상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공무원 : 4명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3. 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 2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구에 연고가 있으며,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진 사람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여건 개선방안 강구
2. 교육여건 개선 경비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심의
 - 가. 법령과 예산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나. 해당 년도 교육여건 개선사업 결정
 - 다. 신청 사업의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 결정
 - 라. 보조금액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 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의 사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 신청 해당 학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제8조제2호에 따라 심의한다.

제11조(교부방법)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 대상이 결정되면 보조금을 확정하고, 보조사업 대상 및 교부결정 금액을 분명하게 밝힌 교부결정서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교의 장은 보조금 교부 확정 통보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대상학교에서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 후 보조금을 해당 학교에 교부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사업의 정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고 정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실확인) 구청장은 보조받은 학교가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6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구입비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및 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6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및 청소년 지도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 하는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과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명 내·외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청소년의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당, 여비, 연수기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캠페인 활동

2. 청소년 체육 활동

3. 청소년 문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유익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도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남은 임기에 관계 없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단위 : cm)											
(앞면) 청소년 지도위원증 ① ⑤ ② ③ ④ ○○ 읍, 면, 동	0.3 1 4 8.1 0.75 0.75 1 0.3 4.9×7.5										
(뒷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 본법」 제27조에 따른 청 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⑥ (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 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0.3</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1.7</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3.2</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0.3</td> <td style="width: 15%;"></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5.5</td> </tr> </table>		0.3	1.7	3.2	0.3		5.5				
0.3	1.7	3.2	0.3								
5.5											
(비고) 1.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6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

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가 대행한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4. 그밖에 구청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6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3조(설치·운영)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 장비 · 자료 ·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센터장, 팀장 및 팀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 ·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이하 “별표”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하고 채용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별표의 자격 요건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복무)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조(면직) 구청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조직의 축소·폐지, 예산의 대폭삭감·미편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6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 및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6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해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6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동인권 관련 부서 및 노동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 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검단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

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 단체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6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6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에게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습 교재비"라 함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 외의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부교재 및 학습에 직접 활용 가능한 인쇄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2. "수험생"이라 함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둔 수험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습 교재비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4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재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재비 지원의 범위,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적 효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추진 체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만족도 조사, 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6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 “지원대상학생”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

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을 말한다.

4.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5.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체계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행정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3.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위원회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내 학교의 장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단위로 동,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운영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5조(지역위원회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등의 제공.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7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자원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7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도박”이란 금품 또는 유·무형의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재화 등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 승부를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2.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3.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4. 도박중독 관련 전문기관 상담 연계
5. 도박중독 관련 법률상담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사업방식,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극복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전문상담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7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 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7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련 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련단체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
3.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

2. 관할경찰서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국장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부모
 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지역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지역협의회는 안전 검토 및 사업지원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지역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7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을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 지원액은 수급자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리비용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

를 확인 후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리업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리 의뢰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를 받은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와 관련자료 확인 후 수리업체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고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3년간 수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리업체	업체명		연락처	
	소재지			
수리대상				
보조기기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수리단가표 1부.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위 업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계층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업체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3. 최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받은 사항

수리 연도	보조기기 유형	수리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수리업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등 지원 중복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지원받은 품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연 번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당해연도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내역 및 지원가능액	수리일자		수리품목	
	수리내역		지원금액	
	지원가능액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업체 대표 ○ ○ ○) 귀하				

[별지 제5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청구금액	금	원정						
의뢰인 인적사항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주소				장애명 및 장애정도			
보조기기 수리내역	보조기기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70%;"> ※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수수료 없음 </td> </tr> </table>							※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1. 수리비용 세부내역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각1부 4. 은행 통장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비용 세부내역서

(단위 : 원)

수리 일자	성명	생년월일	수급 유형	보조기기 종 류	품명 / 규격	수리내용	수리비용 총소요액		청 구 액
							수리비 총액	지원액 (출장비·기술료· 부품비용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7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2.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7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자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상담업무를 각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 복지상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7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중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4.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센터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과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 각 50퍼센트로 구성한다.

⑥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교육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선정
2.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와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 능력평가 및 심의·의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전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

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이용자인 경우
2.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7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 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3.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법률전문가
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7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검단(이하 “검단”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

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경감에 의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시기)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지급 및 안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별로 수납처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검단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별 지급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 정산) 공단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한 보험료 중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로 지원받은 보험료의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료 청구 시 정산하여 차감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월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 명단(제7조 관련)

(동)

연번	급여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단위 : 원)	비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8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검단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회활동 관련 교육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8조(생산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8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

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 1대까지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또는 양도 시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연락처			
신청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담당자 작성	①건강상태	※ 거동 불편 정도(혼자 외출 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 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②경제상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등		
	③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주소,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보장 정보 및 차상위계층 보장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지원금 지급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 동의 】

-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이용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연 번	대상자명	생년월일 (6자리)	주 소	신청자명	대상자와의 관 계	신청일자	지급일자	비 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8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제4조(예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의 예우를 한다.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 ·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6조(경로식당 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③ 경로식당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100세이상 노인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로행사 등)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차량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1. 구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노인복지 지원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구민의 책무) 검단구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煽揚)하기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기준표(제12조 관련)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시기
1.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실비	매월
2. 노인교실(대학) 운영	수강생	간식, 수학여행 (소풍) 경비	운영 시
3. 노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층	식사 또는 부식	수시
4. 100세 이상 노인 지원	100세 이상 노인	물품, 상품권	설날, 추석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행사참여자	식사, 기념품, 교통 편의	행사 시
6.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행사참여자	식사, 기념품, 교통 편의	행사 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8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

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보조금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양곡 구입비
3. 냉·난방비

4. 경로당 생활 물품

5. 경로당 시설물 개수·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구립 경로당에 한하며,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 경로당 및 사립 경로당 등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내역은 분기별로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중단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4. 경로당 이용의 차별 또는 이용자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8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검단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실종”이란 지적장애인 등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5. “시설장애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등
2. 검단구지역 시설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경험 지적장애인 등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법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8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

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구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해당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목적) 시설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및 자체 수익을 통해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장애인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위치) 구가 설치하는 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중1로 12에 둔다.

제6조(시설의 운영) 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방법)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탁신청서류 등) 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재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이사 전원 이력에 관한 서류

3. 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4. 시설운영계획서(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수탁자 선정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수탁기간등) 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구청장이 위탁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재위탁 의사가 있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5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전문가
 2.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대표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시설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사
2. 시설의 위탁 갱신 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위탁관리 능력 평가
3. 운영비 등 비용에 관한 적격성 심사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설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재산의 권리는 구에 귀속된다.
4.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및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취소를 원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시설운영비) ① 시설운영비는 사업수익금 및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구에서 정산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고용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제22조(승인) ① 수탁자는 최초 사업운영계획 수립 이후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 폐지의 경우
3. 수익금 사용에 관한 규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2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시설 및 근로자, 종사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위탁운영결정통지서	
시설명	
소재지	
운영법인명 및 운영자	/ (생년월일)
법인소재지	
시설의 장	(생년월일)
위탁운영기간	
특기사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8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기 설치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공원, 휴게공간 등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8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

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8. “수어통역센터”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

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 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2. 출장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3. 수어교육, 보급사업,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8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이하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검단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502번길 15-1(마전동)
2. 당하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57(당하동)

제3조(업무 및 기능)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
2.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3.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사업
4.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만료 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라 위탁 운영을 갱신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심의·의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선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전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이용대상 및 사용료)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등 일부시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설의 이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와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및 이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3.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
4. 수탁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함(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12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기준	사용료	기준시간초과 (시간당)	비 고
대강당	1시간	70,000	20,000	사용 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소강당	1시간	30,000	10,000	
강의실	1시간	30,000	10,000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8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 조사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

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9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1세대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구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구민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의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단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9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이를 Green 검단구,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른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원하는 자는 구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

우 추첨으로 하며, 그 이외는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받은 자는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해당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장애인 등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우선 계약 순위(제5조 관련)

순 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 이상 노인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65세 ~69세 노인 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9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8조제1항 별표 3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 시행(1962. 1. 1.)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 봉안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항 각 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고 지형의 형태 등에 의해 제1항의 각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야로부터 완전 차단되어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설치된 해당시설에는 종전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가족 또는 종중·문중 구성원을 포함하여 안치할 수 있다.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

2. 산사태, 침수,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9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이라 함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구청장이 지정한다.

④ 수탁자가 변경 될 때에는 전수탁자의 인적자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위탁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전문가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대표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사항
2.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사항
3. 제10조의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7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시설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기간만료 또는 사업운영 중 수탁운영 의사가 없을 때에는 종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및 실비보상) ①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①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 등은 신청에 의해 센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2.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 또는 일자리사업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구청장 및 센터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9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공사
3. 검단구 의회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9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검단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검단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9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이 성공적인 자

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5. “주거서비스”란 체험홈 설치 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성년 후견인, 법적 대리인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중증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3. 활동보조서비스
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5. 자립생활 교육 및 기술훈련
6. 중증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

7. 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활동
8. 중증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9.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10. 중증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검단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같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한다.

제8조(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립생활 체험홈)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거생활의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 중인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아파트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9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
2. 계절별 위험 환경으로부터 지원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9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조건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조건이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조건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조건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조건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조건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조건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19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 및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다만 다른 조례의 범위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전용주차구역을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직통계단을 피해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및 대응 설비 마련
4.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등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5.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6.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7.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
9. 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물막이판 등 방화구획 설비
2. 급수배관, 스프링클러, 방수구, 방수기구함 등 소화 설비
3. 배수배관, 집수정 등 집수설비
4. 질식소화포
5. 상방향 방사장치 등 냉각소화 장치
6. 화재감지기 및 연기배출 설비
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설비
8. 충전시설 유의사항 및 안전시설 안내 표시판
9. 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안전시설 등의 위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0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급속충전시설”이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가 설립한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
· 출연한 기관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

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판매 가격의 차액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단, 신규등록 전기자동차에 한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5년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급속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의무자가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관리·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5조, 제6조,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0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7. “수소용품”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 공급 기반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소산업의 산업 현황
3.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4. 수소산업 및 수소용품 관련 안전관리 계획
5. 그 밖에 수소 공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용품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7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관련) 법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제2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구청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0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을 말하며, “상생 가맹점”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을 말한다.

3. “부가서비스”란 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1호의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연계된 별도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중층구조인 경우는 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의 수탁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중층구조”란 시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한 인천사랑상품권을 기본으로 하여 상품권(제3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을 발행·운영하는 구조를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 쿠폰 등의 혜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및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2.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이하 “검단구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3. 1회 충전 권면금액의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은 1만원과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권면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만원과 200만원 범위에서 최소한도액과 최대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급수단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유통지역 및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 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인천사랑상품권 대행점은 구청장과 상품권 대행점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 검단구지역에 소재하는 점포가 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때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검단구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가맹점 등록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중층구조인 경우는 시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부가서비스 운영 등) 구청장은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 중층구조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1.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2. 시스템 유지 보수

제3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제12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앙부처 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및 이자
4. 그 밖의 수익금 및 지원금 등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3.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가맹점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4.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안내·홍보 등에 필요한 인건비
5.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상품권(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활성화 시책 추진 및 판매촉진에 필요한 비용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단, 중층구조의 경우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금고 등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운용 심

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중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상품권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상품권 담당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제21조(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이하 “민관운영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부가서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민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민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관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4. 복지분야 전문가 또는 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5.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
 6. 지역사랑상품권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민관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민관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민관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민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민관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6조(위원의 수당) 제18조, 제25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제27조(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적립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 가맹점의 활성화를 위해 검단구지역 상생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제1항의 인센티브와 별도로 결제금액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별 적립금 제공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사용자가 법인 및 가맹점인 경우에는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층구조인 경우에는 시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각각 적립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적립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시혜성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경품, 시상금 등 지원 및 지급

가. 경품추첨행사

나. 퀴즈이벤트

다. SNS 홍보이벤트

라. 가맹점 방문이벤트

2. 상품권 사용자에게 상품권 사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쿠폰 제공

가. 제공대상 : 상품권 사용자

나. 제공방법 : 앱 내 쿠폰으로 제공

다. 제공한도 : 5,000원 범위 내

라. 제한기준 : 월 2회 이하

3.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에게 상품권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 수수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홍보에 필요한 마케팅 지원

5. 가맹점(부가서비스를 포함한다)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제작·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⑥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경품 등 세부기준(제28조제5항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경품 추첨행사	연 1회	전년도 상품권 발행액의 1/10,000 범위	경품권 제공 및 추첨 (상품권 결제액 5만원당 경품권 1매 제공)	적립금 또는 부가서비스 쿠폰
퀴즈이벤트	월 1회	매회 50만원 범위	상품권 관련 퀴즈 출제 및 정답자 추첨 (1회 50명 한정)	부가서비스 쿠폰 (1인 1만원 범위)
SNS 홍보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카페, 블로그, 인스타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적립금 (1인 1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 및 이벤트 참여자	적립금 (1인 1만원 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0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단위 물가안정정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공무원 및 물가관련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 소속직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심의안건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필요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0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에 따른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4의2. 홍보사업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비 지원

가. SNS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1)

나.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제작 지원

4의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따른 물품 등 지원 및 지급(별표2)

가. 홍보물품 지급

나. 퀴즈이벤트

다. SNS 홍보이벤트

라. 상점가 방문이벤트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보고) 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받는 상인회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소비자·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마케팅·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를(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SNS 서포터즈 지원 기준 (제6조제1항제4호의2가목 관련)

1. 지원대상: SNS 서포터즈

2. 지원내용: SNS 서포터즈 활동비(원고료,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원고료: 1인당 월 20만원 이하

나. 실비: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별표 2]

물품지급 등 세부기준(제6조제1항제4호의3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당
홍보물품 지급	분기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홍보사업 추진 및 홍보물품 제공	1개당 1만원 범위
퀴즈이벤트	월 1회	매회 50만원 범위	상점가 관련 퀴즈 출제 및 정답자 추첨 (1회 50명 한정)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 (1인 1만원 범위)
SNS 홍보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 (1인 1만원 범위)
상점가 방문이벤트	월 1회	매회 100만원 범위	가맹점 방문 및 이벤트 참여자	상점가 이용 쿠폰 또는 기프티콘 (1인 1만원 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0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

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4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은 추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검단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사항
2.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3. 대규모점포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등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게시판과 검단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의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2. 의무휴업일: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등록제한 및 부관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검단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관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

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이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0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

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금, 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 및 자문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수출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 정보 등 특화교육 및

자문지원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에 관련된 지원

4.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양성에 대한 지원

5.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관내 자원봉사 전문 자격사를 모집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노무, 법률 무료상담 및 자문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0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구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

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새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도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황색선으로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상권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

② 구 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7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상인회 대

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9조(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신고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상인회”

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을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 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

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드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마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끝내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를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

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3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수익금 사용)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분기별 1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사용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 단위로 할 수 있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도로점용 등 허가 처리에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보냄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알린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 의무자	성 명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납 부 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대한 이의제기자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내 역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0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이 없는 경우
3.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절차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한 사실조사 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사전에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뢰의 취소)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의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0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반려견 놀이터”란 소유자 등이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

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을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된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1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수시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소 현황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

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3. 착한가격업소 홍보 캠페인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1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유실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라 함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기·유실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유실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민간위탁"이라 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호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유실동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유실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포획한 유·유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획한 유기·유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기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구의 수입으로 하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구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구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구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에 유기·유실동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기·유실동물 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1. 사료급여 기준(1마리/1일)

동물명	체중(kg)	사료급여량(g)
개	1 ~ 3	전용사료 40 ~ 90 또는 통조림 120 ~ 180
	4 ~ 7	전용사료 100 ~ 170 또는 통조림 180 ~ 630
	8 ~ 10	전용사료 170 ~ 220 또는 통조림 630 ~ 670
	10 ~ 20	전용사료 220 ~ 360 또는 통조림 670 ~ 1,110
	20 ~ 30	전용사료 360 ~ 480 또는 통조림 1,110 ~ 1,470
	30 ~ 40	전용사료 480 ~ 600 또는 통조림 1,470 ~ 1,820
	40 이상	전용사료 600 ~ 700 또는 통조림 1,820 ~ 2,200
고양이	1 ~ 2	전용사료 25 ~ 50 또는 통조림 75 ~ 150
	3 ~ 4	전용사료 75 ~ 100 또는 통조림 225 ~ 300
	5 이상	전용사료 120 ~ 140 또는 통조림 360 ~ 420

비고 : ①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호소의 관리인 또는 위탁보호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급여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사료첨가제, 식염, 기타의 무기물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한 양을 급여하도록 한다.

2.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산출기준

① 보호인 수당 : 1일당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5 이내

② 포획인부의 노임 : 1일당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을 적용한다.

③ 사료비 : 위 기준표에 의하여 급여한 사료량의 중급제품 판매가격으로 한다.

3. 기타 비용

가. 안락사처리비: 안락사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나.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의한다.

다. 치료비: 부상 등 치료를 하였을 경우 동물병원 치료비의 실비를 지급한다.

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 경비에 대하여는 유기·유실동물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청구기준(1마리/1일)

동 물 명	체 중(kg)	청 구 내 역				
		전용사료		보호인 수당 (1인/1일)	포획인부 수당 (회/1인)	합 계
		양(g)	금액(원)			
개	1 ~ 3	40	260	6,000	50,420	56,680
	4 ~ 7	100	660	7,000	50,420	58,080
	8 ~ 10	170	1,120	8,000	50,420	59,540
	10 ~ 20	220	1,450	9,000	50,420	60,870
	20 ~ 30	360	2,370	10,000	50,420	62,790
	30 ~ 40	480	3,160	11,000	50,420	64,580
	40 이상	600	3,960	12,600	50,420	66,980
고양이	1 ~ 2	25	160	5,000	50,420	55,580
	3 ~ 4	75	490	6,000	50,420	56,910
	5 이상	120	790	7,000	50,420	58,210

※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청구는 사료량, 보호인 수당, 포획인부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기타 비용은 소요된 실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1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 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복지 사업”이란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 제5조에 따른 각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홍보 계획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가입 독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
3.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의 원활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1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자·구민·구민단체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구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구민·학교·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야 한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단체의 책무) 구민단체는 구의 합리적 에너지 이용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구 공무원, 검단구의회 의원, 전문가,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
4. 구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5.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6.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7.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및 저소비·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5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너지 절약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사업자·구민단체·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구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공공기관·단체 등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인센티브 지급, 홍보물품 지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정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공무원·구민·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제19조(지역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계획과 광역계획에 연동하여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국가계획 등)되어야 한다.

1. 에너지 공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취약지역과 에너지이용소외계층(「에너지법」 제16조의2에 해당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주민을 말한다.)에 필요한 에너지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에너지센터 설립)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의 추진
2.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포럼 운영(민·관·기업 포럼)
3. 지역에너지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다음 각 목의 사업 위탁 또는 직접 수행
 - 가.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 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다.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 라.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 마.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 바.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 사. 에너지 교육·홍보 지원 및 관리
 - 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추진을 위

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 ②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 ③ 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1항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에너지 복지사업

제22조(에너지 복지사업) ① 구청장은 에너지취약지역과 에너지이용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정책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태양광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지원 시 에너지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등 에너지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
2.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3. 에너지 진단 및 효율 향상 지원사업
4.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5. 에너지취약지역의 전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6. 에너지취약지역의 에너지 공급지원 사업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1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
여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위해방지)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완비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요건 등(제3조 관련)

사업의 종류	허가요건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사업소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허가받은 용기충전업소가 위해방지 및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자동차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은 20톤을 초과하여야 한다. 3. 충전사업장의 대지 및 저장·충전설비는 자가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경우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별표 4】 제1호가목 1)의 다), 라), 마)에 따른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 5.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노후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등 시설의 변경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허가는 전용·준공업지역에 한한다. 다만, 기존 허가받은 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별표 5】 제1호가목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적용한다. 3. 판매업소 부지는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38㎡이상, 사무실 18㎡, 주차면적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포함되어 이전할 경우에는 도로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이전할 수 있다. 4. 판매업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 5. 용기보관실은 「건축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변경허가 대상 중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저장설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신규허가 시 판매업소 상호 간 안전거리는 부지경계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1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1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및 국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사업자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며,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정책의 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 정책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검단구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검단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정책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을 최우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지역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기관
2. 분산에너지를 활용하는 지역 주민 또는 단체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
2.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지원
4. 기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특화지역계획의 제안) 구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검단구 내 특정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계획을 인천광역시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1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동물의 사망 시 적법하고 존엄한 장례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장례문화”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하는 문화를 말한다.
3. “장례지원사업”이란 반려동물 장례시설,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

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4조(장례문화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장례절차와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반려동물 장례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반려동물 장례의식 또는 추모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장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례업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검단구민에게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혜택 증진을 위해 적법한 동물장묘업 허가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1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법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

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순찰대 활동)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1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타이머 콕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지를 둔 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 노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5.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 지원대상자의 친족
4. 지원대상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단,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신청서 (제5조 관련)

- 1316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민간위탁”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을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명시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검단구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검단구체육회 회원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체육경기를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행사
2. 시설의 개수·보수 등 시행
3. 시설을 이용 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자 및 관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
5. 영리를 목적으로 상거래 행위를 한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사용 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체육시설의 이용 및 대관: 06:00~22:00
2. 강습 프로그램: 06:00~ 22:00

②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별표 1의 사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경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조례로 정하는 행사나 활동은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

하는 보호자 1명

6.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3. 「인천광역시 검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 ⑤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⑧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⑨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월 회비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이전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납부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5.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③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17조(운영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구 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위탁하는 허가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민간위탁수탁자 선정기준) ① 민간위탁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원, 체육 관계자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공개모집 공고 전까지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제21조(지원)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에 대한 권고)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1조에 따른 지원금 및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단구민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우선 사용 허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민, 인천광역시서구체육회, 서구체육회 회원단체 등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특례) 제12조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될 때까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마전게이트볼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88번길 48(마전동)	-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원당문화체육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121번길 31(원당동)	-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불로문화체육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768번1길 3(불로동)	-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원당게이트볼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로40번2길 6(원당동)	- 게이트볼장

[별표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비고	
- 원당·블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1일 사용	2,000	3,000	5,000	○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단체	1,500	2,500	4,000		
		월회원	28,000	33,000	42,000		
		강습회원	38,000	44,000	52,000		
- 원당문화 체육센터	체력 단련실	1일 사용	-	2,000	3,000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월회원		25,000	35,000		
- 원당·블로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사용료		700	1,200	1,500	○ 1시간 기준	
- 원당·블로 문화체육센터	수강료	체육프로그램	탁구등	30,000	35,000	40,000	○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 1회 1시간, 배드민턴은 1일 1회 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내 ○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 4주를 1개월로 봄
			배드민턴	33,000			
			에어로빅	33,000			
		문화프로그램		4,000 범위 내			
- 원당·블로 문화체육센터	대관료	체육관	80,000			○ 1회대관은 시행규칙 별표의 조기,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마전게이트 볼장		다목적체육관	5,000				
비고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검단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복지회관(이하 "검단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92번길 18(마전동)에 둔다.

제3조(사업) 검단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사회참여 및 복리증진
2.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
3.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교양교육
4.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5. 주민의 체육증진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 검단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사용허가) ① 검단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수강,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 한하여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설 대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검단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행사

2.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료) ① 검단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를 따른다. 다만, 2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 등(대강당, 세미나실, 체육관, 부속설비, 냉·난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교육수강료 및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다만,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은 제외)
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중지를 연 1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사용료 체납 및 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술에 취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자
3. 검단복지회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제10조(사용료 징수) 제5조에 따라 검단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1. 교육수강료, 수영장, 헬스장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징수
2. 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일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2호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한 번만 10일의 범위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국가와 시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및 다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⑤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화폐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⑦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⑧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⑨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단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공제 불가

2. 월 회비를 납부한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단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공제 불가

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

4.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② 체육시설 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1.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반환

하고 강의 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2. 체육시설 외 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날이 사용예정일 7일 이전이면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7일 미만이면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③ 납부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제13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공연을 관람하려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반할 때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이 조례 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8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5조(시설대관의 범위) ①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세미나실, 체육관
2. 부속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구청장은 검단복지회관 자체의 교육일정 및 공연·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16조(검단복지회관의 임대)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임대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강사) ① 구청장은 검단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검단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단복지회관 우선 사용 허가에 관한 특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단복지회관의 우선 사용 허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특례) 제11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개시일 전까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특례) 제11조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될 때까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검단복지회관 사용료(제7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사	
가. 대강당	오전	30,000	45,000	○ 오전 (09:00~13:00)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 공연 및 행사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 의 50%로 함 ○ 토요일 오후 및 야간,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1시간미만은 2 0%, 2시간미만은 50%, 2시간이상은 다음회의 100% 를 추가징수 ○ 익일의 공연이나 행사준비를 위하여 22: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오후	45,000	65,000	
	야간	70,000	90,000	
나. 세미나실	1회	30,000		
다. 체육관	1시간	2층	6,000	
		3층	4,000	
라. 다목적 체육관	1시간	6,000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부속설비				
피 아 노		1대/1회	20,000	○ 조명연출을 필요로 하는 조명에 대해서만 조명료를 징수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공연 및 행사당일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사용료의 50%로 함
음향	마이크 (설비포함)	기본 3개 추가 1개당	10,000 3,000	
	W/L (설비포함)	1일 1개	20,000	
	PIN (설비포함)	1일 1개	30,000	
	MR (AR, BGM)	1회	10,000	
	빔프로젝트	1회	20,000	
조 명		1 시간	20,000	
공 바 톤		1일 1개	10,000	

3. 냉·난방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 사용료	대강당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 (전기포함) 시가에 1 0%를 가산한 금액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 산 ○ 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액의 20%를 가산한 금액
	세미나실	1시간		
	체육관	1시간		

4. 교육수강료

- 수강료 :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내(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5.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중 · 고생	초등생이하	
수영	강습 (월이용)	개인	52,000	44,000	38,000	○ 단체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소 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 함. ○ 월 회원이라 함은 1월을 단위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 1일에 1회만 출입하는 기준 금액 임.
	자유이용 (월이용)	개인	42,000	33,000	28,000	
	1일이용	개인	5,000	3,000	2,000	
		단체	4,000	2,500	1,500	
헬스	월이용	개인	30,000	20,000		
	1일이용	개인	4,000	2,000		

【 비 고 】

-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추가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 2) 특화 프로그램은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사용료 별표 제5호의 수영장, 헬스장 입장료 조항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따라 강습료를 별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4. 축제 및 그 밖에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제7조(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제1항조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착공 후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민축제 개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축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축제위원회의 기능)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12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 문화예술 담당 부서 국장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축제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때

제18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며 대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축제에 관한 의견을 들어 축제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의 종류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9조제1항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 추가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분과위원회”,“위원장”은“분과위원장”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0조(사업비의 보조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운영과 축제행사 관련 예산 집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축제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사업정산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협조)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② 문화원의 운영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조 등)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 사용 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규정의 적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지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면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명위원회에 출석하는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 예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된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자 등 표창) ① 구청장은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2. 국내·외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9조(설치) 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2. 사업의 평가·연구 및 보고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4.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1명
2.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
3. 문화예술단체장 1명
4.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회의)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명칭은 지역명(○○)생활문화센터로 한다

2. 위치는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조성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공간 제공

2. 그 밖의 회의·전시·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제18조(이용) ① 제16조의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구청장이 사용 승인한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갖추지 못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와 체육시설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란 장애인이 보호자로부터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장애인과 보호자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이용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규취득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동반 탈의실 설치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장애인 동반 탈의실 설치 계획
2.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
3. 신규취득 예정 시설에 대한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점검)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 현황 및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현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

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기획·창작 공간과 공연·전시 공간 등 문화공간의 확보 및 조성 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기획 등 청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지원
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문화예술인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재난 위기 시 청년 문화예술인이나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구호와 활동 안 전망 구축 지원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협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협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협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협회의(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

천광역시 검단구체육회장(이하 “검단구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검단구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민간체육인사 1명,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등의 임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2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교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결과 자료 요청)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3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스포츠클럽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

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3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지원 및 유지관리
4. 전문체육 관련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행사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6. 체육동호인조직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7.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8.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단구체육회를 통하여 검단구체육회 회원단체인 구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검단구체육회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검단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검단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검단구체육회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단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 (제4조, 제5조 관련)

호	사 업 명	세부내용	비 고
제4조제1항제2호	생활체육대회·행사의 개최	○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 정서진·아라뱃길 마라톤대회 ○ 구민화합체육대회 ○ 시민생활체육대회 ○ 검단구체육인 체육대회	
제4조제1항제9호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 카누체험 교실 운영	
제5조제1항제2호	검단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검단구체육회 운영보조 ○ 검단구체육회 차량유지비 지원 ○ 검단구체육회 운영물품 구입 지원 ○ 검단구체육회 워크숍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3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인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 지원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3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술인담당으로 한다.

제11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및 3년 이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계속하여 예술 활동을 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인천광역시 검단구

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

제13조(문화예술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3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6.“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3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수상레저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주민의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활동을 펼치는 산업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기반, 제조, 수리, 교육 시설 및 수상관광 시설을 활용하는 각종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상레저 기반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관광자원 연계 및 관광상품 개발 방안
3. 수상레저 인프라 조성 및 관리 방안
4.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상레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
2. 각종 수상레저 경기·대회 등 관광 활성화 사업
3. 수상레저 관광 홍보 사업
4.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 등)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①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상레저 기반 관광 활동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광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3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광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

립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판매
2. 설명회·박람회 홍보 지원
3. 관광 기념품·지역 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기념품·영상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및 행사 참여자에게 1인당 3만 원 이내의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관광진흥사업 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구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문화유산해설사 활용) 구청장은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3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육성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발굴 및 육성
4.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5.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6. 그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3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문화의 진흥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영상문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영상문화·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관내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화·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영화·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6. 영상 콘텐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영상문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 등)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3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서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

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 생산·수집 및 관리
2. 국가유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4. 그 밖에 국가유산 활용·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4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청소년 스포츠”란 「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활동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유·청소년 스포츠 관련 체육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유·청소년 스포츠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유·청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청소년 스포츠선수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업
2. 유·청소년 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3. 유·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업
4. 유·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유·청소년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관리에 관한 것 외에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글사랑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4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글사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여 한글 진흥을 통한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한글사랑”이란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현수막·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임을 깊이 깨달아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편의 증진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표시) ①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목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 문자를 쓰는 경우 한글 제목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문자를 쓴 제목을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써야 한다.

제7조(지명 및 건축물의 명칭) ① 구청장은 검단구내 신설 도로 지명 제정시 지역의 고유어, 한글 지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제정시 다수가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명칭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의 명칭이 외래어일 경우 아름다운 한글 명칭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구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구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국어·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천광

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람을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4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검단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지원활동가”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
2.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사업
7.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사업
9.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마을지원활동가 운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지원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지원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3. 신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4.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마을지원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마을지원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마을지원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신청) 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중간점검)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지원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및 선정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 국장을 포함한 각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민대표,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3.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6.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꾼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 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4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시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내 청년공간,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청년과 관련하여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4.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공간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청년시설의 구분 및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청년시설은 지역적 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단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시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청년시설의 조성 및 운영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이벤트 추진
2.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창업 정보 공유와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 등을 위한 소통공간 제공
5.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제공
6. 예비, 초기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
7.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8. 창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9. 그 밖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년시설 사업의 발굴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청년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
3. 청년정책 관련 정보 교류
4. 그 밖에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② 협의체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년시설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청년정책위원회”라 한다) 청년위원장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참여단장

4. 청년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유관기관 실무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회의는 협의체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⑧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시설 운영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⑨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프로그램 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④ 구청장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예를 따른다.

1.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수강취소를 한 경우(전액반환)
2. 수강료가 과오납 된 경우
3.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강사 또는 강의 장소 등의 원인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③ 신청하는 자가 경합할 때는 제2항제1호를 우선한다.
- ④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검단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제10조(대여) ① 청년시설의 물품 대여는 제8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며 물품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한 물품은 시설 내에서 운영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미디어실의 촬영장비에 대하여 외부 유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대 5일을 대여할 수 있다.

④ 물품 대여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변상조치) 사용기간 중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물품 등을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멤버십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활성화 및 청년정책의 홍보를 위해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멤버십 마일리지 사용은 청년시설 및 청년시설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다.

② 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사업 참여자 등 청년시설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멤버십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멤버십 가입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멤버십 회원 대상 청년정책 정보

2. 청년시설 행사 및 이벤트 참여 우선권

3. 청년시설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청년정책 및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멤버십 마일리지 적립도가 우수한 청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인식 확산과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홍보 방법 및 홍보 물품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의 취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① 입주자의 입주공간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년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년시설의 구분과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명칭	위치
청년창업지원센터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77

[별표 2]

청년시설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원 기준(제6조제3항 관련)

구분	분야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청년 공간	역량강화	자립에 필요한 법률상담	1인당 연 5회 미만, 50만원 이내
		역량강화 프로그램	1인당 연 1회 30만원 이내
		청년 강사 양성과정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	1인당 연 1회 50만원 이내
	문화·예술 건강	정신건강관련 상담 (화상상담 포함)	1인당 연 4회 미만, 40만원 이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1인당(건당) 5만원 이내
		건강 프로그램	1인당(건당) 10만원 이내
	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	소모임 활동비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	3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 팀당 60만원 이내
		모래알 정책실험 프로젝트	프로젝트 당 200만원 이내
		간담회 또는 좌담회 등	식비 또는 다과비 지급 (매식비 기준 단가)
		활동지원 프로그램	1인당(건당) 10만원 이내

[별표 3]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구분	항목		마일리지 범위	1일 제공(사용) 한도	비고
청년 공간	적립	검단구 청년센터 출석	500점 이내	-	1일 1회
		검단구 청년센터 홍보 (공간 및 프로그램)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멤버십 친구 추천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본인 멤버십 가입 당일 친구추천 인정 불가
		행사 참여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사용	커피 1회 이용권	500점 이내	멤버십 한도 내	
		굿즈 교환	20,000점 이내	20,000점 이내	개당 3,000원 범위 내의 굿즈
		청년참여확대 및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	40,000점 이내	40,000점 이내	

[별표 4]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 등의 세부기준(제13조제2항 관련)

홍보 방법	시기	대상	홍보 물품	지급 기준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1인당	총액
공모전	연 2회 이하	참여자	검단구 지역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수상자 및 참가자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온·오프라인 이벤트	연 12회 이하	참여자	검단구 지역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등 참여자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4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방안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및 일자리 질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 지원

바.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명
2. 구의 청년지원 등 담당부서 국장 1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⑧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청년참여단)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참여단(이하 “청년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하여 청년참여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참여단은 단장 1명과 남·여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년참여단은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참여단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위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위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단위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단위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⑧ 구청장은 청년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단원의 능동적인 청년참여단 활동 촉진 및 우수한 청년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청년참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라. 구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홍보사업, 청년 에디터(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지원(별표 1. 가 기준에 따름)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사업(별표 1. 나 기준에 따름)

마.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가상현실, 빅데이터, 3D프린터, 드론, 로봇
등) 교육훈련(별표 1. 다 기준에 따름)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 자금
비용 지원(별표 1. 라 기준에 따름)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마.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
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
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정책 회의, 포럼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 다.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청년시설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청년단체
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행정적 지원 및 실비, 활동비 지급 등
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별표 1. 마 기준에 따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및 안정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

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구청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① 구청장은 청년 지원 및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검단구 청년상을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기업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서 금전 또는 그 밖에 재산 등을 제공할 경우 참여자 선정 및 홍보활동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청년정책 활성화 시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청년정책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별표 1. 사 기준에 따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 청년에디터(서포터즈) 지원 기준(제9조제1호 라목 관련)

1. 지원대상 : 청년에디터(서포터즈)
2. 지원내용 : 청년에디터(서포터즈) 활동비(원고료,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원고료 : 1인당 월 10만원 이하

나. 실비 :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름

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기준(제9조제2호 라목 관련)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검단구 거주 청년
2. 지원내용 :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본인부담액)
3. 지원횟수 및 금액 : 당해연도 인천광역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계획에 따름
4. 자격시험 종류 :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단, 국가공인자격증은 큐넷, 민간정보자격서비스(공인)에서 검색되는 자격증에 한함

다. 4차산업 관련 메이커 교육 훈련 지원기준(제9조제2호 마목 관련)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검단구 거주 청년
2. 지원내용 : 4차산업 분야 교육 훈련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 1인당 연 1회 350만원 이하

라. 창업 자금 비용 지원기준(제9조제3호 다목 관련)

1. 지원대상 : 3년 이하 초기(예비) 청년창업가 또는 청년창업팀
2. 지원내용 : 사업개발, 마케팅, 운영 등을 위한 초기 창업기반 구축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 1팀당 월 30만원 이하, 1년간 지원

※ 지원기간은 창업 실적에 따라 1년 추가 지원 가능(총 2년에 한함)

마. 청년 활동 활동비 지원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지원대상 : 청년, 청년단체,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기관) 및
법인
2. 지원내용 : 청년 활동 활동비(멘토비, 실비)
3. 지원횟수 및 금액

가. 멘토비 : 1인당 월 10만원 이하

나. 실비 : 교통비, 식비

※ 실비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름

바. 협약 내용에 따른 세부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제공기관	시기	대상	제공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제공 액수 한도(1회당)	
						1인/1팀당	총액
임대료, 체험료, 관람료, 이용료, 숙박료 등	협약기관	협약기간	당첨자/ 선정자	당첨/선정 기준에 따라 당첨/선정된 자	시설물 이용권 또는 실비	월3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 임대료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사. 홍보방법 등 세부기준(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시기	대 상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제공 액수 한도(1회당)	
					1인당	총액
SNS 이벤트	연 12회 이하	참여자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지역화폐 또는 굿즈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퀴즈 및 게임	연 12회 이하	참여자	청년정책관련 퀴즈 및 게임 참여자	지역화폐 또는 굿즈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설문 및 토론	연 6회 이하	참여자	청년정책관련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지역화폐 또는 굿즈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굿즈란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말함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4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고령자 및 준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조화로운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단체,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창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여성, 고령자, 준고령자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
5.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구인업체 발굴
3. 채용행사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4. 취업 컨설팅 및 교육 등 구직자 역량강화 사업
5.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6.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1인당 3만원 이내의 홍보물

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직 상담자 및 구인 기업관련자
2. 채용행사 참여 기업관련자 및 구직자
3. 취업 컨설팅 등에 따른 강사 및 교육생
4.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5. 그 밖의 일자리분야 유관 기관 담당자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제8조에서 정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경비와 사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실적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1조(검사·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이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2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요구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별도계정)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4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본다.

② 협의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히행의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건의 배부)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4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2. 구 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3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계획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
2. 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규정, 구매실적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매계획의 이행에 드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의 공표) ① 구청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①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참여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행사 등 개최, 참가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에 관한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사용·이용하고 홍보하는 체험단 등(체험단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무료로 지원받아 체험하고 사용 후기를 홍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람들을 말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3조제1호에 따라 전시·박람회·행사 등 개최 시 참석자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해 홍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품을 지원하거나 홍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홍보제품 등 세부기준(제14조제6항 관련)

구 분	시 기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기준	지급수단
전시회, 박람회, 행사 등	개최 시	매회 2만원 범위	방문자 또는 이벤트 참여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1인 2만원 범위)
체험단 운영	운영 시	매회 체험단 1인당 25만원 범위	체험단에 선정된 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1인 25만원 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임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4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② "생활임금액"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 ④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⑤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 ⑥ “소속 노동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및 하수급인(「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구 소속 노동자
 3.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4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이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중앙부처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

스텝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한 업무부서의 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 국장
2. 학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장 활동가
4.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서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교육훈련 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구분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지원
5.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경영, 노무, 법률, 회계, 마케팅,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8. 참여기관 종사자 및 구민 교육·홍보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구 출연기관이나 제18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린다. 또한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 운영을 더 이상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과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

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5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검단구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제8조(구매촉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또는 제공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5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 중 중소기업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이자액을 말한다.
4.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이란 재해피해, 환율 및 보호무역 등 대외 수출 환경의 변화, 원자재 가격의 급등, 범유행전염병, 기술유출이나 특허분쟁 등의 산업피해 등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5. “재해피해”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 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구금고가 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③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 규모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

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채원 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제1항제4호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검단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이내
 2. 구 금고 검단구청지점장
 3.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4. 그 밖에 지역 경제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인사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

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 용자 계획 수립 및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용자 시기에 맞추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용자지원 대상) 기금의 용자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기업
2. 장애인 기업
3. 검단구 이전 기업(이전 발생일 후 1년 이내)
4. 구 기업인상 또는 구민상 수상 기업
5. 구 경제단체 가입기업
6. 고용 기업(당해년도 1인 이상 구 주민 신규 고용기업)
7. 청년 기업

8. 중소기업협동조합

9.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마을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10. ESG경영 우수 기업

11.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2조(융자지원 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지원 신청)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일반자금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재해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5. 재해피해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지원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융자조건) ① 기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에서 기금 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매년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⑤ 융자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16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제15조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8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융자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지원 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지원 기간으로 한다.

제20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구청장은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를 검단구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신청서

기업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한 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 / 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			(연 락 처) 010-	
	본 사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		소유구분	자가 / 임차	
	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		소유구분	자가 / 임차	
		공장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면 적	대지 m ² , 건물 m ²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회사홈페이지 (E-mail)	()			연락책임자 (휴대폰)		
기업내용 (백만원)	자산총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총매출액		수 출 액		부채비율 (%)		
수혜이력	신규(), 1회(), 2회(), 3회 이상()						

대출 현황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		□ 3년 (1년거치 4회 분할상환)			□ 3년 (균등분할상환)	
	우대기업 (해당사항만 “○”)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검단구 이전기업	검단구 기업인상/ 구민상	검단구경제 단체가입	고용기업 (20)	청년 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기타
							고용인원 ()인				
	대출은행	은행 지점		담보 제공 방법	부 동 산 () 신 용 보 증 서 () 기 타 ()			대출 금리	%		
	대출 상당 확인	(담보제공방법이 부동산, 기타인 경우) 은행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보제공방법이 보증서인 경우) 보증금(재단)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일반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5.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6. 기타 증빙이 필요한 서류 등
----------	---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일반자금) 사용계획서

1. 업체개요

○ 회사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대표자 주요경력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주 생산품의 개요

제 품 명	특 성 및 용 도

2.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 융자금의 사용목적 :

○ 융자금 세부사용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항목	세부내용(산출내역)	금 액	비 고
원부자재구입			
판매관리비			
세금과공과			
운 반 비			
기 타			
계			

○ 융자금 상환계획(구체적으로)

○ 담보 제공 계획(구체적으로)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재해자금) 사용계획서

1. 재해 원인 및 현황

재해구분	☐ 자연재해	☐ 홍수 ☐ 태풍 ☐ 지진 ☐ 폭설 ☐ 기타
	☐ 인적재난	☐ 화재폭발 ☐ 전기가스 ☐ 건물붕괴 ☐ 기타
	☐ 사회재난	☐ 화재폭발 ☐ 건물붕괴 ☐ 교통사고 ☐ 감염병 ☐ 기타
재난의 원인 및 현황		

※ 화재 확인서 등 재해입증서류는 별도첨부

2. 용자금 세부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지출항목	세부내용(산출내역)	금액	비고
원부자재구입			
운반비			
합계			

3. 재해복구 계획 및 방안

복구항목	복구방안	복구일정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별지 제5호서식]

재해피해 확인서

1. 피해일시

구 분	내 용
재해발생 일시	년 월 일

2. 재해발생 당시 피해상황

구 분	내 용	
피해상황 설명		
피해상황 사진		

3. 피해금액

구 분	내 용	
피해금액 설명		
피해금액 목록	세부내역	금 액
	합 계	

별첨 : 피해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상기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빙서류 제출과 동시에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5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검단구의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감정노동 사용자”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공공기관의 장

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다. 검단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라. 공공기관과 공사, 용역 및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마. 그 밖의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

5. “고객”이란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스트레스”라 한다) 및 건강장해 예방과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노동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 기본 방향, 업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 목표, 실행계획, 소요 재원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건강장해, 사고 현황 및 그 예방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
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자 단체, 사용자단체, 민간 단체, 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6.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사고 현황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7. 휴일·휴가 및 노동시간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8.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인식개선
9.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소속 감정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가이드라인, 모범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 마약교육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감정노동 권리보장 분야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또는 국내외기구 등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및 잦은 이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단구에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가 상담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① 공공기관은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를 인격 주체로서 배려하는 내용의 기관별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기관별 매뉴얼에는 지침을 기본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관별 매뉴얼을 전체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감정노동자에게는 별도 배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5조 제1항의 시행 원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기관별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필요하여 제안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권, 노동, 젠더,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 전문가, 이 분야에 소속되어 지식이 있거나 연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검단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정노동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이하 “권리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권리보장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
2.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3.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감정노동자 또는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5. 지침 및 기관별 매뉴얼의 작성 검토 및 개선을 위한 연구
6.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직무 여건 개선 정책 연구 및 보급
7.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권리보호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및 정서 지원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상품 구매권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5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상품 구매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관내 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 권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구매 권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제5조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구매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의 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권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권장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5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사업비)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기술개발 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2. 지식재산 창출 지원
3.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4. 제품인증획득 지원
5. 중소기업 금형제작 개발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기업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3. 기업정보지는 매월 1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배부를 위해 모

사전송 등의 고속 통신수단을 활용한다.

제6조(해외진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4. 해외시장조사 참가 지원
5. 외국어 통·번역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제품홍보관 운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우수제품 홍보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품홍보에 대한 질서유지와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관 공간에 맞게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전시물품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정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8조의 우수제품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검단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
2.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기업관련 단체 중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활동 촉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
2. 입점기업 선정 심사, 입점기업간 분쟁 조정 등
3. 기타 홍보관 운영사항 심사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관리자 세미나 개최
2.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
3. 중소기업 근로자·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 개최
4.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지원
5.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간 정보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근로자 사기진작)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산성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산업시찰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 노동조합, 사회공헌 활동 기업,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조례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사용·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5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교육 등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술의 공유·확산 및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계획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TF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사람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연구소·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조정·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조정·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조정·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의 조정·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5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검단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검단구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5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검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단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5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구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구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4조(지원활동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

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5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

이 서로 도와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구청장은 검단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공동사업)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6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자료 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구청장은 도시형 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

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 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
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①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6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

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검단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소재지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구매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6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천광역

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4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 제외)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였을 경우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구청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4.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7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창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선정 및 지휘·감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부서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조세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3.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의원 1명
2. 1인 창조기업 담당 국장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창조산업 각 분

야의 전문가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적절한 이해관계 연루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자문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자문·지원한다.

1. 지원센터 입주회원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
2. 지원센터 입주회원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자문

제17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6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기업 환경 개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및 산업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스마
트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학융합지구, 첨단투자지
구를 말한다.
2.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3. “산업기반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 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기업과 산업기반시설이 적용대상이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환경 개선 지원) 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정비, 근로자 복지 편의시설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의 국비·시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기반시설 정비) 구청장은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정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 주차장, 대중교통 등 교통·물류 인프라 정비 및 확충

2. 도시미관 정비, 환경 개선
3. 산업 집적화 촉진
4.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 정비 시책

제7조(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기업인 간담회, 기업체 현장 방문, 전화·인터넷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체 정비사업 지원) 구청장은 기업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공업지역 내 협의회를 포함한 기업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성·공공성·개선효과·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업 간 협력 및 교류 지원) ① 구청장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간담회, 설명회, 공동 세미나 등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교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6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년 및 장년 세대에 속한 구민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로 가지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년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6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거치대, 주차시

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관리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위반 근절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단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구민 또는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관리
4. 이용자의 운행 자격 확인을 위한 조치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자 및 예비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6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및 교통 이용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6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라 함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질서계도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

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 각 목을 포함한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

통 지도를 하도록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6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2.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 과장
3.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 관련 부서 국장
4.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 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6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
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
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6.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7.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18세 미만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만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요청) ①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7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이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자 또는 관리하는 자(소유자의 위임·동의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말한다.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개방주차장의 지정 또는 개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과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방주차장 소재지 및 개방기간에 관한 사항
2.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주차면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개방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협약사항(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거나 또는 개방기간 만료 이후 재개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제5조(개방주차장 지정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방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2.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2년 이상 계속 개방할 것

3.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경우 개방주차면은 일반주차면과 구분될 것

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부설주차장의 진출입 구간이 차량의 교행이 곤란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주차가 원활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3.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외곽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인 경우

4. 부설주차장 위치, 시설의 구조·설비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등에게 보조·지원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3. 개방주차장 운영보전금

②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결정

2. 유료로 운영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3. 개방주차장 지정 우선순위 결정(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개방주차장 미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제2호는 제외한다)
5. 개방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원장은 개방주차장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 공무원
3. 주차, 교통, 도시계획, 건축, 주택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간사는 개방주차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이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등) ① 개방주차장은 소유자등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유료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3급지 요금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유자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이용자는 사용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
2.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개방
3. 환승주차장으로 개방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입의 처리 등) ①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소유자등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개방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표지판 규격 등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규격 및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 또는 관계자가 개방주차장이 속한 시설물(부지를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6.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차량의 이동조치 등) ① 관리자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조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및 제36조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주차장				☐ 지정 신청서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개방유형	☐ 신규개방		☐ 재개방 (회)		
이용요금	☐ 무료		☐ 유료 (주차요금)		
개방기간					
개방면수	면 (옥내 면, 옥외 면, 기타 면)				
개방시간	* 요일별, 시간별, 실정별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유자등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개방비용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관계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서면동의서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7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감소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라고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구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
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
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4.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5.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그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7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할인 등 징수금액을 모두 합산한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제5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2.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3.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5.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 해

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
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7.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퍼센트 감면

8. 인천 다자녀가정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정함):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1.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1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

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13.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0퍼센트 감면

② 주차요금을 검단구 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거부의 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적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를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제8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가. 제1항제1호의 법인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위탁자가 정하는 금액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나. 제1항제2호 중 비영리공익법인	위탁자가 정하는 방법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국,공유재산 대부로 상당액 중 높은 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가·나 이외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2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대상 차량을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별로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4급지 해당요금과 같으며,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검단구 지역화폐, 금융기관 등의 발급카드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교부하는 방법
3.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4. 선납주차권을 사용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휴게시간 1시간 이내 주차하는 차량 및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

2.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입차하면서 운전자가 선납을 희망할 경우(운영시간 종료시까지 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하고 출차 시 실제 주차요금으로 정산한다)

③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

1.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2. 주차장 이용자가 이사, 이직, 장기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5퍼센트로 한다.

제14조(주차장의 이용제한) ①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적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교통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④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전용표시를 할 것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제17조(배려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배려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③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④ 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 ⑤ 제1항에 따른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적용하고, 전용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9조(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용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천광역시 관할 동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6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2조(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생활숙박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법정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용자 등) 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용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용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용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3. 학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단, 20면 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2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

제28조(과징금 처분) ①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 징수한다.

③ 영 제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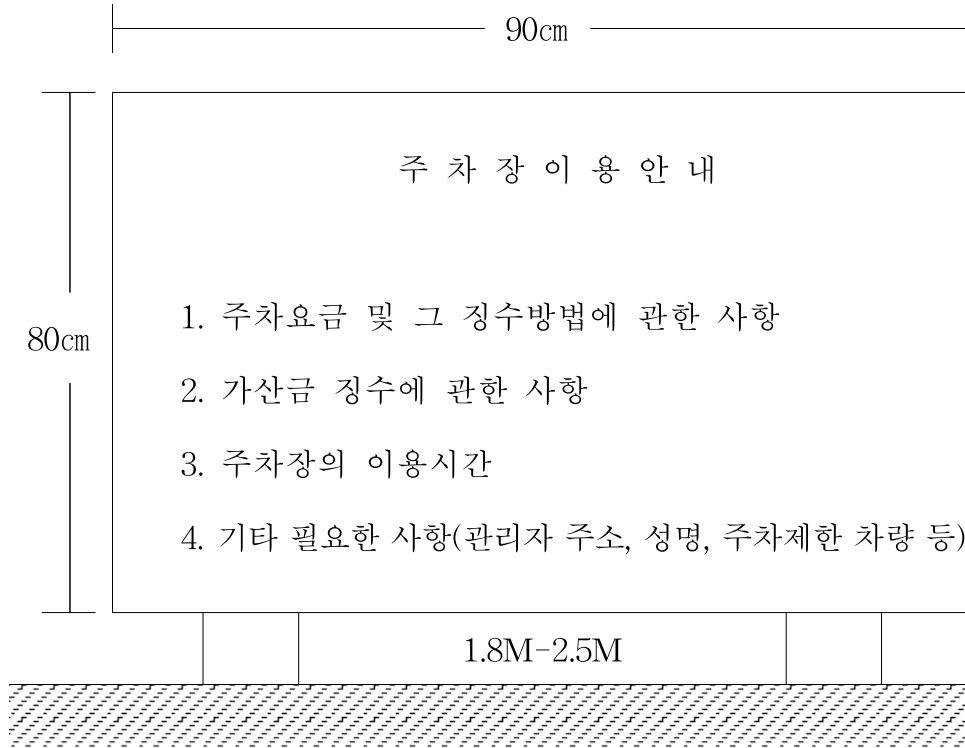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30분까지	최초30분 이후 15분당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0,000원	7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 비 고 -

- 주차요금표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주차장별 이용자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주간: 09:00부터 19:00까지
 - 야간: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가 정한다.
- 노외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정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요금으로 징수한다.
-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수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주차요금의 특례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위임, 위탁 시)는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월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노외주차장의 야간시간 이용요금은 50퍼센트 할인 금액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청사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함으로써 인근 공영주차장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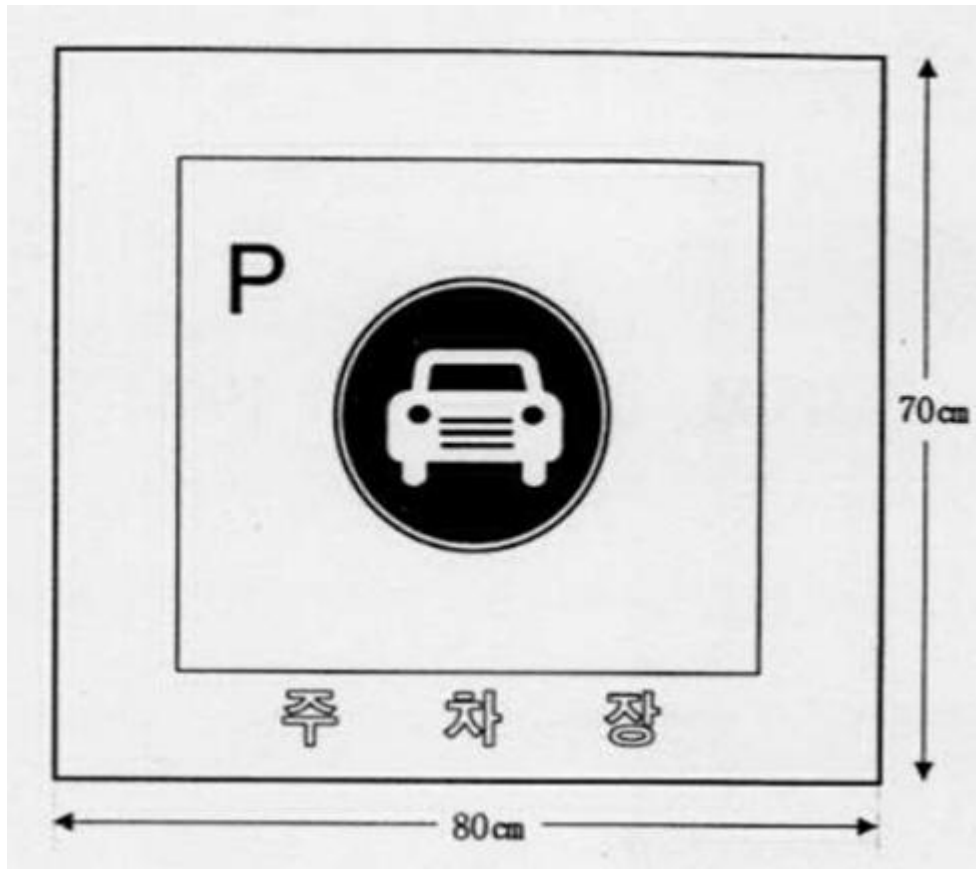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제7조제1항, 제8조3항, 제11조제3항 관련)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채	
		바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 색
공영노외주차장	알미늄판	녹색	흰 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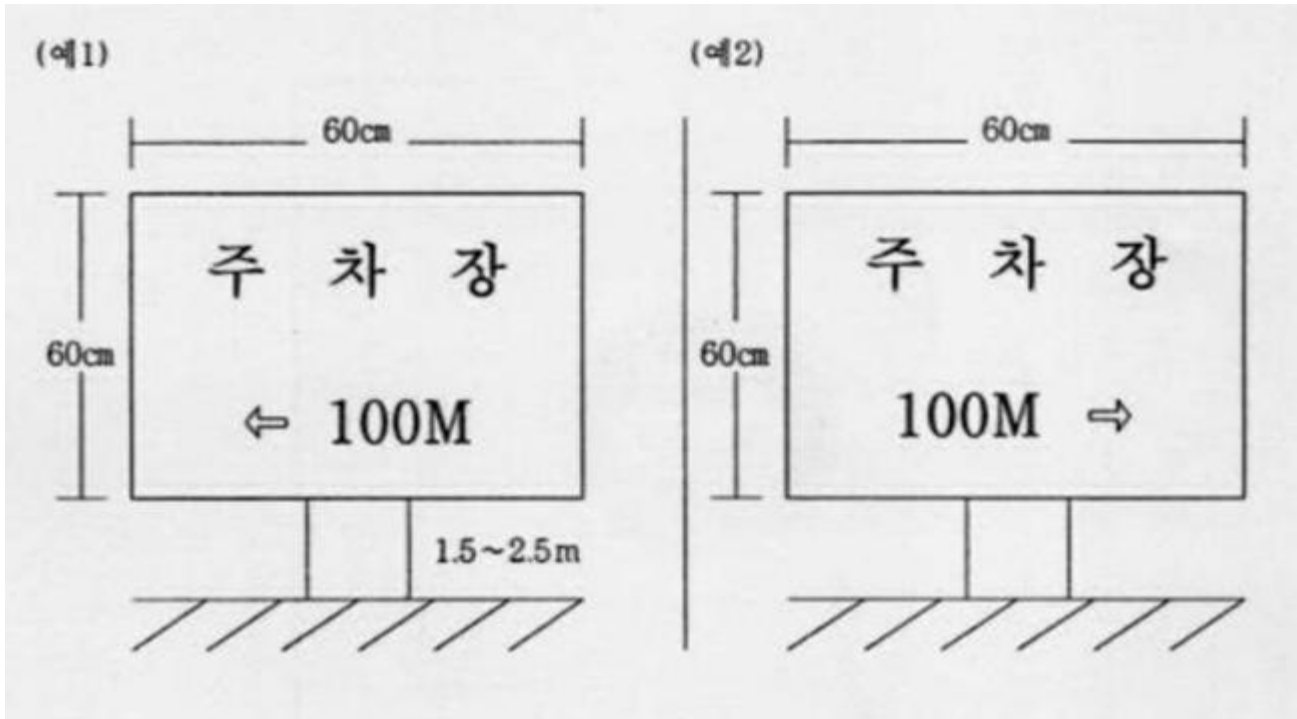
[별표 3]

노외주차장 표시(제7조제2항 관련)

- 비 고 -

-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 내부표지판(가로 300cm × 세로 250cm),
문 자(가로 17cm × 세로 17cm)
- 색채: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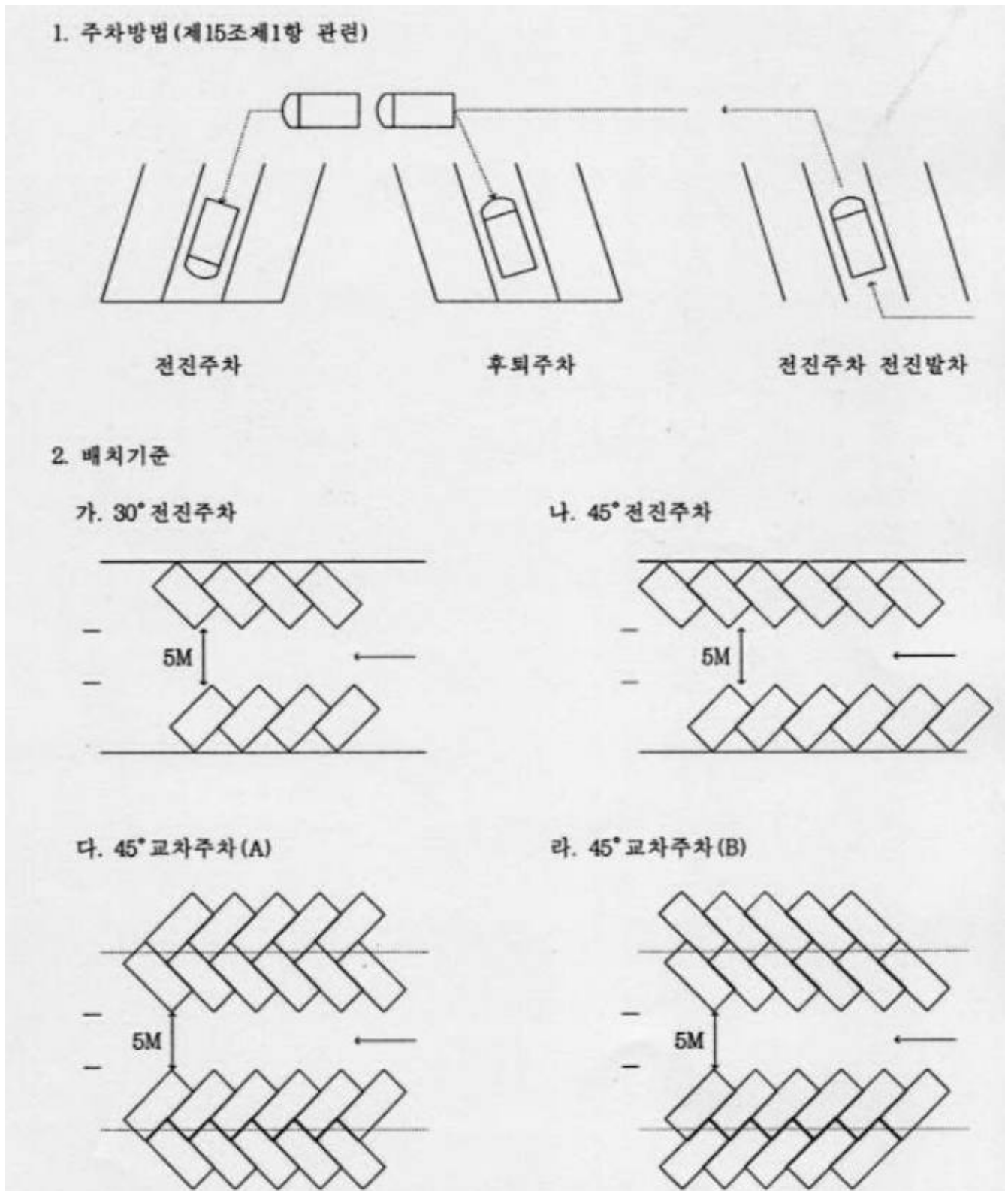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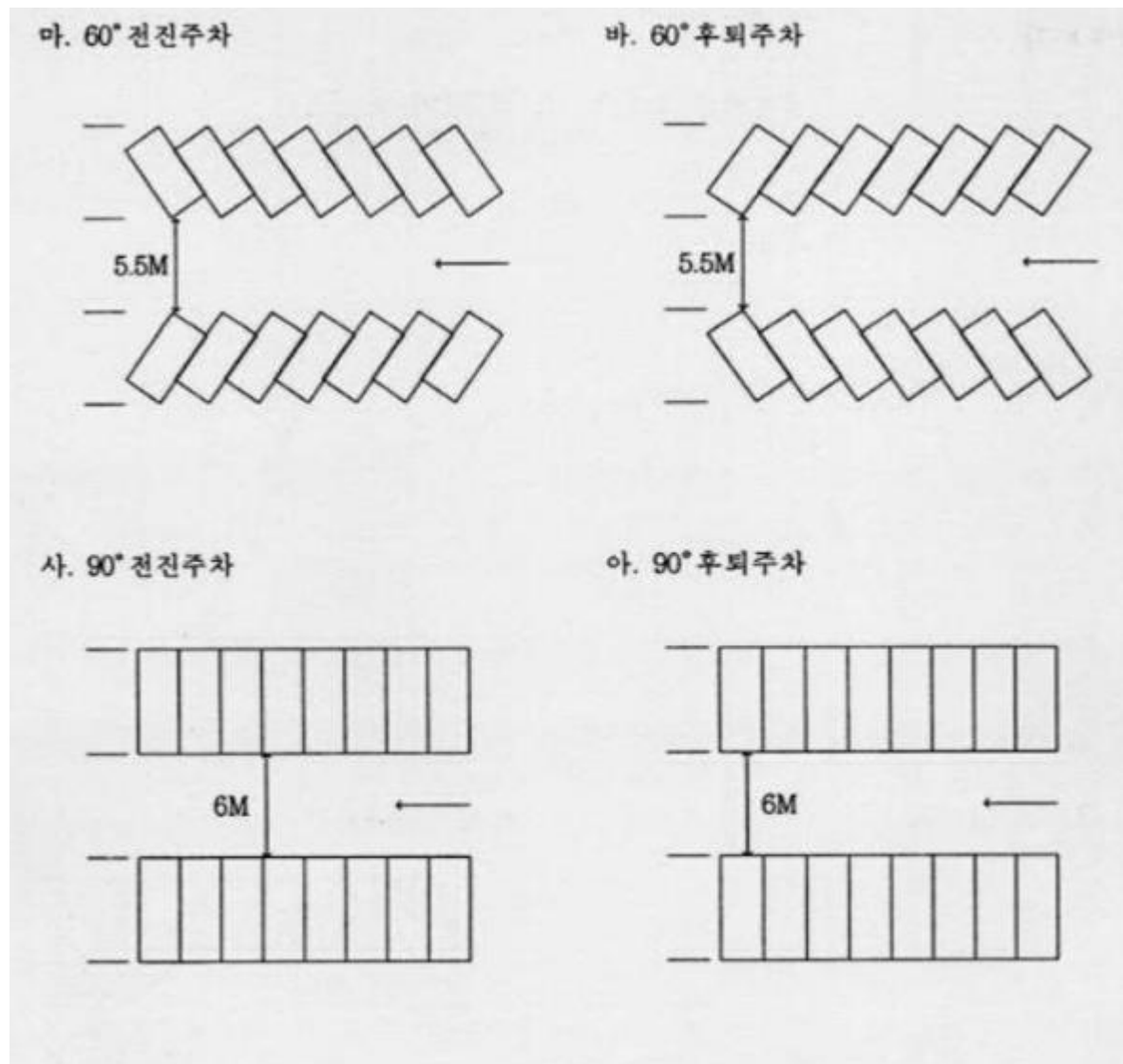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제7조제4항 관련)

- 비 고 -

- 재 료: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6]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2항 관련)

(앞면)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사 용 자:

사용 기간:

이용주차장: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인)

- 비 고 -

· 바탕: 하늘색

· 글씨: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표 7]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제18조 관련)**- 비 고 -**

1. 규격

가. 표지판: 40cm ×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가로 28cm × 32cm

2. 색채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cm ~ 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	차량번호		차종		
	감면 항목				
월 정기 이용기간			계약 금액	원	
환불사유					
환불금액	원 ※ 산출근거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 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월정기주차권	※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 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출장 자동차의 매도·폐차·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7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공공예금 이자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세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7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7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통한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운전자”란 노선버스, 영업용(개인, 법인)택시로 한다.
2. “승객”이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상대상자)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포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한다.

제6조(포상대상자의 자격)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근무실적이 모범적인 경우
2. 위급상황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돌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에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
2. 사업장의 대표 및 협회의 장
3.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제8조(포상대상자의 선정)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시상) ① 구청장은 매 반기 1회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인원은 반기 3명 이내로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중복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적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7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

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 등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구청장 포상
3. 구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 지원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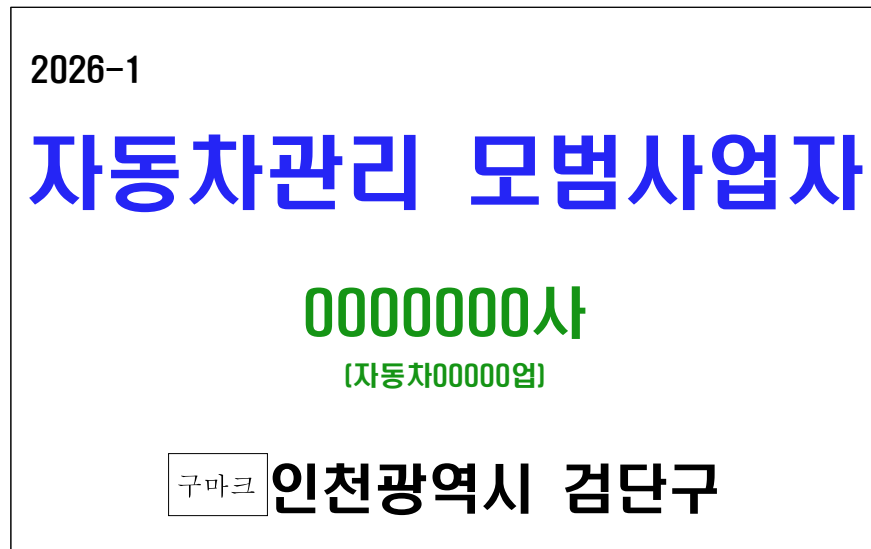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cm(가로)×30cm(세로)

나. 재질 :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는 청색, 상호는 녹색, 그 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			연락처	
사 업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신청하는 곳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처리 기간	30 일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유효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illegible]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7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65세 이상 노인세대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아.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2. “화재안심보험”이란 주택 등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공공 또는 민간의 화재보험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화재안심보험의 가입대상자 현황, 보장기간, 보장범위·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참여와 지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및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벨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4.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및 안전용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기 타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정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동 담당 확 인

지원시설	☐ 소 방	소화기 (개)
		화재경보시설 (개)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개)

점검시설	☐ 전 기 ☐ 가 스 ☐ 기 타
------	--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7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을 둔다.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로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단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로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3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 기록, 행정업무, 비상 연락망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잃을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5. 대피소 및 무더위쉼터·한파쉼터 등 시설 관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7.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 안전 상황실 근무 지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제출
10. 안전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1. 그 밖의 재난 안전 관련 활동 또는 훈련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검단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동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1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① 구청장과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매년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 경비 중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산정한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 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단, 자연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 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 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 발생 경위서 및 사고 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 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 발생 경위서 및 사고 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 발생 경위서, 사고 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제2조제2항 관련)

임명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
방재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가임희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가입신청서<개인>(제2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_____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유사단체 가입여부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입신청서<단체>(제2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붙임]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유사단체가입여부	비고
1							
2							
3							
4							
⋮							

[별지 제4호서식]

활동확인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4항 관련)

성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 별지제2호 또는 제2호의2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소	※ ○○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는 동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제8조제2항·제3항·제4항, 제13조제3항 관련)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1. 등록번호란 ~을 말합니다.
2.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활동계획서(제1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월 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출입증(제14조 관련)

출 입 증 사 진 (3×4cm)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바탕 배경에 검단구 로고 삽입
---	---

[별지 제8호서식]

요양, 장애, 장제, 유족 재해보상 청구서(제15조제2항 관련)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재해보상 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 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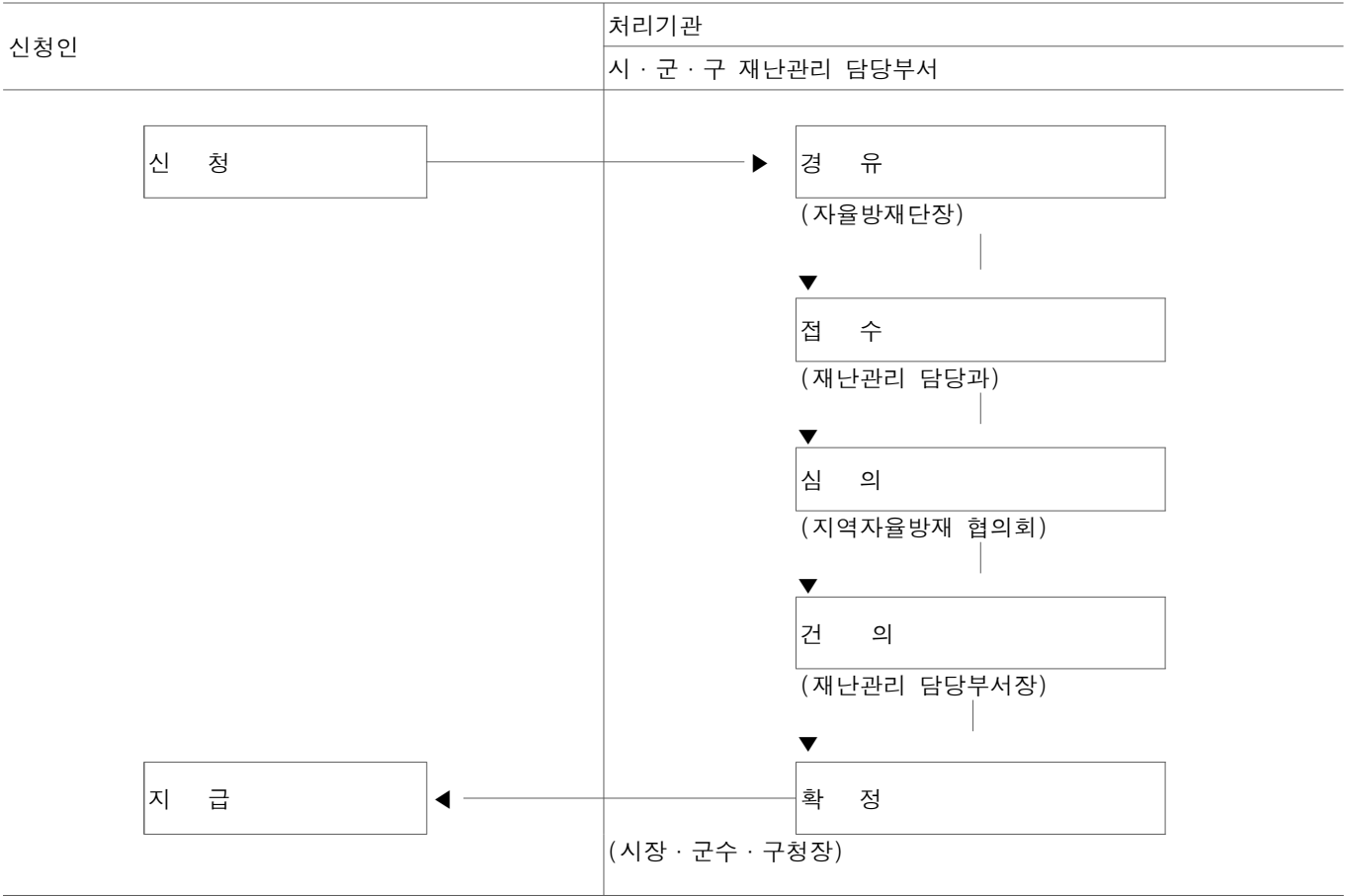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별지 제9호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탈퇴 희망 신청서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89.10.11.
연락처	010-1234-5678	행정동	연희동
주소			
신청사유	ex.) 심신미약 등 개인상 이유로 탈퇴를 희망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7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

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의 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조성된 기금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

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6.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검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9. 재난피해시설(검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0.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12.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4.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6.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1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

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안전총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법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경제정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도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건축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가정보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방재 관련 분야,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구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해당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8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 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대책본부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2. 차장: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
 3.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수습주관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
 6. 실무반: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수습 업무 수행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

조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경계, 1단계, 2단계~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라. 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8과 같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라 관련된 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연락관 등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

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안전 관련 국장 및 과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검단구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

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주요인사 주재 회의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 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 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팀 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4) 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관리
나.협업기능반	1)긴 급 생 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2) 재 난 현 장 환경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구현황 파악
	3)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구현황 파악
	4) 시 설 피 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응급복구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 해 시 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유관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구현황 파악
	6) 재 난수습 홍 보 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군·구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 원 지 원 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 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 지 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 구 급 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검단구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지원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홍보정책과 기획예산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안전총괄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안전총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경제정책과
9. 산업통상자원부	1.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나. 원유 수급 사고 3.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라. 전력 사고 5.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소관부서 (경제정책과 등)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11. 환경부	6.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7.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8.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9.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0. 마. 황사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12. 고용노동부	11.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안전총괄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도로과 교통정책과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안전총괄과 도로과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경제정책과 생태하천과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도로과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등) 문화관광체육과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등) 안전총괄과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정책과
17.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18.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정원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현장통합지원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별표 3]

검단구 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총괄 조정관	차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재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검단구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검단구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지 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관련 부서 각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부서장
실 무 반	안전총괄과 공무원과 각 부서에서 파견된 인력이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 소속 직원이 지역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안전총괄과는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발생 시의 검단구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경계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하수·폐기물·에너지 응급복구반	· 도로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산림정원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마) 에너지공급·폐기물 기능복구반	· 환경관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사) 재난대응자원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검단소방서 (안전총괄과)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비상1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 α + β 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상황관리 총괄반	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	·재난 총괄부서 3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총괄부서 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라) 행정지원팀	·총무과
	2)협업기능반 (α)	가)간급생활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나)재난현장환경정비반	·자원순환과
		다)긴급통신지원반	·정보통신과
		라)시설파해응급복구반	·도로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산림정원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마)에너지공급파해시설기능복구반	·환경관리과
		바)재난수습홍보반	·홍보정책과
		사)재난관리지원자원반	·안전총괄과
		아)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자)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보건소 보건행정과
		차)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총무과
		카)사회질서유지반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수색, 구조, 구급반	·검단소방서 (안전총괄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검단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 상황관리 총괄반	가) 재난수습분석 및 전과, 재난상황 관리팀	· 재난 총괄부서 3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재난 총괄부서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5명
		라) 행정지원팀	· 총무과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해충방제반	· 도로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산림정원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마) 에너지공급파악설 기능복구반	· 환경관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 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검단소방서 (안전총괄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검단구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6]

사회재난 발생시의 검단구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안전교통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 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관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안전총괄과장	
	1) 재난상황 총괄반	가) 상황관리총괄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나) 수습상황과악팀	· 재난 총괄부서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3명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해응급복구반	· 도로과, 건축과, 생태하천과, 산림정원과, 환경관리과, 문화관광체육과
		마) 에너지공급과해설 기능복구반	· 환경관리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정책과
		사) 재 난 관 리 자 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검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서부경찰서 (안전총괄과)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검단소방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협업반(β)		·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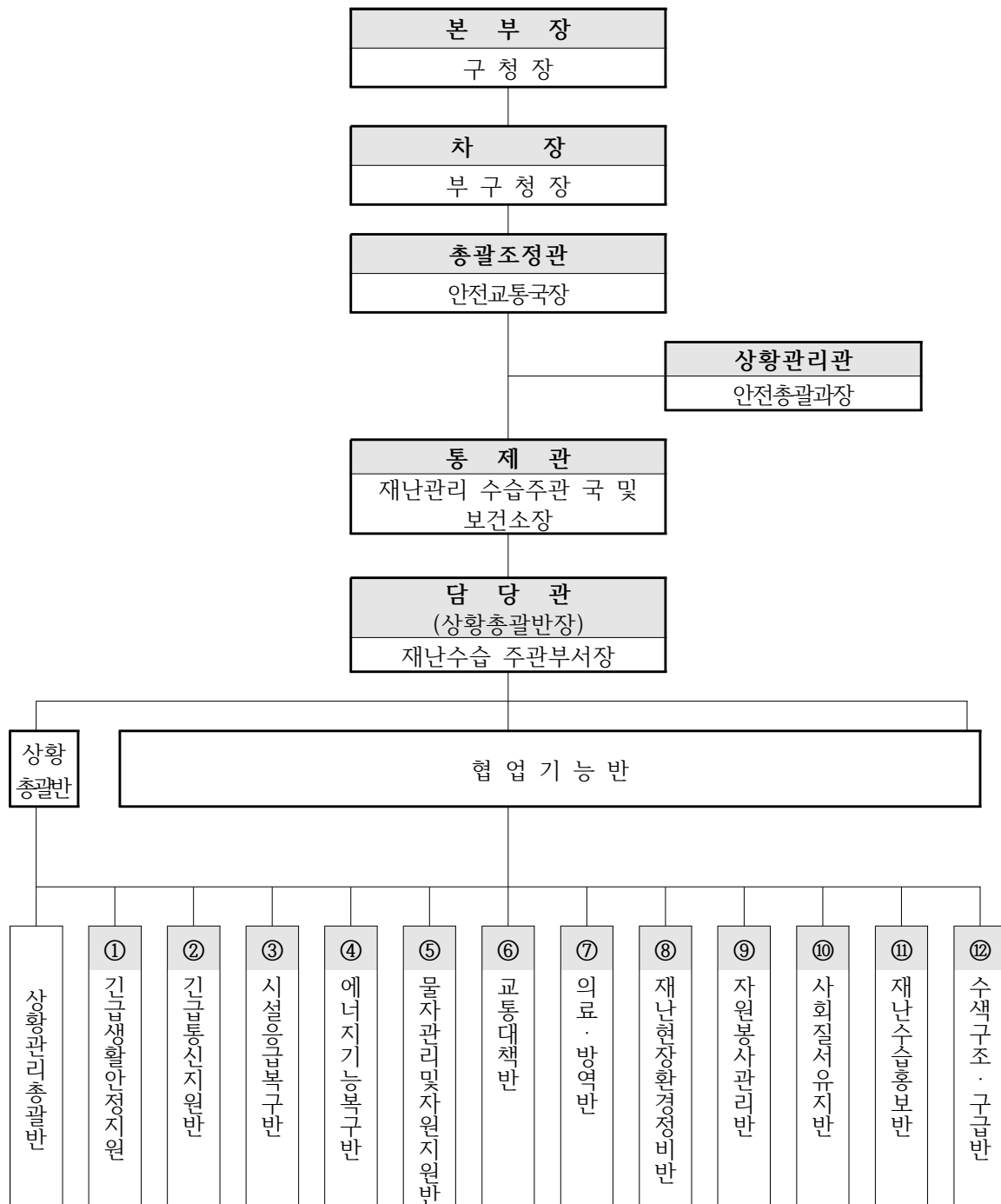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5 및 별표 6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경계 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검단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비상1 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검단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3)비상2~ 3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로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사회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르는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검단구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표 8]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8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구청장
2. 재난안전업무 담당 국장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5.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대대장급
6. 구의 관할구역 교육장
7.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책임자
8.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이 사전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할 사항의 검토 및 정리
3. 법 제66조의11에 따라 구에서 개최(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4. 그 밖에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협의·조정 및 검토

-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조정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조정위원”으로 본다.

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관계기관·단체장, 축제 주관부서장의 요청과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회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분야 실무조정위원만을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등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

체 등에게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등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등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지급) 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등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8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측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실제로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청, 소방서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개요 (일시, 장소, 주최·주관·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정인원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구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피난안내 등 홍보) 구청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행사 참여자 또는 군중에 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행사 시작 전 피난 안내(음성안내 또는 영상물 상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배치, 임무 등에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응급·구조를 위하여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할 것
3. 안전관리요원임을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4.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8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5. 폭염 안전사고 예방대책
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재 시설
3. 그늘막
4. 승객 대기시설 에어커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시설 수선,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
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3.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 실시) 구청장은 구민에게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8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을 이용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

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정소식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8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 복지시설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차.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8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인천광역시 검단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 예방 활동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검단 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검단 담당 소방서장, 검단 담당 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검단구 관내 기관 단체장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 검단 담당 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8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 풍수해·지진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지진재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의 뜻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등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한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의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8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8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

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로써 예시도는 별첨과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에는 즉시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는 방법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기는 방법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에는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는 방법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에 매년 11월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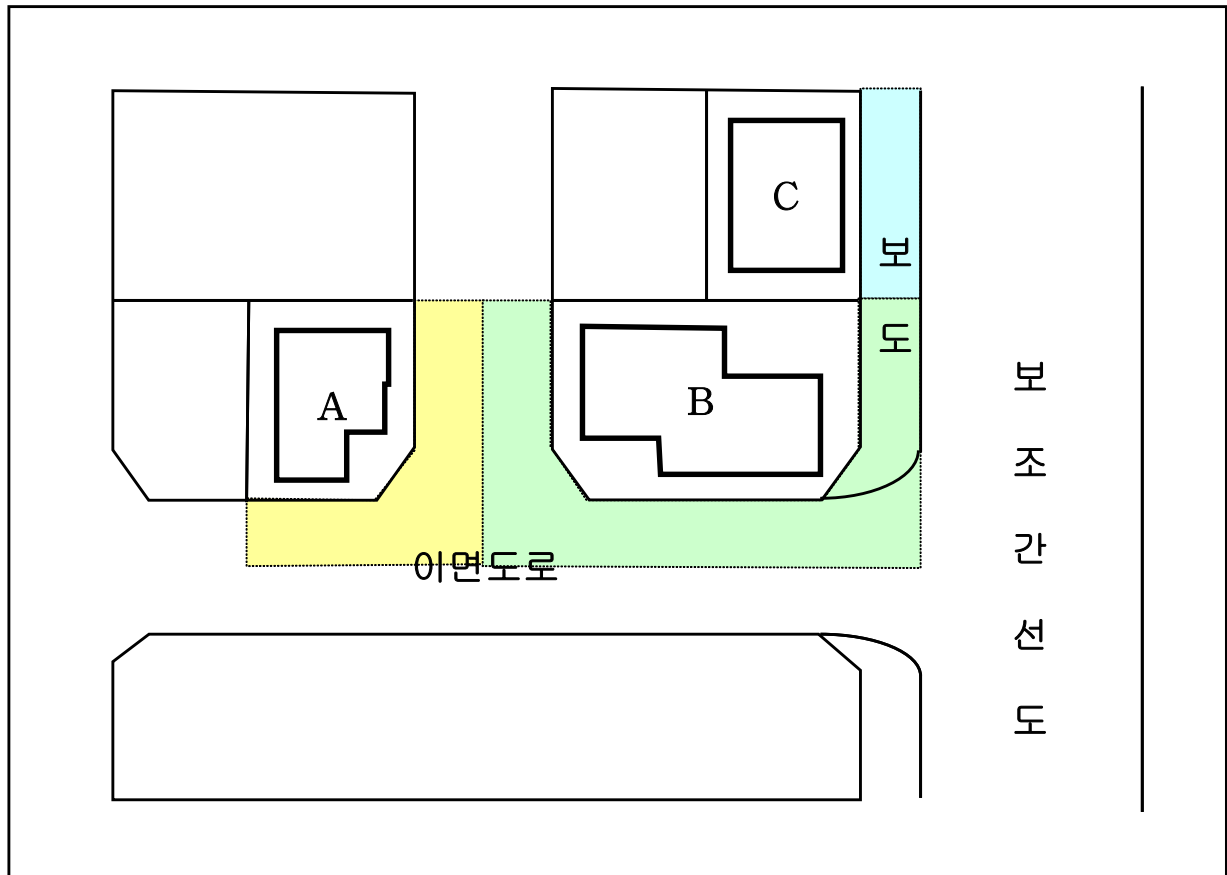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8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지진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

도 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검단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위험도 평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검단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등)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 ②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③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1.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토목 등 직무분야 기술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정한다)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3.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4.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단장과 단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의 평가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⑦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차례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중앙본부장 또는 시 지역본부장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가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

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위험도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임기 및 해촉)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제7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검단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단장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위험도 평가 실시 전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구두(口頭)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단장은 사전에 계획된 위험도 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현장에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대책본부 보고 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 중요시설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에 보고 후 “1단계 위험도 평가”를 생략하고 “2단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위험”, “추가점검 예정”, “사용가능”으로, “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는 “위험”, “사용 시 유의”, “사용가능”인 단계별 3등급으로 구분하며, 위험도 평가 이후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및 안내하거나 표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가 “추가점검 예정”인 건축물에 한정하여 기존 표지는 제거 후, 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4.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점검 예정 표지

⑦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추가점검 예정 등급인 경우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결과보고)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검단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제10조(지원 요청 등)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위하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검단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안전 및 피해보상) ①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검단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경비지급)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는 그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험도 평가단(평가반을 포함한다)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단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제5조제6항 관련)

회원번호		신 청 일	
------	--	-------	--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남 · 여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제5조제6항 관련)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사 진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하거나 습득하신 분께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 평가일시 :
- ☐ 위험요소 : 구조체(000,000), 낙하물(000, 000)
- ☐ 점검의견 : 000 주의 필요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120mm×90mm(빨강)

[별지 제4호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사용 시 유의

이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 시 유의바람.

- ☐ 평가일시 :
- ☐ 주의사항 : 000 주의 필요
- ☐ 점검의견 : 000 조치 시 사용가능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120mm×90mm(노랑)

[별지 제5호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사용 가능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 평가일시 :
- ☐ 평가의견 : 000 조치 필요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120mm×90mm(초록)

[별지 제6호서식]

위험도 평가 결과

추가점검 예정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 시 유의바람.

☐ 평가일시 :

☐ 평가의견 : 000 주의 필요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이며,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120mm×90mm(주황)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9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

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 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 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임명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

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임명)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임명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단·실·관·과·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실·관·과·소가 없을 경우 안전총괄부서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 ③ 재난현장에 현장대응반을 즉각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지역의 관할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 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제17조(수습·복구체계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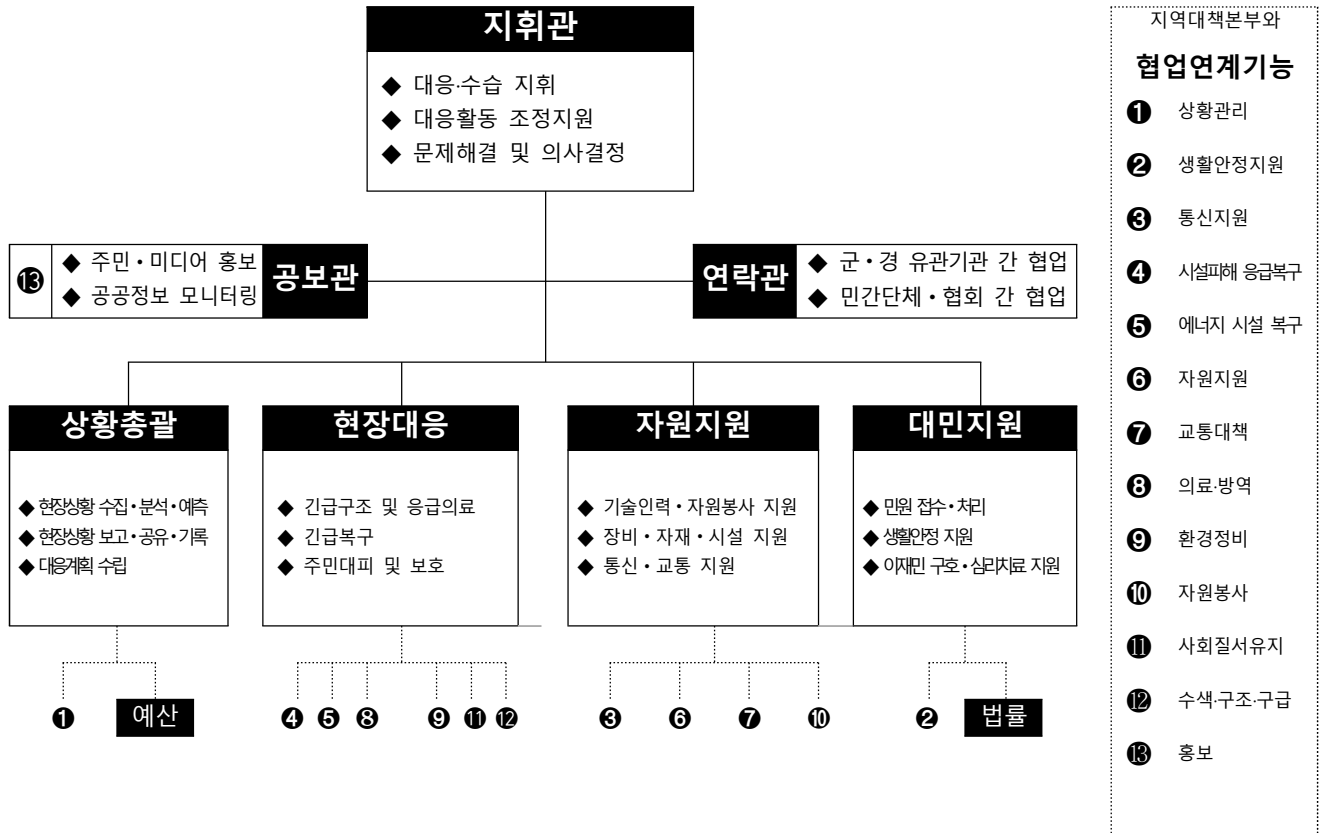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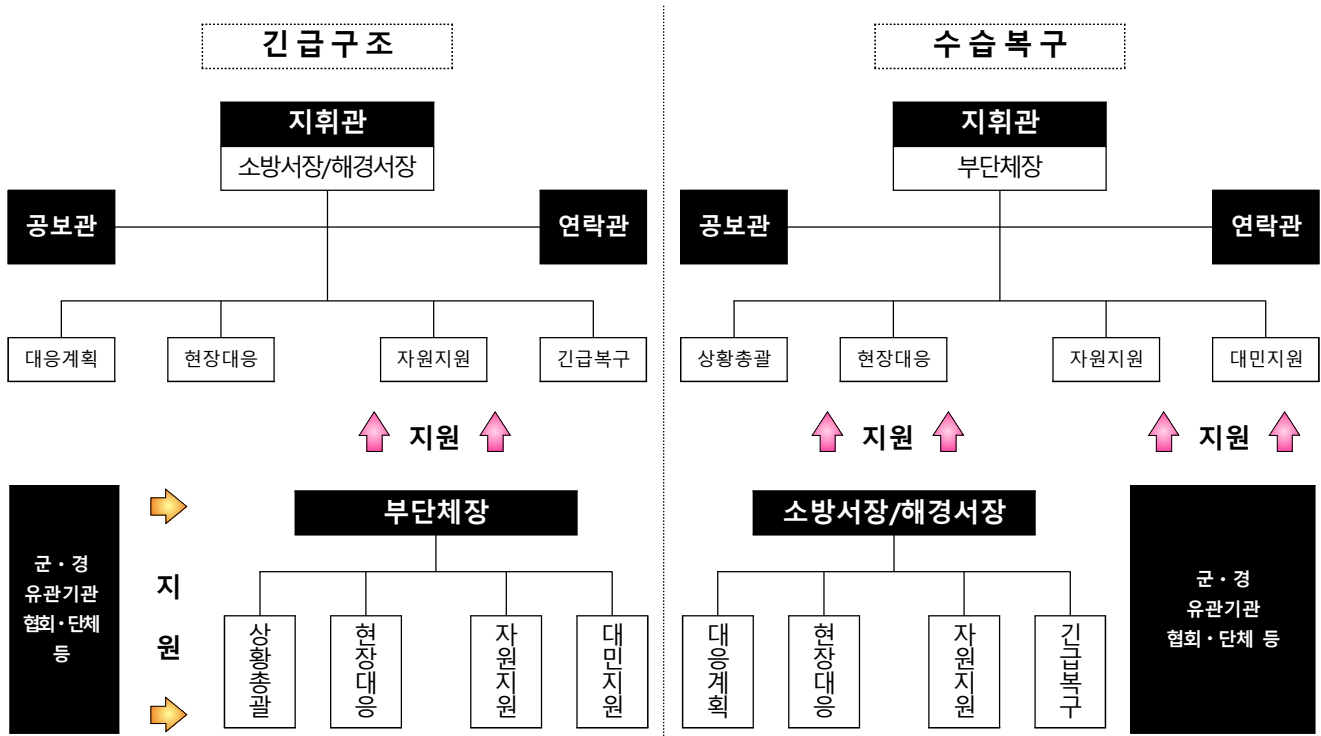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 합 지 원 본 부 장 (지 휘 관)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 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 보고
현 장 대 응 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 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 긴급통신 지원 • 현장대응 자원 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 지원
대 민 지 원 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 지원 • 장례 지원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9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재난 안전 및 성인지 감수성 내용을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를 원하는 경우
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소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9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자연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 . 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현지 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 대상사업명 :

1. 총괄의견
2. 세부검토의견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검 토 자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별지제2호서식]

○○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

○ 대상사업명 :

1. 총괄의견
2. 분야별 검토의견 ○ 토질·지반분야 ○ 수리·수문분야 ○ 기타분야
3. 기타의견

상기와 같이 ○○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검 토 자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인천광역시 검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9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고 투명한 난연 두건을 통한 안면부 보호와 시야확보가 용이하게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 2. 사회복지시설
- 3. 의료기관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①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

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을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9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주택법」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3조 등 관련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기구와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놀이기구를 포함한 놀이기구에 대하여 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놀이기구에서 흡연행위 방지
3. 어린이놀이기구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4. 어린이놀이기구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
5. 어린이놀이기구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놀이기구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
7.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8. 어린이놀이기구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기구의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

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민간시설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지적된 사항을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범위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① 안전총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놀이터: 공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주택 관련 업무 담당 부서
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가정보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
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가정보육 관련 업무 담당 부서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경제 관련 업무 담당 부서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 관련 업무 담당 부서

7.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 관련 업무 담당 부서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기구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9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결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충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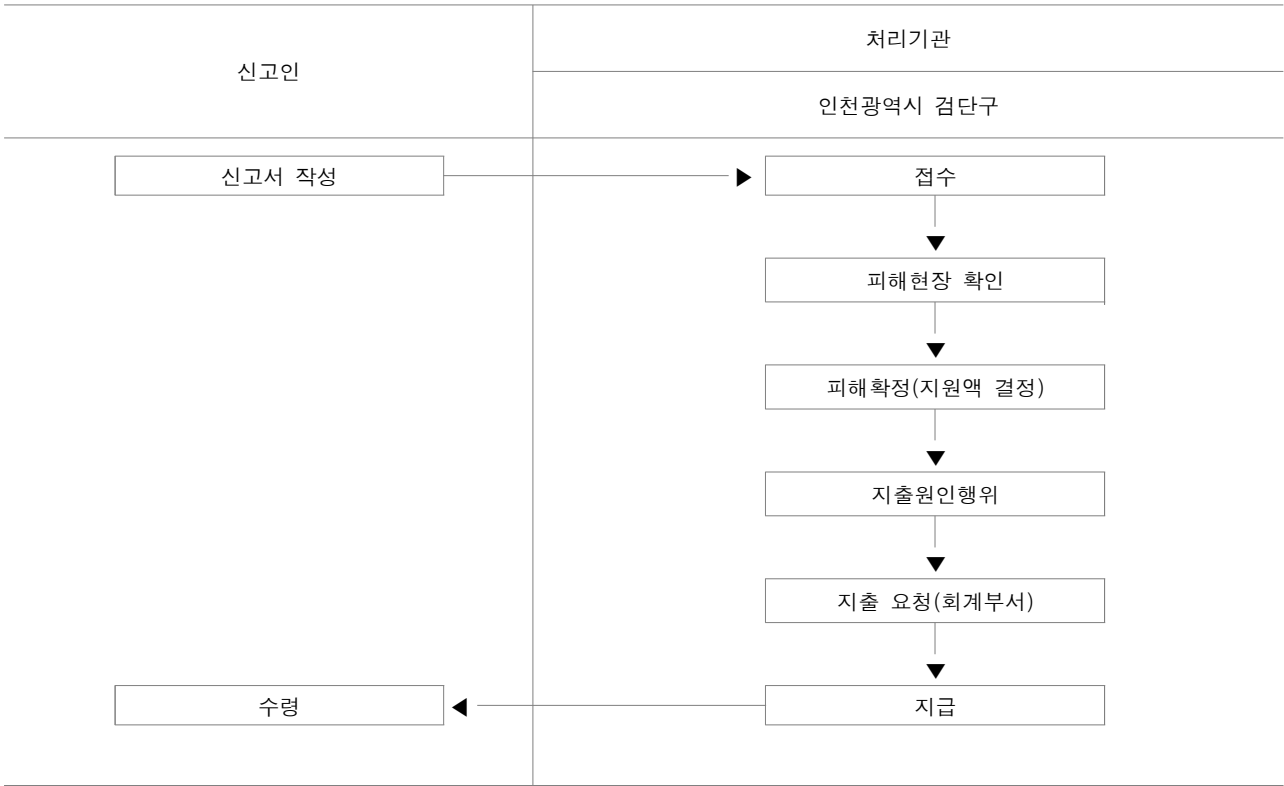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9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재정지원 등)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9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

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 1]

침수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관리과, T. 000-0000)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침수위선(적색) → 침수흔적(청색 삼각형)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 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침수위선(빨강) 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 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 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 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 ○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 (예; ▶ 태풍루사, 2002)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 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15조에 의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문의(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난안전관리과 T. 000-0000)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안내판 규격: 가로 1.2m 세로 1m 내외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 서 안내판 하단까지 2m이상 ○색상: 안내판(어두운 노랑), 글씨(검정),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 기둥은 노랑색 -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 작할 것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 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 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9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검단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라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29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

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0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사.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
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
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0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안전순찰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화재위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순찰단”이란 화재위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화재위험 밀집지역”이란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화재위험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4.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순찰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자율방재단원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순찰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역할) 안전순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
2.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재예방 캠페인 진행
3.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기취급 주의사항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순찰단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순찰단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순찰단원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순찰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화재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순찰단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0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로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검단구 관할업무 중 환경법위반행위로서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

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대기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말한다.

제3조(신고방법)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인”)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단기근로자 등 포함)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익명·가명 또는 거짓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기타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8. 법원에 쟁송(爭訟)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통보일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에 해당되는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처리결과에의 통지) 구청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3.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 최저 3만원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포상금 심사내용

포상금 지급의뢰기관		지급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3. 포상금 결정내용

포상금액	
결정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0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

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인천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7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인천검단구 관할 경찰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 나. 인천검단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
 -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 마.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된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

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중 2분의 1 이상 또는 참석위원 5명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0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

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2장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①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인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수질·토양·해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구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이송·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

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민간단체·언론 등의 역할) ① 교육행정기관·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구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사업자, 구민 등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고려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정한 지역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2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자문협의회 구성) ① 구는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구의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자문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의 지역현안 및 분쟁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 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제20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따를 수 있다.

제23조(환경교육·홍보) 구는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구민환경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5장 환경보전에 관한 협력

제24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0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부상 또는 폐사 방지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조류 충돌 방지필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의 필름 또는 시트지를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s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저감대책 실시)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노력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뛰어난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나 필름, 데칼의 부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0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사전 안내 및 주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하수도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진동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저녁 시간대에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3.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주민의 정신건강과 쾌적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

기업의 방z시설 자금용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0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 ①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의 해체·제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

집·운반·보관·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슬레이트 해체·제거기준(제10조 제1항)

1.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참여한 자는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복등에 묻은 석면,분진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폴리에틸렌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사람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장소에 임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2]

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제10조 제2항)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폐슬레이트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배출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가목'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보관·처리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0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과 예산투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자문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현황, 위반 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추진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배출사업장 인·허가 시 고려) ①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구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제7조(협의회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주민대표, 관련전문가,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환경단체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0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갖추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등의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방안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 전문가, 구민 등을 대

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홍보를 위한 홍보물, 기념품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및 표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1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의 구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구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가 실시하는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검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검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검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위원

가. 인천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1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① 구

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구민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3조(기후위기 대응사업)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1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경보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비상저감조치가 예보·발령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1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설 설치
2.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4. 다중이용시설의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설치
5.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1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구청장은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 확산)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1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협조)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1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사

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제품 등과 같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로서 따로 구분하여 소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8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8. “적환장”이란 공중용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이적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제외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지역의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환장 등에 이용·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실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이적(移積)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4조의 인천광역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4조제

1항의 해당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 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고시로 정하며, 환경부령으로 고시한 수수료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과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가정사업계 폐기물은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20:00부터 24:00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구에 수시로 배출한다. 다만, 50리터 이상 일반용 봉투와 가정사업계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무게 이하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가. 일반용봉투 50리터: 13킬로그램

나. 가정사업계용봉투 60리터: 15킬로그램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가정사업계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 후 배출일시, 배출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전산망(이하 “구 지정 전산망”이라 한다)을 통한 신고필증을 배출자가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 시에는 인증번호의 기재를 통해서도 신고필증의 부착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3의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7.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시간·배출용기·

품목별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시설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제11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에게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제거조치
2.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4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만료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는 가연성봉투, 불연성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색상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민요구 또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 시에는 봉투 또는 봉투인쇄 글씨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일반용 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연성봉투: 유백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

나. 불연성봉투: 옅은 녹색으로 하며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

다. 재사용종량제봉투: 유백색으로 하며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생활쓰레기 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

2. 가정사업계용봉투: 황색으로 하며, 일반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담는 봉투

3. 공공용봉투: 옅은 청색으로 하며 도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담는 봉투

③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④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탄산칼슘이나 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괴성수지는 생분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가내수공업등 소량의 폐기물 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는 봉투 앞면에 별표 5에서 정한 예시에 따라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 구의 문

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멍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 업체 연락처 그 밖의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5조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의1부터 별표 6의5까지로 하고,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제작규격은 별표 7과 같다. 단, 자동집하시설에 배출되는 쓰레기봉투는 인식 스티커를 추가 부착하여 제작한다.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봉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에 광고 등을 게재하여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이하 이 조에서 "쓰레기봉투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경우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중개사업자에게 대금결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

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등의 공급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정비를 위하여 청소의 날 운영 및 가로변 청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용봉투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도로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민 필요에 따라 직접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폐소형 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필증의 구입 시에는 수수료를 1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 수수료는 별표 9에 따른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9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톤 1톤 이상인 기계식상차용 물온박스 및 컨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 쓰레기통"이라 한다)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로써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 제18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따른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1인당 30ℓ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봉투구입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의 감면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봉투판매소 또는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처리스티커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또한, 구로 전입하는 가구에 한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인증스티커를 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쓰레기청결 포상금지급) 구청장은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

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50퍼센트 이내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신고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이 신청된 경우 및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 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영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4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 폐기물 수수료(제2조, 제18조 관련)

품목	규격	수수료(원)
가스오븐레인지	1m 미만	2,000
	1m 이상	4,000
가스히터	모든규격	5,000
거울	반신거울(소)(1m 미만)	2,000
	반신거울(대)(1m 이상)	5,000
고무통	대	5,000
골프가방	모든규격	5,000
기타(악기)	모든규격	3,000
난로	석유	4,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다용도 수납장	전자렌지, 쌀통용	4,000
돗자리	모든규격	5,000
	마작대자리(2인이상)	10,000
레인지후드	모든규격	2,000
마네킹	반신용(머리 포함)	3,000
	전신용	5,000
문갑(거실장)	모든규격	6,000
	돌문갑	10,000
	유리(부착)문갑	10,000
문짝	목재	4,000
	철재	5,000
문틀	소(높이 1.6m 미만)	3,000
	대(높이 1.6m 이상)	5,000
물탱크(FRP 제외)	2.5톤 미만	30,000
	2.5톤 이상	50,000
바둑판	소(얇은 판)	1,000
	대(두꺼운 판)	2,000
밥상	다과상	2,000
	소(1.2m 미만), 4인용 미만	3,000
	대(1.2m 이상), 4인용 이상	4,000
방충망	소(창문)	3,000
	대(문)	4,000
변기	모든규격	5,000
병풍	모든규격	5,000
보드	모든규격	3,000
부츠	모든규격	3,000
블라인드	쪽당	5,000
빨래건조대, 행거(옷걸이)	모든규격	3,000
빨래판	모든규격	2,000
사무용칸막이(파티션)	모든규격	5,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서랍장	5단 미만	6,000
	5단 이상(3단양수 포함)	8,000
	미용실, 금은방용	10,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소파	유아용	3,000
	소파테이블	3,000
	보조소파(스툴)	5,000
	1인용(개당)	5,000
	2인용(개당)	6,000
	3인용(개당)	10,000
	4인용(분리불가)	11,000
	4인용(2인용 두개)	12,000
	카우치	10,000
소화기	3.3kg 이하	3,000
	10kg 이하	5,000
	20kg 이하	7,000
수도호스	10미터 당	1,000
수족관(어항)	소(1m이하)	3,000
	중(1.5m이하)	5,000
	대(1.5m초과)	8,000
스탠드벽시계	모든규격	5,000
스키	모든규격	3,000
식탁	6인용 미만(의자 별도)	6,000
	6인용 이상(의자 별도)	7,000
	식탁(돌, 대리석)	10,000
	아일랜드(나무)	10,000
	아일랜드(대리석)	15,000
신발장	소(높이 1.5m 미만)	3,000
	대(높이 1.5m 이상)	6,000
실내운동기구	자전거(플라스틱)	5,000
	스피닝 자전거(금속류)	10,000
싱크대	소(1m 미만)	4,000
	대(1m 이상)	6,000
	상부장(플랜지,후드)	5,000
실링팬(전등)	모든규격	5,000
아이스박스	소(길이 50cm 미만)	2,000
	중(길이 1m 미만)	3,000
	대(길이 1m 이상)	5,000
안내카운터(데스크)	중(가로 1.5m 미만)	8,000
	대(가로 1.5m 이상)	10,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10,000
액자	소(대각선 0.5m 미만)	2,000
	중(대각선 1m 미만)	3,000
	대(대각선 1m 이상)	5,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여행용가방	소(기내용)	3,000
	대(화물용)	5,000
오르간	모든규격	6,000
옥돌자석매트	모든규격	11,000
온수매트	1인용	9,000
	2인용	10,000
욕조	모든규격	10,000
우산	모든규격	1,000
유리(쪽당)	식탁 및 책상유리	3,000
	대(120cm이상)	5,000
	강화유리(샤워부스 칸막이 등)	10,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3,000
유아용 전동차	모든규격	5,000
유아용 카시트	모든규격	4,000
의자	모든규격	4,000
자전거	자전거(유아용)	3,000
	자전거(어린이)	4,000
	자전거(일반)	5,000
장롱(1쪽당)	프레임(틀)	5,000
	너비 90cm 미만	8,000
	너비 90cm 이상 ~ 120cm 미만	10,000
	너비 120cm 이상	11,000
장식장,진열장	소(길이 60cm 미만)	4,000
	중(길이 90cm 미만)	6,000
	대(길이 90cm 이상)	8,000
장판	5m 미만	4,000
	5m 이상	5,000
재봉틀	소	3,000
	대	5,000
전기장판	모든규격	6,000
창문	모든규격	3,000
책상	상판	3,000
	편수(외서랍, 무서랍)	6,000
	양수(양서랍)	7,000
	h형책상(상판,책장,서랍 포함)	10,000
	사무용	10,000
책장(책꽂이)	3단미만	5,000
	3단이상	6,000
천막	가정용	6,000
침대(매트리스)	유아용 침대	3,000
	1인용	8,000
	2인용	9,000
침대매트판	플라스틱1개당	2,000
	나무1개당	5,000

품목	규격	수수료(원)
침대머리	모든규격	3,000
침대틀	1인용	3,000
	2인용(권사이즈 포함)	4,000
	유아용 침대	5,000
	2층침대틀	10,000
	돌침대(돌포함)	12,000
	모텔용	12,000
카펫	소(길이1.5m 미만)	5,000
	중(길이2.5m 미만)	7,000
	대(길이2.5m 이상)	12,000
칼라박스	모든규격	2,000
캐비닛	모든규격	5,000
고양이 타워	소(높이 1.5m 미만)	5,000
	대(높이 1.5m 이상)	10,000
타이어	600mm 이상	5,000
	1,100mm 이상	12,000
탁구대	모든규격	15,000
탁자	10인용 미만	5,000
	10인용 이상	9,000
테니스라켓	개당	1,000
텐트	가정용	2,000
팔레트(나무)	모든규격	5,000
폴더매트	3.3㎡(1평)당	8,000
피아노	전자피아노 소형	6,000
	일반(업라이트), 전자피아노	11,000
	대형(그랜드)	12,000
항아리(화분)	소(40cm 미만)	3,000
	중(70cm 미만)	4,000
	대(70cm 이상)	5,000
협탁(서랍없는)	모든규격	2,000
화장대	가정용	6,000
	업소용	10,000
화환		3,000
환풍기	가정용	2,000
	업소용	3,000
휠체어	모든규격	2,000

※ 상기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하며,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길이는 긴 면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제2조 관련)

연번	품 명	규 격	연번	품 명	규 격
1	가 습 기	모든 규격	17	전 화 기	모든 규격
2	오디오셋트	높이 1m미만	18	전기밥솥	모든 규격
3	카세트라디오	모든 규격	19	보온밥통(솥)	모든 규격
4	다 리 미	모든 규격	20	녹즙(믹서)기	모든 규격
5	선 풍 기	모든 규격	21	토스터기	모든 규격
6	탈 수 기	모든 규격	22	<삭 제>	<삭 제>
7	공기청정기	높이 1m미만	23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모든 규격
8	청 소 기	모든 규격	24	컴퓨터오락기	모든 규격
9	정 수 기	높이 1m미만	25	노트북컴퓨터	모든 규격
10	전자렌지	모든 규격	26	모 템	모든 규격
11	<u>전기오븐렌지</u>	높이 1m미만	27	TM 캐 너	모든 규격
12	헤어드라이기	모든 규격	28	프린터기	모든 규격
13	에어컨실외기	모든 규격	29	복 합 기	모든 규격
14	<삭 제>	<삭 제>	30	팩시밀리	모든 규격
15	전기히터	모든 규격	31	시계 (전기 및 건전지 사용)	모든 규격
16	VTR/DVD	모든 규격			

[별표 3-1]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9조 관련)**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 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폴리에틸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 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 ·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 보행기, CD · 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 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 · 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 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배출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아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차.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충전식 포함)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지와 제품이 일체형인 경우 제품 그대로 배출 - 전지가 부풀어 올랐거나 흠집이 났을 경우, (비닐)랩으로 감아 더 이상 외부에서 산소나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배출 - 전선(회로) 등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절연테이프 등을 단자에 붙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행정복지센터,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형광등 분리배출 전용수거함에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종류	통합 배출 요령
통합 전용 용기에 투입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 철캔, 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 제거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 수지류	·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 형광등	-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 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 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거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제품에 내장된 전지는 분리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 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 3-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제10조 관련)**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요구 규격 :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나. 구 조 :

(1) 용기 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 단,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 규격

- 크 기 : 인력 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 품 목 : 종이류(박스류 별도), 병/고철/캔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병, 비닐류 등
최소 5개 품목 이상 수거함을 말한다.

- 기 타 : 종이류, 박스류 수거함 빗물 투입 방지 구조

※ 분리수거함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 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안내 부착

※ 단, 별도 보관장소를 갖추어 내용물을 수시 수거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경우 세대수와 무관하게, 각 품목별 하나의 수거함을 한 세트로 묶어 설치할 수 있다.

3.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가. 요구규격

- 개별수거용기: 2리터, 3리터, 5리터

- 공동수거용기: 60리터, 120리터

- 무선주파수인식(RFID)방식 종량제 기기

나. 구 조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공동수거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2. 보관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수거함)은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폐기물 수거 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보관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보관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다.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종류(제15조 관련)

봉투용량(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종 류
5	26×46.5	일반용봉투(가연성)
	32×41.5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10	33×56.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36×53.5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20	42×69.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45×65.3	일반용봉투(재사용종량제)
30	48×78.5	가정사업계용봉투
50	56×91.5	일반용봉투(가연성, 불연성)
		공공용봉투
60	50×97	가정사업계용봉투
75	65×103.5	공공용봉투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text{가로길이(cm)} / \pi + 5\text{cm}$$

[별표 5]

생분해성수지 함량표시(예)(제16조제2항 관련)

폴리에틸렌(PE)	전 분	지방족폴리에스테르
65%	15±2%	20±2%

[별표 6-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〇〇ℓ, 〇〇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종이류, 나무조각류, 상품포장재 등 가연성(불에 타는)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에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시고,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투입구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〇〇〇-〇〇〇〇)

	표시사항(품질표시)
 인증마크 인증번호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ℓ, ○○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50ℓ에만 표기)

1.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각류, 폐전구, 깨진 그릇 등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이 봉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불연성 쓰레기를 버릴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50ℓ:13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쓰레기는 지정된 배출시간(20:00~24:00)에 배출하십시오.
4.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매립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생활쓰레기는 가정사업계용봉투를 별도로 구입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5.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표시사항(품질표시)
 인증마크 인증번호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별표 6-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가정사업계용 -

※ 배출 시 무게기준 : 60ℓ, 15kg 이하로 배출
(무게기준은 60ℓ에만 표기)

1. 이 봉투는 O O O 또는 O O O에 신고하면 수거합니다.
2. 처리대상 쓰레기(가정에서 발생한 사업계 쓰레기 중 가연성쓰레기): 고무, 가죽류, 섬유류, 폐도배지, 보온재, 폐목재 등
3. 상기 쓰레기를 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경우 또는 무게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60ℓ:15kg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표시사항(품질표시)
 인증마크 인증번호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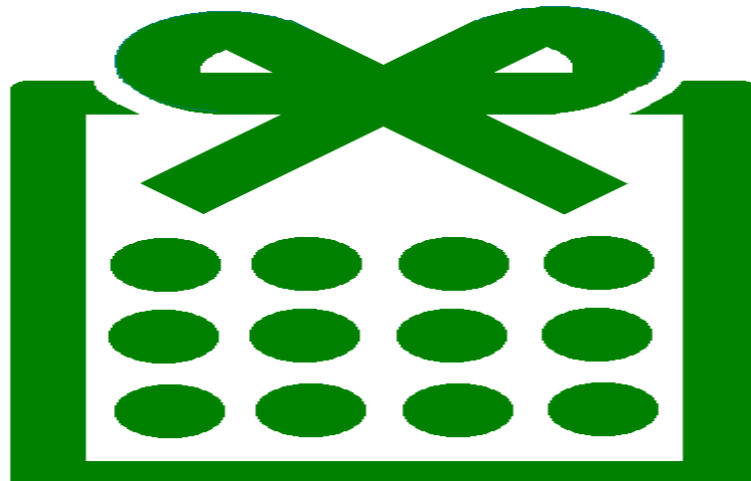
[별표 6-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재사용 종량제봉투(ℓ) -

1. 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봉투(불에 타는 쓰레기용)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2.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등 자원순환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	---

[별표 6-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6조제4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공공용 쓰레기봉투(ℓ)

1.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원순환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문의처: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인증마크 인증번호	표시사항(품질표시) 품 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종류/용도 : 용 량 : L 치 수 : (두께*너비*높이) 제 조 자 : 업체명(주소 및 연락처) (공 급 자)
--	--

[별표 7]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모형(제16조제4항 관련)

4cm	구 문 장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배출자보관용)
	바코드인쇄	(₩ 원권)
9.3cm	절 취 선	
	(₩ 원권) (부 착 용)	
4.7cm	■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 전에 반드시 처리업체에 배출위치, 배출장소, 수거일시 등을 약속한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 수거일시: 동별 수거일정 표기 ○ 처리업체: 업 체 명 (☎ -) ※ 본 부착용 스티커는 훼손되거나 미부착 시 수거되지 않습니다. 바코드인쇄 기타 문의사항: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검단구청 담당부서명 (☎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절 취 선	
	구 문 장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처리업체보관용)
	바코드인쇄	(₩ 원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0cm	

※ 종류는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4종으로 1,000원권은 파랑색 바탕에 흰글씨, 3,000원권은 초록색 바탕에 흰글씨, 5,000원권은 주황색 바탕에 흰글씨, 10,000원권은 붉은색 바탕에 흰글씨로 한다.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제17조제2항 관련)**쓰레기봉투 판매소**

-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고딕으로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9]

일반용봉투가격의 산정기준(제18조 관련)

$$\text{봉투가격} = \{ \text{① 봉투단가}(\ell\text{당}) \times \text{③ 봉투규격}(\ell\text{당}) + \text{⑤ 봉투제작비} \} \times \text{② 수수료자립도}(0.45\sim 1) + \text{④ 판매수수료}$$

[주]

㉠

㉡

㉢

① 봉투단가(ℓ당) = 수집·운반·처리비(원) ÷ 연간처리량(톤) ÷ 부피환산계수(2.500)

㉠ 수집·운반·처리비(원) = 전년도 1월~10월 비용 + 11월~12월 예상비용

· 기준년도 : 봉투가격 적용년도(T)의 전년도(T-1)

· 수집·운반·처리비 내역 :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또는 직영비, 매립지 반입료, 적환장, 재활용선별
창고등 각종 대행료, 봉투제작비 등

㉡ 연간 처리량 :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 매립지 반입량 :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

㉢ 부피환산 계수 : 무게단위(톤)를 부피단위(ℓ)로 환산하기 위한 산식

※ 근거 : 환경부 폐정67501-696(94. 9. 8)호 쓰레기종량제시행지침
(93쪽의 폐기물학회보고서 93. 1)

② 수수료 자립도(0.45~1)

④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1- 판매수수료 요율)}

⑤ 봉투제작비 = 폐기물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 판매수수료, 봉투제작비의 소숫점 단위는 원단위로 최종판매가격의 원단위는 10원단위로 반올림 한다.

가정사업계용 봉투가격의 산정기준(제18조 관련)

$$\text{봉투가격} = \text{처리단가/kg} \times \text{봉투규격} \times 0.6 + \text{봉투제작비}$$

[주]

① 처리단가

○ 정부고시단가 : 225원/kg (발열량3,000kcal ~ 5,000kcal)

② 봉투규격 : 가로 × (세로+묶는 부분) × 두께

③ 통상 무단투기된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 시 처리금액의 60% 수준으로 정함

④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가격(제18조 관련)

구분		규격	판매가격		
			계	판매수수료	판매소 납품가격
봉투	일반용봉투 (가연성, 불연성)	5 ℓ	160원	12원	148원
		10 ℓ	310원	25원	285원
		20 ℓ	620원	49원	571원
		50 ℓ	1,540원	123원	1,417원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	5 ℓ	160원	12원	148원
		10 ℓ	310원	25원	285원
		20 ℓ	620원	49원	571원
	가정사업계용 봉투	30 ℓ	1,870원	150원	1,720원
		60 ℓ	3,710원	290원	3,420원
스티커	대형폐기물처리용 스티커	1000원권	1,000원	79원	921원
		3000원권	3,000원	237원	2,763원
		5000원권	5,000원	395원	4,605원
		10000원권	10,000원	790원	9,210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1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 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의 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주민만족도 조사에 있어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구성은 평가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폐기물수

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영업구역 축소·조정, 계약참여 배제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업체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환경국장과 환경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내
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2명 이내

③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

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1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

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말한다.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를 따른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1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쓰담달리기”라 함은 외국어 ‘플로깅’을 대체하는 우리말로써,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담달리기 참여자”라 함은 쓰담달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

담당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쓰담달리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참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쓰담달리기 참여자에 대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1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 류
3. 캔 류(주석·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4조(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인 순환자원 회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자원 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무게 측정 및 관리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대장 관리

3. 주민참여 홍보 등 관련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1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마.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 유인을 제공·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 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 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 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 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 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업소 지원)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홍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
 4. 무상대여한 다회용품 회수 및 세척에 관한 사업
 5. 다회용품 이용자에 대한 보상 마일리지, 캐시백 등 제공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

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2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을 안정하게 이바지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자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

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2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

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

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부피(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및 충전카드 인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무게에 의한 경우 킬로그램당 70원, 부피에 의한 경우 리터당 60원으로 하고, 용량별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2과 같다.

-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⑥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며, 김장철 등 일시적 다량 배출시기에 사용하는 전용봉투를 구분하여 제작·보급토록 하고, 무단투기 및 일시적 음식물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용 음식물봉투(분홍색)」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 무선주파수인식(RFID)방식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세척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

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

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9조제1항 관련)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가. 식품 쓰레기

나. 조리 전, 후의 음식물찌꺼기

2.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구 분	품 목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고추대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및 견과류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멍게 껍데기 - 생선뼈
곡류	- 보리, 쌀, 콩 등의 왕겨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알류	- 계란, 오리알, 메추리 알 등의 껍데기
기타	- 1회용 티백을 포함한 각종 차류의 찌꺼기 - 한약재 및 과일즙 찌꺼기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가.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나.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다. 통무, 통호박, 통배추는 원형 그대로 버릴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나, 잘게 부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

라. 수박, 망고 등 부피가 큰 과일은 잘게 썰어서 배출

마. 비닐, 병뚜껑,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과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고 포장되어 있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2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검단구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검단구의 출자·출연 기관

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주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법제상·행정상 조치)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2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관리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학교 주변 통학로 50미터 이내 및 공원·녹지지역 내
2. 교차로(교차점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 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3.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4. 의류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5.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류수거함 철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2.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

3.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4. 제9조제5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자 외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2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

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7.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가 초과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식품위생관련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
4.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용자대상)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대상은 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6조(용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용자 대출업소로서 용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④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용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⑤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금융기관 약정을 따른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자지원사항 보고 등) ① 구금고는 용자지원상황,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금고 또는 기금을 용자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금의 사용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2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

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6. “위생직능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단체(이하 “위생업소”라 한다)로 한다.

1. 우수업소

2. 좋은 식단 실천업소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식품화를 위한 지원사업

5.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위생직능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용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생업소 지원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지원 관리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 위생단체의 임직원
3. 위생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

- 1972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2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 및 “점포”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인” 및 “점포”를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구청장이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4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 제외)를 이루어야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

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 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된 검단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이 조례 따라 지정된 음식문화거리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2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2.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 동차營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營業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營業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營業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구청장은 검단구 행정재산을 음식 판매자동차 營業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營業장소, 營業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營業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營業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

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항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검단구 _____ (_____ m²)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사용기간 . . . ~ . .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우대사항 (해당 시체크 및 서류 제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8조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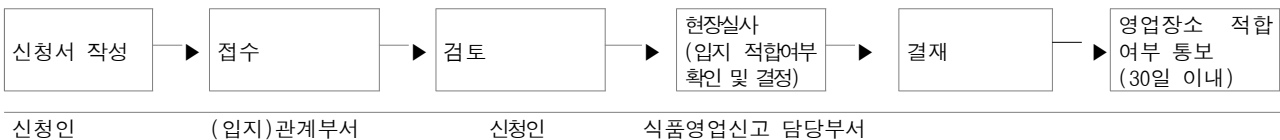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 신청 장소 계약서 및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

유의사항

1. 해당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장소의 상황 및 주변상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관계 법령,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리절차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2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영업장과 연결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건물 내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대상지역”이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등)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제한) ① 옥외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2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주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기관·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최근 2년 이내에 처리 지원을 받은 지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인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식재 등을 1개월 이내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

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 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2조제6의5에 따른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에게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 기준 (제7조 관련)

도복/부리짐 가능성	대상물체 ¹⁾ 의 피해 가능성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발생임박	보통	보통	높음	매우높음
발생농후	낮음	보통	보통	높음
발생가능	낮음	낮음	보통	보통
발생불가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지원대상 (위험등급 수준)	처리 내용
낮음(경)	지원 불가대상 (소유자의 모니터링 권고)
보통(중)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높음(심)	처리 대상으로 처리 시기 유동적으로 적용 가능
매우높음(극심)	즉시 처리 대상

○ 대상물체의 피해 가능성 판단 세부 기준

[위험대상구역 : 위험목을 중심으로 수고의 1.5배 반경 내로 한다.]

- 매우낮음 : 피해대상 물체가 없는 한적한 지역으로 통행량도 거의 없음.
- 낮 음 : 제한적 도로, 도로로 넘어질 우려가 없어 피해 가능성 낮음.
- 중 간 : 도복 수목, 가지 일부가 대상물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점유율이 빈번한 지역
- 높 음 : 도복 수목, 가지 대부분이 대상물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완전히 피해에 대상물체가 노출되어 있으며, 도로나 인도에 위치해 2차 피해 우려 지역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연구자료 제844호, 제2020년 발행) “생활권 수목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6.위험등급 구분” 준용

1) 대상물체 : 이동성(보행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이동가능성(조형물, 게시판, 야외 탁자, 주차차량, 놀이터 시설 등), 고정성(건물, 공익시설, 구조물 등)으로 분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	주 소					
	소 유 자		연 락 처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신 청 사 유						
대 상 수 목	연 번	나 무 종 류	나무높이(m)	가슴높이지름(cm)	지 원 내 용	비 고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 구 사 항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임 대상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붙임서식]

대상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위 치 도	
전경 사진	근경 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수 목 위 치 :
- 수종 및 수량 :
- 정 비 사 유 :
- 정 비 내 용 :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_____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정비 (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연 락 처 :

붙 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붙임서식]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명	주소(동 호수 명기)	서명(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 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3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정원의 조성·진흥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구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

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7.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검단구 내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8조(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정원 중 검단구의 상징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

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정원 입장료 및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9조(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구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구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정원사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구민정원사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있어 구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구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검단구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구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구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원문화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원예, 화훼, 조경, 경관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구민정원사

4.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3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④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업무 담당을 간사로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와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등을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해촉 될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 (1) 소 재 지 :
- (2) 지정 면적 :
- (3) 피해 유형 :
- (4) 위험 등급 :
- (5)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심의 항목	심의결과		
	적정	보완	부적정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적정성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4. 심의위원 의견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3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거수등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거수등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거수등”이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 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구청장이 지정한 노거수등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노거수등의 지정) ① 구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거수등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노거수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목적에 따라 노거수등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노거수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등의 해제)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노거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노거수등이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

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노거수등의 표지) 구청장은 지정된 노거수등이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등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노거수등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노거수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노거수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거수등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노거수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거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등의 점검) 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노거수등의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거수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거수등 관리대장

지정번호		0000-00		지 정 년 월일				수목명			
본 수				과 명				학 명			
소재지 및 위치				지 목				면 적		㎡	
수 령			수고	m		흉 고 나무둘레			수관 직경	m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성명				

지정사유

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

※ 현황사진은 별도첨부

[별지 제2호서식]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대장

년 월 일	구 분	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상황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3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를 말한다.
2.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3. “산불방지단체 등”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

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산불방지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 관내 기업, 산불방지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구청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산불방지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3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

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희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필요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
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정비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
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3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검단구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검단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

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간담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및 지역민 우선고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① 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청장은 지역업체간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청장은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이상
2.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② 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하여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이행상황 점검) 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인력 사용에 관한 사항
4.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환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범 건설인 선정·포상) ① 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 건설업체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높아 지역 건설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3. 지역의 자재, 장비 및 인력 사용량을 높여 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검단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회계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 3인
2. 구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으로써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까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그 밖에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 각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련기관 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3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대"라 함은 자전거주차장·보도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보관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주민자전거"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검단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할지역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에 의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전거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交通安全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대해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전거 주차장 요금표(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구획)

구 분	1회주차시 (1시간당)	1일주차권	월(정기권)
주차요금	200	1,000	15,000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3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도로점용 허가한 도로상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상 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처리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허가 장소 및 면적은 이 처리기준 시행일 기준의 기준에 허가된 장소 및 면적으로 한다.

제4조(점용허가 갱신) ①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한다.

② 점용허가 기간 이후에도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제5조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시 별표 1의 허가조건을 허가증과 함께 발급하여 운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점용허가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제외)
2. 점용허가 갱신 신청을 포기한 경우
3.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경우다.

제6조(점용허가권자의 자격) 수허가자가 사망, 검단구 외 지역으로의 전출, 수허

가자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점용허가권을 양도·양수하려는 자의 자격은 수허가자의 자격 변경일(사망일, 타 지역 전입일, 자격상실일) 현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7조(점용허가권 양도·양수) ① 점용물의 소유권이 검단구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허가자 신분변동으로 점용물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수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고 허가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비속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
2. 양도·양수를 할 때에는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양도·양수 허가를 신청하여 사전허가를(사망은 사후 30일) 받아야 하며, 허가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3. 허가권을 양도한 사람은 우리 구 관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 점용물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점용물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
2. 점용물의 권리나 의무는 양도·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갱신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허가증 등을 갱신 처리 한다.

3. 허가권을 양도한 사람은 우리 구 관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8조(운영자의 행위 금지) ① 운영자는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화공약품, 음란서적·퇴폐서적 및 기구, 불법음반 및 테이프,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2.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훼손할 수 없다.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시설물의 운영을 중지할 수 없다.

5. 시설물 외부에 집기 및 상품 등의 물건을 쌓아두거나 판매할 수 없다.

6. 구청장이 승인하지 않은 옥외광고물(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7. 허가증을 시설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8. 시설물 및 그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9. 구청장의 행정지시사항을 따르고 관계공무원의 확인과 질문에 응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시설물 점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

경관을 위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관리현황을 전자파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연 1회 정기 점검하고, 수시로 불시 점검하여 관계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운영자에게 변경 등 정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3.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스스로 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시설물 철거) 시설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점용허가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 가 조 건

1. 운영자 준수사항

운영자(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는 시설물 운영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도로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다.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없으며, 연간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구청장이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을 위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화공약품, 음란서적·퇴폐서적 및 기구, 불법음반 및 테이프,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

사.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훼손할 수 없다.

아. 구청장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시설물의 운영을 중지할 수 없다.

자. 시설물 외부에 집기 및 상품 등의 물건을 일시 적치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차. 구청장이 승인하지 않은 옥외광고물(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카. 도로점용허가증을 시설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타. 시설물 및 그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파. 구청장의 행정지시사항을 따르고 관계공무원의 확인과 질문에 응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하.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자는 시설물을 자진철거하고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도로점용허가 취소

운영자의 다음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

위반행위	비고
·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 ·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변경 ·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 점용 ·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미납부 · 구청장의 시설물 위치 조정 및 교체 요구 거부	1회 위반 시 허가 취소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점용장소:

☐ 점용면적: m^2

위 본인은 귀청으로부터 도로상 영업시설물을 허가받음에 있어 각종 허가조건(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취소, 행정대집행 등의 어떠한 행정처분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현황

관리 번호	운영자				허가현황								허가조건 위반내역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현장사진	도로의 종류	허가 기간	장소		면적(㎡)			위반 행위	적발일 자	시정명 령일자	시정기 한	시정 확인 일자	
								지번	상세위치	가로	세로	면적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3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

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로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 주민 대표를 말한다.

5. “지도·감독”이란 공사 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6.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과 그 산하기관장이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억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와 명예감독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공사착공 전에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 위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감독관은 2개 이상의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으며 공사의 이해관계인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

③ 명예감독관은 주민 불편사항 발견 및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공사를 발견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명예감독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공사의 준공시
2. 명예감독관의 사퇴 표명시

3. 명예감독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4. 명예감독관이 감독관으로서의 이권사업에 관련되었을 때
5.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지도·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부실 사항을 통보받는 경우
2. 공사 감독 중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주민설명회 개최) 구청장은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발주 전에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시공확인) 시공자는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사시공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시공자는 공사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2일 전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실·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장 및 해당동장과 명예감독관은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설계도서 및 계약서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5. 공사 주관 실·과장 및 해당동장은 제3호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표지판의 설치) 구청장은 공사현장에 공사의 시행 및 준공을 안내 하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 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시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사업개요, 공사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공사안내 표지판은 공사준공 시까지, 제2호에 따른 공사준공 표지판은 공사준공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실명제)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명, 준공 일, 시공회사명, 공사감독 공무원 등의 실명을 표기한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3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무단점유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150만원 이하
-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4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및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 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위촉된 위원은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6조제2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및 소관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회, 시의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등의 지급)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으로 위촉(임명)(임기 2년, 20.00.00 ~ 20.00.00)됨을 동의합니다.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근 무 처 :
☐ 직 위 :
☐ 이 메 일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택 :
○ 사무실 :
○ 이동전화 :
☐ 팩 스 :

20 . 00. 00.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 렬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정직
· 공정 · 성실하게 위원회의 자문 · 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반부패 · 청렴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 근 무 처 :☐ 직 위 :☐ 성 명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4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별표2 제1호 및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 분할, 동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관련 시설의 조경과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

물 관련 시설 및 규모는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다.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는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지역이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여야 한다.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지목 상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이용상태가 농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3.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표준설계도서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 등의 설치로 인해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적인 건축 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 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영농계획과 추가적인 건축계획이 부합하여야 한다.
2.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7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 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추가적인 건축 기준)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제7조 관련)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

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의 법적비율에 따른 분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유지분의 분할허가 기준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4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후 잔여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개발사업비”란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이하 “검단1지구 등”이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 ① 체비지 매각 수입금

- ② 징수청산금 및 정산금
- ③ 보조금
- ④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① 사업시행에 따른 지장물건 및 토지 등의 보상비
- ② 이주대책비
- ③ 교부청산금 및 정산금
- ④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정비
- ⑤ 기타 관련 사업비

제5조(경리) 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② 세입, 세출 예산 및 자금관리 등 특별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별회계를 인수한 날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4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이라 한다)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

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4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4. “점유자”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6.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독 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도개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4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단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검단구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검단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검단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축·도시디자인(「인천광역시 검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기획 및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④ 구청장은 검단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검단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검단구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검단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검단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검단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3조(검단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

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검단구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검단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검단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구청장은 검단구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4조(검단구 총괄건축가 및 검단구 공공건축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검단구 총괄건축가 및 검단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4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환경의 살기 좋은 도시를 첨단기술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도시의 비전인 스마트에코시티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스마트에코시티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생태계 보전과 도시의 공간환경에 활용하며 주민이 도시정책 의사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2.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마을과 도시의 공간환경으로 통합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에코도시
3. 첨단기술과 생태가 도시의 공간환경에 융합하여 품격 있는 건축과 도시 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융합도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에코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과 사회, 지역경제가 균형발전하며 현세대와 차세대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기술,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스마트에코시티 비전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에코시티의 핵심가치
2. 스마트에코시티의 정책수행의 기본원칙
3. 단계별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4. 스마트에코시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비전 확산을 위해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구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업무 담당국장, 환경업무 담당국장, 스마트에코시티업무 담당 국장, 스마트에코시티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총괄건축가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 학계, 시민단체, 건축, 도시계획, 경제, 조경, 환경, 문화,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주민 등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에코시티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스마트에코시티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구청장이 소집된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에코시티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주민은 스마트에코시티 구현과 도시문제해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도시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천광역시 검단구 스마트에코시티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제5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의 보고(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민협의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④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활동한다.

1. 일상생활에서의 도시문제 의제화
2. 의제화된 도시문제 해결방안 모색
3. 기타 스마트에코시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의제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4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

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적가치”란 사회, 환경, 경제, 복지, 문화, 교통 등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윤리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회, 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계획
5. 빈집활용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상 빈집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하는 방법

제9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

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
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사무·상업공간의 용도나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
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
세의 80% 이하 범위 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
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문화예술인 주거·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지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
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5.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
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기숙사 등의 공유
주택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정비를 끝낸 빈집은 제1항에 따른 활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이용자가 제10조에 따른 빈집의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4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내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의 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보수
3. 경로당 보수
4. 상·하수도 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5. 자동화재탐지설비·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
6.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등)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8.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처리시설 및 친환경 시설의 설치·개선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11.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제8조제2항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
13.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14.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등, 무인택배함 등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수

15.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자체 운영주체의 회의 공개를 위한 방송장비 설치

1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준공(사용검사, 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보조금 지원은 준공일부터 20년 이상 된 단지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준공일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도 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보조재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 중 일반회계로 충당한다.

② 보조금 지원의 수혜대상은 지원사업 완료 후 10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원의 신청 및 방법)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

택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 및 위치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계획서(설계 내역서 및 사업자 선정방법 포함)
4.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포함) 및 산출근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유자의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여부와 보조규모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대상 및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지원비율·금액·방법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토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예산, 건설, 재난, 건축, 주택관리, 도시개발관련 부서장과, 건축·토목·조경·주택관리·범죄예방 관계 전문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신청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공동주택명칭			
공동주택주소	(전화)		
규 모 (동/세대수)		준 공 일	
신청자 주소 (상세 주소)		생년월일	. . .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지 원 요 청 사 업 비		자 체 부 담 사 업 비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장)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동주택) 또는 입주자 동의서(그 외 공동주택) 2. 사업계획서 3. 견적서 3부(부가가치세 포함)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4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를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전기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지 명								
	소 재 지								
	관리사무소 명칭								
	전 화 번 호								
내역	사 용 기 간								
	구 분	보안등 (가로등)	산업용		승강기	복도 및 계단 등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기타 공동시설
			저수조	정화조					
	개소수								
	전력량								
	신청금액								
	신청금액 합 계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 ○ 소장 직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동전기요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2.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210mm×297mm(백상지 150g/㎡)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5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

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충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충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충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충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충간소음 예방교육
5. 그 밖에 공동주택 충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충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5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주택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주택관리 업무 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공동주택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별지 제2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의 결 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위 원 장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 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00:00)			
출석장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5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경비, 미화, 기타 용역근로자 등 각종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 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기본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더 나은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법 제65조제1항 및 법 제65조의2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

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4.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교육 유인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관리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5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2. 관리주체
3. 관리사무소장
4.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구성원 등

제3조(감사의 요청 등)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개인에 대한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기간 중 다른 공동주택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2. 관리주체 직원 근무현황
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5. 계약 관련 현황
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필요성
2. 감사기간 및 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관련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 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단지에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 ① 구청장은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요청인 연명부(공동주택 감사 동의)

□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별지 제3호서식]

감사결과보고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	---	----	--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5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 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및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례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예산업무담당부서 국장
2. 분임징수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3. 재무관: 예산업무담당부서 국장
4. 분임재무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5. 채권관리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6. 채무관리관: 지하수업무담당부서 과장
7. 지출원: 경리담당
8.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담당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자
10.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6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8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2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을 100퍼센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감면율 100퍼센트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22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2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

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24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5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인천지방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

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0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에 따라 금○○○○○○○○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체납액				
위 반 사 항				
과태료체납액		금 원 (₩)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2140 -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와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과태료 수납부

[illegible]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5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안심거울(반사경, 미러시트를 설치해 뒷사람의 얼굴 및 행동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도록 한 시설)

라. 그 외 CCTV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한 사용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으로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구청장 및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화장실로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인 경우 안전관리시설 중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

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및 별표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 및 이용요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7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50	70	10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30	40	5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관리책임 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년 도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 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설치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모		부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5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금류”란 닭, 오리, 메추리를 말한다.
4.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의 대지경계 또는 건물 외벽으

로부터 반경이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주거 지역을 말한다.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최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까지 직선거리로서 2,000m 이내 지역

2.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농·축산물 도매시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가금류 제외), 방범용 개

6.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사(예정부지)의 부지경계를 시작점으로 하여 100m 이내에 인가가 있는 경우 인가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의 가축 사육자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일부 기존 가축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 등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移轉)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4조(제한지역의 변경 및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가축사육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

노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

에 대하여 인력·장비·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처리실적 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5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인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지하 2층을 포함한 그 아래의 층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대행자의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시설에만 별표에 따른 지하층 할증료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한 경우

제6조(처리실적 보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실적 등 그 달의 내역과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용 량	요 금	비 고
분 뇨		10리터당	720원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 본	750리터까지	22,600원	
	추 가	100리터당	2,080원	
	지하층 할증료		8%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5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

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별표2(점용료등 감면기준)의 제6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등 구역 내의 토석,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5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항을 준용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용수 연액 m^3/sec 당 200,000원 나. 농업용수 $0.05\text{m}^3 \sim 0.5\text{m}^3/\text{sec}$ 까지 연액 10,000원, $0.5\text{m}^3/\text{sec}$ 증가 시마다 10,000원 가산

구 분	산 정 기 준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7.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 등이 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점용료등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2. 소하천등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 공사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4.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5.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6.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및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전년대비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5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꽤

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및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구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

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3.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구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⑨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 지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기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사업계획 관련 자료

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와 경관개선사업 중 경관심의를 필요하다고 부서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단,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 m² 이상의 건축물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6.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②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를 따른다.

③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한 개 층 이하로써 연면적 10분의 1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 심의 결과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건축물 규모의 변경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 형태, 색채, 마감재 등의 변경이 전체 입면 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공개공지 및 옥외 조경 등의 외부공간계획의 변경이 전체 외부공간 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6장 경관위원회

제22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를 따른다.

제23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청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3. 사업부서장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

제24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경관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경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영 제2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

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2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

성을 해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하거나 직무태만의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경관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3.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소위원회: 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2.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6조

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분야 이외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따른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따른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관지구의 건축물(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법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2호의 주택 중 3층 이하로서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495㎡ 이하인 주택
- 나. 3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단, 옥외 철타를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

2. 수변경관지구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2호의 주택 중 4층 이하로서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
- 나. 4층 이하로서 연면적 495㎡ 이하인 건축물(단, 옥외 철타를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

3. 시가지경관지구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2호의 주택 중 5층 이하로서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
- 나. 5층 이하로서 연면적 660㎡ 이하인 건축물(단, 옥외 철타를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외)

[별표 2]

경관심의 대상인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2.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건축물
3. 삭제
4.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정면과 측면 및 배면의 입면면적과 옥상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별표 3]

경관심의 대상인 공공건축물(제21조제1항제3호 관련)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구청, 동 주민센터 등을 말한다)
2. 공공문화 및 집회시설(관광, 공연, 전시, 관람 등을 위한 시설)
3. 복지 및 교육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체육시설)
4. 환경관리시설(자원순환시설, 환경미화원대기소, 공중화장실)
5. 그 밖의 시설(발전시설, 주차시설 등 1호부터 4호까지 용도 이외의 공공시설)
6.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개선사업 및 외관디자인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별표 4]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규모(제23조제1항제4호 관련)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단,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1.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10억 원 이상 다음 각목의 사업 또는 시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라. 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5억 원 이상 다음 각목의 사업 또는 시설

가. 특화가로 조성사업

나.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디자인)를 적용한 시설물 설치 사업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6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구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구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 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5. “표준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
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
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7.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제한 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이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한다)
8.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이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 한다)

9.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

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된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
2. 재해·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5. 공공시설물등의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7.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③ 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에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 사업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디자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구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구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

방도시디자인·공공조형물·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국장이 수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 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로 한다.

②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동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심의 대상(제2조 및 제8조 관련)

1. 공공공간

분 류	세부 항목	심의기준
공공공간	공원, 광장(지하광장 포함), 자전거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공공시설물

분 류	세부 항목	심의기준
도로시설물	가로등, 펜스, 불라드,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외부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방음벽,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1억 이상
편의시설물	벤치,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수목보호덮개, 관광안내소, 음수대, 분수대, 가로판매대, 휴지통, 간이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시설물	맨홀덮개, 배전함,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제설함, 소화전, 전화부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공공시각매체

분 류	세부 항목	심의기준
교통관련 시각매체	공공 및 사설안내표지,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 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1억 이상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국가유산 설명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 오염 전광판, 교통 상황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환경연출 시각 매체	벽화·슈퍼그래픽, 공사장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비고: 위 표의 총 사업비는 각종 보상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6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건립 신청) 건립주체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2. 작품성 · 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3. 장소의 적합성 · 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저해요인 여부

②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예술 · 과학기술 등의 진흥 ·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의 출생지 · 묘소 · 활동지역 · 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 · 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4. 규격, 안정성 확보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조형물 건립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내부위원은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및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 등)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의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의와 실행심의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신청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
2. 공공조형물 등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
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관리한다.
- ② 주관부서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옮겨 설치하거나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 공 조 형 물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설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설주체		관리기관	
건설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전면사진 (5 " × 7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6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검단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 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독서실, 자전거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텃밭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및 구역 내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검단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역량 강화 및 검단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2. 도시재생 우수지역 견학
3. 주민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4. 그 밖에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지원금의 정산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 주민협의체 등과의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도시재생사업 시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검단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주민참여사업, 협업사업 발굴·운영 및 사업 시행주체 발굴·운영
 4.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의사전달 및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 및 갈등조정
 5. 활성화지역 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적 조직 창업 및 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 지역문화재단, 지역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8. 현장 발생 문제점, 컨설팅 필요사항 등에 대해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컨설팅
요청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관리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업체 선정,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 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용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용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용자를 받는 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6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
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
범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
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
· 조성하거나,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검
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방범문, 방범창 및 잠금·경보장치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

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방범시설 등 침입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인천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3. 구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4. 특화거리 조성사업
5.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시설물 설치사업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9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 중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10억 원 이상 사업 또는 시설
5. 제7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사업 중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5억 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 조례」 제2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을 위하여 인천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와 관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경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6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수리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정당현수막) ①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 도시경관과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교통·보행안전 우려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안전조치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표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 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용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 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 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 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 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 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 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게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야 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

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

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게시시설 관리와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 수량, 위탁 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

무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16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아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17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점검결과, 공공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 게시판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시작 전년도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2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외수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이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시 조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이외의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5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5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6㎡ 이상 4.0㎡ 이하	65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5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10만원
- 21.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5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6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8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70만원 7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 등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 등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4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구지역	비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6㎡ 이하	4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1개마다로 한다)	5,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 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마다로 한다)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 부에 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 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마다로 한다)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마다로 한다)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디지털디스플레이등을 이 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다. 현수막		
1) 현수막		

- 10m ² 이하	6,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m ² 이하	10,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3) 가로등 현수기(1개)	5,000원	
파. 벽보(50매마다로 한다)	5,000원	
하. 전단(1,000매마다로 한다)	5,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 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 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m^2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m^2 초과 2m^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m^2 초과 3m^2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m^2 초과하는 면적 0.5m^2 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m^2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m^2 초과 5m^2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m^2 초과 10m^2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m^2 초과하는 면적 1m^2 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라) 30장 초과		50천원	60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4) 1년 이상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⑮ 변 경 사 항	⑯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외광고업자 등록번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⑮ 주 소	⑮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의1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제3조제2항 관련)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신고필증(제3조제2항 관련)

전단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 00

. . 까지 00장 배포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 신고번호 : 신고 수리 시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 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날짜 및 신고한 매수는 별도 입력
 - ※ 일련번호 항목은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기간 :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성명

직위(직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 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련 번호	광고물 종류	표시 내용	수량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장소 · 위치	담당 (취급)자	비고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u>생년월일</u>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별지 제16호서식]

공공계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단체명)		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종업원수			사무실 면적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증비서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검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단체명)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위탁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6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단,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관리담당이 된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6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한 마을거점(커뮤니티)공간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들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 수행

제4조(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사용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이 사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시설의 사용허가가 된다.

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 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조사·검사·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회
3. 구청장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지원센터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9조(이용료·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중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이용료 등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발전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소재한 행정동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료비·교재비를 포함한 이용료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⑦ 제6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학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제10조(이용의 제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이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 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위탁계약서 또는 사용허가 승인서에 명시한다.

③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을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혜택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수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발신일자	20 . . .
수신처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다음과 같이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을 위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 용 일 시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장 소	주 소 : (건축물 명칭) : 시 설 구 분 : 사 용 면 적 : (예시: ○층 회의실, 다목적실, 전시실, 갤러리, 공유주방 등)		
사 용 목 적			
예 상 인 원			
신청자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성 명	
		연락처	
		F a x	
		E-mail	
		주 소	
비 고			

1. 사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합니다.

가. 이용자의 불편 및 시설물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 및 물품반입을 하지 않음.

나. 시설 사용 후 사용 이전 상태로 유지시키며, 시설물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

다. 목적 이외의 영리적 부대행사를 하지 않음.

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행사참여 예상인원을 초과하지 않음.

마. 사용료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바. 사용 신청자는 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함.

사. 사용 조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추후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음.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별표 1】

이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표(제9조제2항 관련)

분 야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이용료 (시설·장비 이용료)	다목적실, 회의실 등	2시간	20,000원 이하 (1시간 초과 1 0,000원)	※ 재료비, 교재비 별도
수강료 (프로그램 수강료)	체력단련실, 각종 강좌 등	1개 프로그램 또는 1 개월	50,000원 이하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제9조제3항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이용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	
수강료	- 이용료 감면 대상과 동일	100%	재료비 및 교재비 포함

【별표 3】

이용료 등 반환 기준(제9조4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이용료		이용일 이전 취소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일 이후 (이용일 포함) 취소	반환하지 아니함, 단 미도래한 이용 예정일에 대하여는 전액 반환
수 강 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 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6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 및 재활용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6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통하여 호우, 홍수로부터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침수를 예방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생명

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습침수 지역 및 침수우려 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2.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3.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배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빗물받이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빗물받이 및 배수로의 청소와 상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6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

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직원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7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개별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감정평가사
 3. 세무사
 4. 관내에서 3년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 ③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 위원 중 관할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부의안건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사항
3. 위원발언 요지
4. 심의사항 및 결과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10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7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인천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자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7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관한 사항
2. 결손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 업무 담당 과장, 개발부담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세무서 공무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개발부담금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개발부담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실비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7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

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회의 및 화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7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 충족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및 지역 내 드론기반 확대를 위해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구청장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실종아동 등의 수색 지원 활동
5. 산림, 공원 및 하천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8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활용 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 진 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7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법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

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4조(약가) ①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으로 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6조(기타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을 따른다.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십원 단위는 절사한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한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중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
 7.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 B형간염 항체검사는 제외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9. 주민등록이 구에 등재된 다자녀 가정(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중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사업
- 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10.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타수가(제6조 제1항 관련)

종목	기준	수수료	비고
치면열구전색 (치아홈메우기)	1치아당	5,000원	건강보험대상 (제1,2대구치) 치아 제외
불소도포	전체치아	5,000원	
유료접종 (B형간염)	성인	약품의 최근 구매한 단가에 500원을 더한 가격	십원단위는 절사
유료검사 (B형간염항체검사)	전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의 보건기관단가 70% (매년 고시가에 따라 변동함)	십원단위는 절사

[별표 2]

증명발급 수수료 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1. 건강진단서	1통	1,000원	
2. 기발급 증명서 재발급	“	500원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6,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 단 규칙」 제5조 관련	수수료 50% 감액대상 1.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거주자 2. 검단구 관할 구역 내 영업장 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 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 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 정) 증명서(별지 제1호서식 또 는 영업장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 서 등)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
4.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	300원	
5.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	1,000원	

■ [별지 제1호서식]

재직(예정) 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직(예정) 사항	소속(예정)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주소	
영업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업주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 귀하

안 내 및 유 의 사 항

1.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2.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4.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5.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7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6.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을 한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2.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게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 발송 및 소정의 기념품 지급
 3. 관내에서 헌혈 장려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관련 홍보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서부지원교육청, 인천서부경찰서,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경제단체,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검단구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④ 협의회는 별도로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 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협회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심의·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직자 참여유도) 구청장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적극 장려
2. 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7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6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제34조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29조 및 제34조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7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학교보건 관계자
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7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휴일 병원”(이하 “야간·휴일 병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재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 야간·휴일 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구민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 병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자정까지)

③ 구청장은 공공 야간, 휴일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 병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 병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8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7조(사업 홍보)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8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심야 시간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8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3. 공무원, 보육교사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8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

슴압박과 인공 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습 효과가 높은 검단구 관내 초·중·고등학생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8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준수사항)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服藥指導)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관련 단체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검단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8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수탁기관 또는 업무대행의료인(이하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라 한다)과 사전에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실비보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3조(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수탁자 및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8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검단구 지역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1회에 한 정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제4조(비용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9조(백신구입 및 비용상환) ① 예방접종 백신은 보건소에서 구매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종 비용 상환은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접종 시행비를 위탁의료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접종 시행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신비 및 시행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3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4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에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 과목	
		주소(소재지)			
		전화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용 ※ 사용시 업체명 : _____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이 제7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2369 -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8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예방접종대상) 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중 소지자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8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8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를 줄 수 있는 바퀴벌레, 파리, 빈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천변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등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으로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8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이하 “구 관내”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

가 있다.

③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증
3. 제3급감염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증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

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손실보상)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구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9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검단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세대

3. “대상주택”이란 검단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문방역 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형태	☐ 공동주택 ☐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다문화가족 또는 고려인 세대				
방역희망일시	20 . . . (:)				

「인천광역시 검단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화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제8조 관련)

○ 검단구 보건소 방문 방역자 : (서명)

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상세하게기재)	처리		방역확인 (신청자)
					예정일	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제8조 관련)

○ 품명 :

일자	입 고	사 용	잔 량	약품사용 내역			확인자
				성명	주소	약품 사용내용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9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

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엔딩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4. “호스피스와 날”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구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엔딩노트 작성 등 웰다잉 문화구성 사업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홍보 사업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등록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교육, 상담 및 주민 접근성 향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9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

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

하여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9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9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심리적·신체적 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갱년기 증후군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갯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갯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갯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갯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갯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갯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9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

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9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

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 영양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9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 영양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자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영양·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98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단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원자원 연계 방안
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걷기 앱 개발·유지보수·보급 및 연계 활성화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화폐, 모바일 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지류식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7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399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특화거리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6. 의료기관,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7.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8.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등.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는 물론 장소

와 범위에 대해서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

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과 흡연 예방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전 개최 결과에 따라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공모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00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
3.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

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한다.

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회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회원이 아닌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회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회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01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사업 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사업의 발굴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 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의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할 때
2.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때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방문 자문)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02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지역보건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 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2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상근 인력을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 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센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하며, 센터장은 보건

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각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전문 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지역건강협의체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체에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 가능)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167번길 19 (당하동)	당하동, 마전동, 원당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214 (금곡동)	블로대곡동, 검단동, 오류왕길동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라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2로 20 (당하동)	아라1동, 아라2동

[별표 2]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제5조제3항 관련)

구분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자	영양사
건강생활지원센터	1	3	1	1

※ 비고

1. 의사 또는 한의사는 촉탁 등 비상근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등 여건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03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

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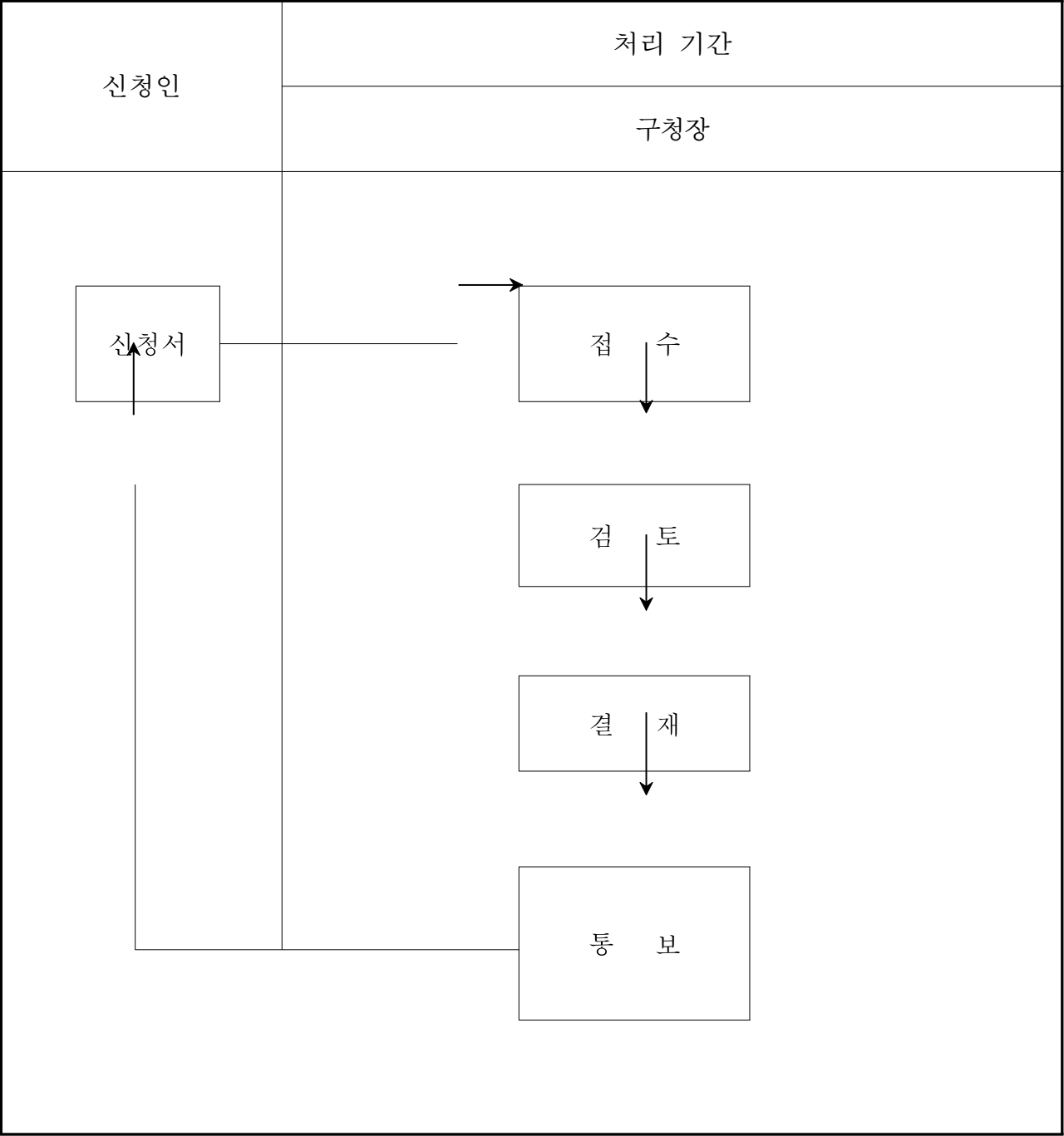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명 (한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소속:

성명: (한자)

생년월일:

위촉기간: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60mm×90mm

(색상 : 연파랑)

(뒤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m² or 플라스틱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04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취약계층산모: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 질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2.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05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 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응급입원 치료비”란 법 제50조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큰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 “행정입원 치료비”란 법 제44조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을 받아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원시키는 행정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란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을 진단 받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조기집중 치료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5. “외래치료비”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진료 및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월별 한도액, 신청방법 등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자
2.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검단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자
3. 응급입원이 필요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치료비
2. 행정입원 치료비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4. 외래치료비
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비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치료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4.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퇴원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사전 상담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06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

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5.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6.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 해소 홍보 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3. 재정 부담능력
4. 책임능력·공신력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 따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음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
4.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5.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

제9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

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장비는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김진규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조례 제407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치매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퇴치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치매주·야간보호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치매센터”(이하 “치매센터”

라 한다)로 한다.

② 치매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되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검단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4조(업무)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2. 치매환자 조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조기검진
5.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6. 치매 주간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장의 횟수는 두 차례에 한한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

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
3. 재정적 부담능력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치매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치매센터 운영
·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불가
3.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4. 치매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5. 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

6.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

제9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 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지도·감독관련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제6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장비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